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

2023. 9.



2023.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

2023.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근로장려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화 충남대학교 교수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연구개요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하여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편을 통해 지원 가구 및 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됨
 - 수급가구의 수는 59만가구(2008년)에서 436만가구(2022년)로, 조세지출규모는 4,537억원(2008년)에서 4.4조원(2022년)으로 증가
 - 평균 수급액은 76만원(2008년)에서 102만원(2022년)으로 증가
-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래로 가장 큰 확대 개편인 2018년 세법개정은 지원 대상수 및 지원금액 확대뿐 아니라 신규 가구의 특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본 심층평가에서는 현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현황 및 제도적 타당성과 근로유인 및 소득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운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주요국들의 근로장려세제 운용 현황과,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시이나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활용한 사례를 포함하여 조사하여 향후 제도 운용 및 활용시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2. 제도 현황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¹⁾

1)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3. 7. 31.

- 여타 소득지원제도와와의 차이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구성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는 것임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13이며, 2008년(소득귀속연도)에 지급을 시작함²⁾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함³⁾
- 총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
 - 2022년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임
 - 총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결정됨
 - 총급여액 등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을 의미함
 -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은 <표 1>과 같음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한 후 지급함
 - 신청제외자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성명재 외(2008)

3)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7. 31.

<표 1>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 / 1,300
홀별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 / 1,800
맞별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 / 800
	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 / 2,100

- 주: 1.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함
 2. 홀별이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함
 3. 맞별이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3. 수급 현황⁴⁾

- 수급가구의 수는 158만가구(2014년)에서 436만가구(2022년)로, 조세지출규모는 1조 210억원(2014년)에서 4.4조원(2022년)으로 증가
 - 평균 수급액은 83만원(2014년)에서 102만원(2022년)으로 증가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혜가구 수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도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2015~202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31% 증가
 - 근로장려금의 수혜가구는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30% 증가
 - 신청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비율은 77~87.7%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신청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장려금을 수급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 소득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작성하였음

□ 근로장려금 총신청금액 및 총지급액 또한 비슷하게 같은 기간 동안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도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 총신청금액은 2014년 1.3조원에서 2021년 5.2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18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35%로 가장 컸음
- 총지급금액은 2014년 1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18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36%로 가장 컸음
- 신청금액 대비 수혜금액의 비율은 75.1%에서 87.9%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 가구당 평균 수혜액은 연도별 변화가 있었음

- 2014년의 경우 80만원대였던 가구당 평균 수혜액이 2015~2017년에는 70만원대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112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 이는, 2018년 세법개정으로 최대지급액이 상승한 것에 대한 효과로 보임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표 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단위: 천가구, 십억원, %,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수	신청	1,584.0	1,695.5	1,883.1	2,056.1	4,742.6	4,807.6	4,914.8	5,102.3
	지급	1,232.5	1,379.0	1,570.4	1,693.6	3,885.2	4,214.3	4,206.8	4,362.3
	(신청-지급)	351.5	316.5	312.6	362.4	857.4	593.3	708.0	740.0
	지급/신청(%)	77.8	81.3	83.4	82.4	81.9	87.7	85.6	85.5
금액	신청	1,361.0	1,304.8	1,417.6	1,586.5	5,315.6	4,997.9	5,256.8	5,227.4
	지급	1,021.7	1,028.0	1,141.6	1,280.8	4,300.3	4,391.5	4,428.6	4,444.7
	(신청-지급)	339.3	276.8	276.0	305.7	1,015.3	606.4	828.2	782.7
	지급/신청(%)	75.1	78.8	80.5	80.7	80.9	87.9	84.2	85.0
가구당 수혜액	신청	85.9	77.0	75.3	77.2	112.1	104.0	107.0	102.5
	지급	82.9	74.6	72.7	75.6	110.7	104.2	105.3	101.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제도 개편으로 단독가구와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 및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2022년 수급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29.1%)와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28.7%)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22년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의 비중(68%)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홑벌이 가구(27%)

- 높은 단독가구의 비중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
 - 특히,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단독가구 비중(94.8%)이 가장 높았음
 - 홑벌이가구의 비중이 높은 가구는 40~50세 미만 가구주 가구(43.8%)

4. 타당성 분석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한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음

- 본 타당성 조사에서는 본 제도 운용 방식이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지에 초점을 두고 다음 항목들을 중심으로 평가함
 - 첫 번째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였음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포함 여부
 - 충분한 근로유인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적절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두 번째로, 근로장려세제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유입된 신규 수혜가구의 유형 및 특성을 국세통계연보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봄
 - 마지막으로, 여타 소득지원형 복지제도와 본 제도의 중복성이 존재하는지를 수혜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이상의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소득, 재산, 연령요건 등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가.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 오랜 논의 끝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대상자의 근로유인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더 많은 근로활동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탈수급 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이하 중복성 평가에서 더 상세히 논할 계획임

- 충분한 근로유인 제공 관점에서 현재의 점증, 평탄, 점감구간의 설계 방식은 향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의 개편은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함
 - 그 결과 점증구간이 짧아지고 평탄 및 점감구간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음
 - 이론적으로 볼 때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 근로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개편 과정에서 점증구간의 범위를 현재에 비해 넓히고 평탄구간의 길이는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2019년 개편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상한과 최대지급액 규모가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1인당 GDP 대비 소득상한과 최대지급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근로장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재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재산요건의 존재는 저소득·고자산 가구를 제도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기능과 더불어 전체 근로장려금 조세지출규모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자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소득-고자산 가구들을 제도에서 배제시키는 현재의 재산요건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새롭게 제도에 편입된 가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평가 내용들은 근로장려세제 개별 구성 요소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이해
 - 2019년 개편은 전체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을 크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그 결과 지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 수급 대상 가구들의 특성 또한 크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이하에서는 2019년 개편에 따라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된 신규 수급가구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해당 가구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함

나. 신규 수급가구 분석

- 이 절에서는 2019년 개편에 따라 제도에 새롭게 편입된 신규 가구의 특성을 국제 통계연보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이상의 신규 가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신규 가구는 기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연령대의 가구들로 구성됨
 - 신규 가구는 재산요건 완화보다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로 근로장려세제에 편입됨
 - 신규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및 총재산은 기존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이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도한 바임
 - 신규 가구당 지급되는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은 기존 가구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임
 - 신규 가구의 상당한 비중이 점감구간에 위치함

- 다수의 신규 가구가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편입되었고 그 결과 기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신규 가구들 역시 가구소득 기준 1~4분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
 - 신규 가구들의 다수가 점감구간에 위치하여 근로장려금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 무엇보다 일하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장려세제 정책 대상으로 더 적합한 측면이 존재함
 - 신규 가구는 실제 근로를 왕성하게 하는 30대에서 50대까지의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근로유인으로서의 기능이 기존 가구에 비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가구는 수급가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 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신규 가구에 대한 노동유인 효과는 향후 실증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

다. 유사·중복성 평가

-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요건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임
 - 일반 보조금제도의 근로비유인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능
- 동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함에 있어 두 가지 제도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다른 조세 및 재정지원제도를 검토
 - 유사 조세특례제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있음
 - 유사 소득지원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 중 대표적 소득지원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성 분석과 함께 제도 조화방안을 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이며,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

- 두 제도 간 지원대상, 제도구성 등의 조화가 중요함
 -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는 근로시 혜택을 받는다는 유사성이 있으나, 중소기업 취업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근로유인제도로 보기 어렵고 소득에 대한 고려도 없어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로 보기에 어려움 중복지적이라 하기 어려움
- 현 근로장려금이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하도록 설정한 것은 제도의 중복적 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의 탈수급유인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허용
 - 이는 노동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과 동일한 구조
 - 또한, 30%의 소득공제로 수급자는 탈수급 시점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함으로써 소득감소 폭을 축소시켜 탈수급에 유리한 환경 제공이 가능(<표 3> 참고)
 - 중복배제시 소득감소율이 기존 23%에서 5.5~10%로 하락

<표 3>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분리적용에 따른 탈수급시점 소득감소액의 변화

(단위: 만원, %)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기준(A)	748	1,244	1,597	1,944
소득공제액(B)	224	373	479	583
중복지급시 소득감소율 (B/(A+B), %)	23.1	23.1	23.1	23.1
EITC 최대급여(C)	165 (단독가구)	285 (홀벌이가구)	330 (맞벌이가구)	330 (맞벌이가구)
분리시 소득감소액 (D=B-C)	59	88	149	253
분리적용시 소득감소율 (D/(A+B), %)	6.1	5.5	7.2	10.0

5. 효과성 분석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효과성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의 달성도를 평가함
 - 국세청 장려세제과의 협조를 받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5개년(2017~2021년⁵⁾) 미시패널자료 구축
 -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전체 4,253,885가구 대상, 동일가구의 과거 수급자료(2017~2020년)를 역추적하여 패널자료 구축
 - 본 패널에 포함된 가구들은 수급가구수 및 평균수급액 등의 측면에서 모집단(국세통계연보 기준)과 유사하며 2017~2020년 각 연도에 모집단의 44~60%를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청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진행

- (2017~2021년 효과분석) 국세청 미시자료(2017~2021년)를 사용하여 장려금 수혜경험이 다음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 즉, $t-2$ 기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t-1$ 기에 지급된 장려금($EITC_{it-2}$)이 t 기 가구노동공급 및 소득(y_{i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y_{it} = \alpha + \beta EITC_{it-2} + \gamma X_{it} + \sum_{k=1}^T \gamma_k D_k + \varepsilon_{it}$$

- 종속변수 y_{it} 로는 총급여액유무(외연적 노동공급효과), 로그총급여액(내연적 노동공급효과), 총급여액 및 세후소득⁶⁾(소득효과)을 사용함
- 설명변수인 $EITC_{it-2}$ 는 장려금 수급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 그 외 가구특성(부양자녀수), 시간효과를 통제함

- 분석결과, 전반적인 노동공급제고(외연 및 내연)효과와 소득증가효과(총급여액 및 세후소득 증가)를 확인

5)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귀속연도 기준으로 기록. 따라서, 2017~2021년은 수급연도 기준으로 2018~2022년에 해당

6) 세후소득은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을 의미

- $t-2$ 기 소득을 기반으로 $t-1$ 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에 그다음 해인 t 기에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8.82%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생적 근로유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표 4>의 칼럼(1) 참조)
 -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총급여액은 평균 9.75%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연적 근로유인효과 또한 존재함(<표 4>의 칼럼(3) 참조)
-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총급여액 증가와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근로유인으로 인한 총급여액의 증가는 72만원,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 증가는 108만원으로 나타남(<표 4>의 칼럼(2)와 (4) 참조)
 - 전체 세후소득 증가 중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

<표 4>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 분석

변수	t 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 기 총급여액 (만원) (2)	t 기 $\log(\text{총급여액})$ (3)	t 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근로장려금수급여부 ($t-2$)	0.0882*** (0.0002)	72.1830*** (0.6265)	0.0975*** (0.0009)	108.066*** (0.6295)
부양자녀수	0.0495 (0.0001)	368.6692 (0.8645)	0.3153 (0.001)	401.5725 (0.8602)
총 관측수	12,283,108	12,283,108	10,645,300	12,283,108
가구수	4,249,417	4,249,417	4,237,863	4,249,417
Adjusted R square	0.0461	0.0461	0.0198	0.0582

주: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이질적인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간별(점중, 점감, 평탄), 연령별(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직업별(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구성별(단독, 홀별이, 맞벌이가구) 분석을 실시함
- 분석결과, 효과가 큰 집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외연적 노동공급: 점중구간(16.47%), 단독가구(9.4%)

- 내연적 노동공급: 점증구간(34.9%), 30세 미만 가구(21.5%)
 - 소득(총급여액)⁷⁾: 30세 미만(146만원), 근로자(81만원)
 - 세후소득⁸⁾: 30세 미만(158만원), 근로자(117만원)
 - 주로 점증구간과 수혜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단독가구 및 30세 미만에서 노동공급효과가 크게 관측되어 근로유인 측면에서 현 제도 설계 방식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교인을 제외하고 소득효과를 가장 크게 보이는 집단은 30세 미만 및 근로자
-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제도 확대로 새롭게 유입된 신규 가구 특성을 분석하고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제도효과 분석
- 신규 가구는 주로 재산요건의 완화보다는 소득요건 완화로 유입된 경우가 많았음
 - 신규 가구의 8%가 재산요건 확대로, 94.3%가 총소득요건 확대로 유입됨
 - 세법개정으로 평탄 및 점감구간에 위치한 수혜자의 비중 증가
 - 평탄구간 수혜자 비중은 16%(2017년)에서 25%(2018년)로, 점감구간은 30%(2017년)에서 40%(2018년)로 증가
 - 2018년 세법개정의 효과분석을 위해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을 폐지한 변화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함
 - 처치군은 만 30세 미만(2018년 기준) 단독가구로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수혜가구에 편입
 - 대조군은 30대(2018년 기준) 단독가구로 기존 수혜대상
-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외연적 노동공급효과는 40%, 내연적 노동공급효과는 26%로 다소 크게 나타남(<표 5> 참고)
- 총급여액은 492만원 증가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을 합한 세후소득은 498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7) 종교인은 전체 수혜자의 0.37%(2021년 기준)만을 차지하고 있어, 종교인을 제외하고 큰 효과를 보고함. 종교인소득(총급여액)은 140만원

8) 세후소득은 총급여액+근로장려금을 의미하며 종교인(179만원)을 제외하고 큰 결과를 제시함. 소득(총급여액)의 증가가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변화가 큰 결과를 제시함

<표 5>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 30세 미만 수혜자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처치군 × Post	0.3953*** (0.0007)	491.9228*** (1.6850)	0.2615*** (0.0033)	497.7193*** (1.6709)
처치군	-0.4752*** (0.0008)	-813.2063*** (1.8497)	-0.6663*** (0.0033)	-823.0780*** (1.8423)
총 관측수	12,283,108	12,283,108	10,645,300	12,283,108
가구수	4,249,417	4,249,417	4,237,863	4,249,417
Adjusted R square	0.0461	0.0461	0.0198	0.0582

주: 1.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2. 처치군은 단독가구 중 1988년 혹은 그 이후 출생자인 경우 '1', 1987~1977년 출생자인 경우 '0'이 되는 이항변수
 3. Post는 2019~2021년에는 '1', 2017~2018년에는 '0'이 되는 이항변수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6. 종합평가 및 제언

- 근로장려금은 제도설계상 소득보장보다 근로유인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도운영 시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 빈곤층에 대한 주된 소득지원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소득 지원이 주 목적인 제도가 적절
 - 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하는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
 - 탈수급시점에서 소득이 크게 감소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중복적 제도운영의 문제도 존재
- 향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 또는 지급액 상향여부의 판단은 소득분포 상

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분포 상황은 중상위계층 간보다는 중하위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
 - 시장소득 10분위와 50분위 경계소득의 배수가 3.64배(2011년)에서 4.25배(2021년)로 꾸준히 증가
- 이러한 분배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장려금제도의 변화방향도 지급대상 확대보다는 기존 지원대상에 대한 확대가 우선될 필요

□ 재산에 대한 고려는 근로장려금 대상의 범위,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축적을 통한 빈곤탈출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반면, 은퇴계층은 인생주기 관점에서 자산소비를 통해 소득확보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제약적인 재산기준 또한 수용 가능할 수 있음
- 현재의 재산기준 2.4억원은 소득하위 40%를 포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근로빈곤층 제도로서의 포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목 차

I. 서론	23
II.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27
1. 근로장려세제 소개	29
가. 제도 도입 및 소개	29
나. 제도발전: 2008~2021년	30
다. 제도 현황: 2022년	37
라. 선행연구 조사	39
2. 수급 현황	44
가.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46
나. 소득수준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49
다. 연령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54
라. 소득 종류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58
마. 재산 규모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61
바. 가구유형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65
III. 주요국 근로장려세제	69
1. 미국	71
가. 현황	71
나. 코로나19 대응: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의 영향 ..	77
다. 성과	78
2. 캐나다	80
3. 영국	90
가. WTC(Working Tax Credit) 자격요건 및 현황	90
나.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으로의 전환	92
다. 코로나19 대응	96

라. 성과	96
4. 프랑스	97
5. 스웨덴	98
6. 호주	102
7. 뉴질랜드	105
8. 아일랜드	107
IV.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109
1.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112
가. 기초생활수급가구 포함 여부에 대한 평가	114
나. 근로유인 관점에서의 평가	116
다. 소득지원 대상자에 대한 평가	121
라. 소결	127
2. 신규 수급가구 분석	129
가. 국세통계연보	129
나.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132
1) 기존 가구 분석	133
2) 신규 가구 분석	135
다. 소결	139
3. 유사·중복성 평가	140
V.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145
1. 국세청 자료 소개	151
2. 자료 대표성 점검	154
3.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분석	158
가. 식별전략	158
나. 분석결과	161
1) 전체표본 대상 분석결과	161
2) 이질성 분석: 근로장려금 구간별	163
3) 이질성 분석: 연령별	165

4) 이질성 분석: 직업별	168
5) 이질성 분석: 가구 구성별	170
4.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172
가. 2018년 세법개정 특성분석: 신규 수혜가구 유입을 중심으로	174
나. 회귀분석	178
1) 신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분석	178
2)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181
VI.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185
참고문헌	191

표 목 차

<표 II-1> 근로장려세제 재산·주택·대상요건의 연도별 변천	31
<표 II-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37
<표 II-3>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38
<표 II-4>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 규모	45
<표 II-5> 세목별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45
<표 II-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47
<표 II-7>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0
<표 II-8> 가구소득 수준별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3
<표 II-9>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6
<표 II-10>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9
<표 II-11> 재산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2
<표 II-12>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6
<표 III-1> 2022년 귀속 총조정소득 및 투자소득 한도	73
<표 III-2> 2022년 EITC 최대장려금	74
<표 III-3> 2022년 EITC 수혜금액	74
<표 III-4> 2023년 미국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	76
<표 III-5> 2020~2021년도 미국 근로장려금 수혜 조건 및 최대장려금: 분양자녀가 없는 경우	78
<표 III-6> 미국의 근로장려금 참여율	79
<표 III-7> 미국 EITC 지급건수 및 지급액 추이	79
<표 III-8> 2021년 기본 CWB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5
<표 III-9> 2022년 기본 CWB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6
<표 III-10> 2021년 CWB 장애수당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7
<표 III-11> 2022년 CWB 장애수당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7
<표 III-12> 캐나다 CWB의 수급자 수와 지급액(2020년)	89
<표 III-13> 영국의 연령별 근로시간 요건(2023년)	91

<표 III-14> WTC 공제액 한도	91
<표 III-15> 영국 UC의 연간 급여 상한(Benefit Cap)	94
<표 III-16> 영국의 UC의 기준 급여(Standard Allowance)	94
<표 III-17> 영국의 UC의 추가급여(Additional Allowance)	95
<표 III-18> 2023년도 영국의 PC(Pension Credit) 수혜금액	96
<표 III-19> 2022년 스웨덴 근로장려세제: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99
<표 III-20> 2023년 스웨덴 근로장려세제: 65세 이하 근로자 대상	100
<표 III-21> 스웨덴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102
<표 III-22> MAWTO Qualifying Age Threshold	102
<표 III-23> 2004~2005년도 호주 근로장려세제 MAWTO	103
<표 IV-1> 연도-구간별 상용직 비중	117
<표 IV-2> 연도별 점증률과 점감률	119
<표 IV-3>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121
<표 IV-4> 중위소득 대비 소득상한 및 최대지급액 비중	122
<표 IV-5> 근로장려금 국가간 비교(미국 달러 기준 GDP)	123
<표 IV-6>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 재산요건 삭제(2020년)	125
<표 IV-7>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 반액 적용 기준 삭제(2020년)	126
<표 IV-8>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29
<표 IV-9> 신청자 연령대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30
<표 IV-10> 부양자녀수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31
<표 IV-11> 재산규모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31
<표 IV-12>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및 기존 수급가구수	133
<표 IV-13> 기존 가구의 가구유형	134
<표 IV-14>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가구·가구유형별	134
<표 IV-15>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가구·소득분위별	135
<표 IV-16> 기존 가구의 가구유형	136
<표 IV-17>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구·가구유형별	136
<표 IV-18> 신규·기존가구의 분포	137
<표 IV-19>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구·소득분위별	138
<표 IV-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141

<표 IV-21>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분리적용에 따른 탈수급시점 소득감소액의 변화 ..	143
<표 V-1> 국세청 미시자료 연도별 신청·미신청 가구수 및 비중	152
<표 V-2> 국세청 미시자료 연도별 수급·비수급 가구수 및 비중	152
<표 V-3>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154
<표 V-4>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가구유형별	155
<표 V-5>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연령별	157
<표 V-6>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전체표본 대상	162
<표 V-7>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점증구간	164
<표 V-8>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평탄구간	164
<표 V-9>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점감구간	165
<표 V-10>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30세 미만(2017년 기준)	166
<표 V-11>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40세 이상 50세 미만	166
<표 V-12>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50세 이상 60세 미만(2017년 기준) ...	167
<표 V-13>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60세 이상(2017년 기준)	167
<표 V-14>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근로자	168
<표 V-15>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사업자	169
<표 V-16>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종교인	169
<표 V-17>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단독가구	171
<표 V-18>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홑벌이가구	171
<표 V-19>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맞벌이가구	172
<표 V-20>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의 연도별 특성	175
<표 V-21> 수혜자 구간별 분포: 2017년도와 2018년도	177
<표 V-22>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188
<표 V-23>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2021년도 제외	181
<표 V-24> 2018년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30세 미만 단독가구	183
<표 VI-1> 소득 10분위별 가구의 자산수준(2022년)	190

그림 목 차

[그림 II-1] 2008~2010년도 근로장려금	32
[그림 II-2] 2011~2012년 근로장려금	33
[그림 II-3] 2013~2015년 근로장려금	34
[그림 II-4]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	36
[그림 II-5] 2022년 정기 및 반기신청 지급일정	37
[그림 II-6]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39
[그림 II-7]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47
[그림 II-8]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총금액의 연도별 변화	48
[그림 II-9]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평균액의 연도별 변화	48
[그림 II-10]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51
[그림 II-11]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52
[그림 II-12]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평균수급액의 변화	54
[그림 II-13] 연령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변화	57
[그림 II-14]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변화	57
[그림 II-15] 연령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58
[그림 II-16]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60
[그림 II-17]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60
[그림 II-18]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61
[그림 II-19]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63
[그림 II-20]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64
[그림 II-21]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64
[그림 II-22]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의 연도별 변화	66
[그림 II-2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67
[그림 II-24]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67
[그림 III-1] 2022년 미국 단독(single) 및 합산(married) 신고가구의 부양자녀 수별 근로장려금 규모	75

[그림 III-2] 2023년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	76
[그림 III-3] 캐나다 CWB 구조	82
[그림 III-4] 2019년 CWB와 WITB 간의 차이: 독신가구	82
[그림 III-5] 2019년 CWB와 WITB 간의 차이: 가족가구	83
[그림 III-6] 2021년 CWB disability supplement: 장애인이 있는 독신가구 및 가족가구	88
[그림 III-7] 영국의 WTC와 CTC 수급자 이탈	93
[그림 III-8] 영국의 UC(Universal Credit) 누적 수혜자	97
[그림 III-9] 2007~2016년 스웨덴 EITC	101
[그림 III-10] 2004~2005년도 호주 근로장려세제 MAWTO	103
[그림 III-11] 2024년 뉴질랜드 MFTC의 소득구간별 급여액	106
[그림 IV-1] 구간별 상용직 비중 추이	117
[그림 IV-2] 가구유형별 개편안	118
[그림 IV-3]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변화	144
[그림 V-1] 근로장려금이 경제활동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148
[그림 V-2]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가구유형별	173
[그림 VI-1]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변화	188
[그림 VI-2] 소득계층간 소득배수의 변화 추이	189

I. 서론



I. 서론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하여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편을 통해 지원가구 및 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됨
 - 개편은 장려금 산정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포함하고 있는데, 2011년 자녀수에 따른 장려금산정방식 도입과 2014년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장려금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음
 - 수급가구의 수는 59만가구(2008년)에서 436만가구(2022년)로, 조세지출규모는 4,537억원(2008년)에서 4.4조원(2022년)으로 증가
 - 평균 수급액은 76만원(2008년)에서 102만원(2022년)으로 증가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효과성에 대하여 다소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김재진·이상은·이철인, 2014; 정의룡, 2014; 안종석·송헌재·홍우형, 2017; 박지혜·이정민, 2018; 김문정·김빛마로, 2020; 권성오·홍우형, 2021; 신상화·김문정, 2023)
 -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행정데이터가 아닌 설문기반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수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

-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래로 가장 큰 확대 개편인 2018년 세법개정은 지원 대상수 및 지원금액확대뿐 아니라 신규 가구의 특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또한, 오랜 논의 끝에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중복수혜를 2015년부터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타당성 및 근로유인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함

- 본 심층평가에서는 현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현황 및 제도적 타당성과 근로유인

및 소득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운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유입된 신규 가구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2017~2021년, 2018년 세법개정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를 분석함

□ 또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주요국들의 근로장려세제 운용 현황과,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시에나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활용한 사례를 포함하여 조사하여 향후 제도 운용 및 활용시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하였음

- 주요국의 대부분은 제도를 유지 및 확대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영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도 활용됨
- 또한, 많지는 않으나 연령맞춤형 과세(age-targeted taxation)의 일종으로 고령층에 대한 별도의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여 고령층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호주 및 스웨덴이 대표적인 예임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1. 근로장려세제 소개⁹⁾

가. 제도 도입 및 소개¹⁰⁾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¹¹⁾
 - 여타 소득지원제도와 차이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구성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는 것임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13이며, 2008년(소득귀속연도)에 지급을 시작함¹²⁾

- 근로장려세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근로빈곤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¹³⁾
 - 근로장려금 도입 이전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했음¹⁴⁾
 - 즉,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은 극빈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사회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의 혜택 또한 받지 못했음
 -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근로장려금을 통해 해소함

9) 제도도입 및 소개는 실제연도를, 제도 발전 및 제도현황은 소득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10)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연도는 실제연도를 의미함

11)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3. 7. 31.

12) 성명재 외(2008)

13) 성명재 외(2008)

14) 신상화·김문정(2019)

- 근로장려금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과 2008년(소득귀속연도) 제도 시행으로 이어짐
 - 2004년 11월: 제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정책 아젠다로 부각¹⁵⁾
 - 2005년 10월: 국세청 ‘소득과악인프라 추진단’ 설치¹⁶⁾
 - 20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장려세제 신설
 - 2008년(소득귀속연도): 급여최초지급¹⁷⁾

- 2008년(소득귀속연도)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음(2008년 12월 26일, 2011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¹⁸⁾
 - 2008년 12월 26일 개편(2008년 소득적용): 근로장려금 최초 시행직전 수급자격을 18세 미만 부양자녀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적용대상 확대
 - 2011년 12월 31일 개편(2011년 소득적용):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급여체계 분리 운영, 무자녀 유배우자 가구도 수혜대상 포함
 - 2014년 1월 1일 개편(2013년 소득적용): 가구유형을 배우자·자녀유무 및 맞벌이여부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정의하고, 가구유형별로 급여체계 분리운영

나. 제도발전: 2008~2021년¹⁹⁾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하여서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됨²⁰⁾
 - 2022년 기준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
 - 2022년 기준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

15) 성명재 외(2008)

16) 성명재 외(2008)

17) 최현수(2013)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준비를 거쳐 2007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도 시행이 1년간 유예됨

18) 안중석 외(2017)

19)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연도는 소득귀속연도를 의미함

20)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7. 31.

- 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이외에도 재산요건, 주택요건, 신청제외자 요건, 연령요건(단독가구의 경우)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건의 연도별 변천은 <표 II-1>과 같음
 -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일정한도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
 - 2022년 기준,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²¹⁾
 - 주택요건은 주택소유여부 및 소유주택가격에 대해 제한을 두는 요건으로 2016년에 폐지됨
 - 신청제외자 요건은 사업자,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종교인 소득자 등의 포함과 관련된 요건으로 연도별 상이
 - 단독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경우 2012년부터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별도의 연령요건이 부가적으로 적용되었음
 - 연령요건은 60세 이상(2012년), 50세 이상(2015년), 40세 이상(2016년), 30세 이상(2017년)으로 완화되다가 2018년 폐지됨

<표 II -1> 근로장려세제 재산·주택·대상요건의 연도별 변천

귀속연도 ¹⁾	재산요건	주택요건	대상요건 (신청제외자)
2008~2010	1억원 미만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생계·교육 급여 3개월 이상 받은 자 제외
2011		무주택	보험 모집원과 방문판매원 포함
2012		혹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생계급여받은 자 제외
2013~2015	1억 4천만원 미만 ²⁾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 기준 폐지)	고소득 전문직 제외한 자영업자 확대 적용(2015년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2014년 적용, 자녀장려금 지급불가)
2016~2017		폐지	

21)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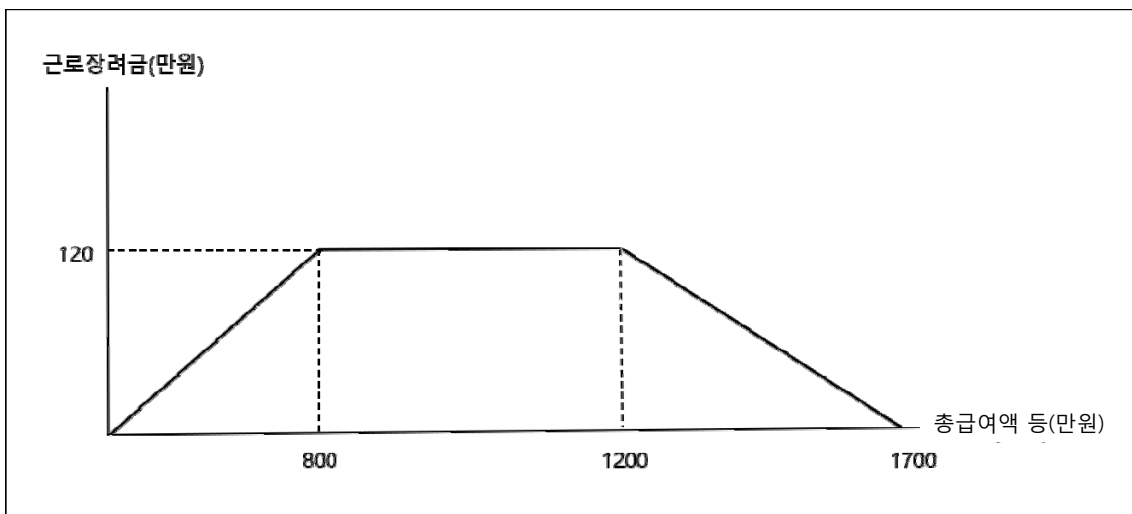
<표 II -1>의 계속

귀속연도 ¹⁾	재산요건	주택요건	대상요건 (신청제외자)
2018~2021	2억원 미만 ³⁾		
2022	2억 4천만원 미만 ⁴⁾		

주: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 소득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구분
 2) 1억원 이상시 장려금의 50%를 감액
 3) 1억 4천만원 이상시 장려금의 50%를 감액
 4) 1억 7천만원 이상시 장려금의 50%를 감액
 자료: 안종석 외(2017)의 <표 II-1>; 이세진·임언선(2021)의 [표 1],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아래에서는 2008~2021년까지의 소득요건을 비롯한 주된 수급요건 및 장려금산정
 방식을 정리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2008~2010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총소득금액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졌는데, 최대급여액은 120만원이었음
 - 점증구간은 0~800만원, 평탄구간은 800만~1,200만원, 점감구간은 1,200만~1,700
 만원 미만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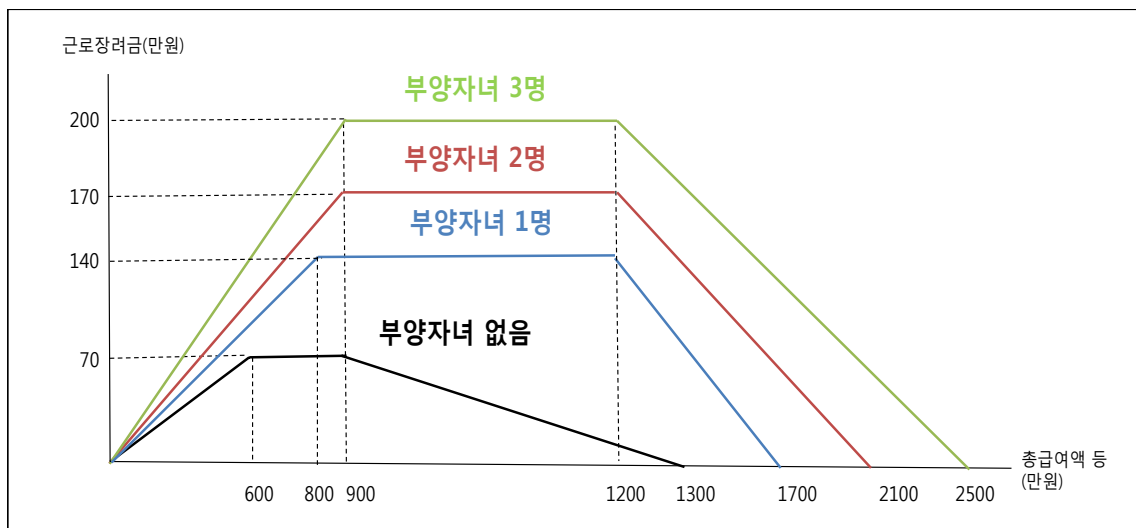
[그림 II -1] 2008~2010년도 근로장려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53922&ancYd=20140514&ancNo=12570&efYd=201405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100:0>, 검색일자: 2022. 2. 28.

- 2011~2013년에는 무자녀가구에게도 수급자격이 주어졌으며 부양자녀수에 따라 급여체계가 분리됨
 - 무자녀가구의 경우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011년에는 배우자가 있어야 했으나 2012년부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60세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해짐
 - 무자녀가구의 최대지급액은 70만원으로 점증구간은 0~600만원, 평탄구간은 600만~900만원, 점감구간은 900만~1,300만원 미만으로 설정됨
 - 유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함에 최대급여액이 증가하고 상한소득기준이 높아짐
 - 자녀 1명: 최대장려금은 140만원으로 총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 가능
 - 자녀 2명: 최대장려금은 170만원으로 총소득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 가능
 - 자녀 3명 이상: 최대장려금은 200만원으로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가능

[그림 II -2] 2011~2012년 근로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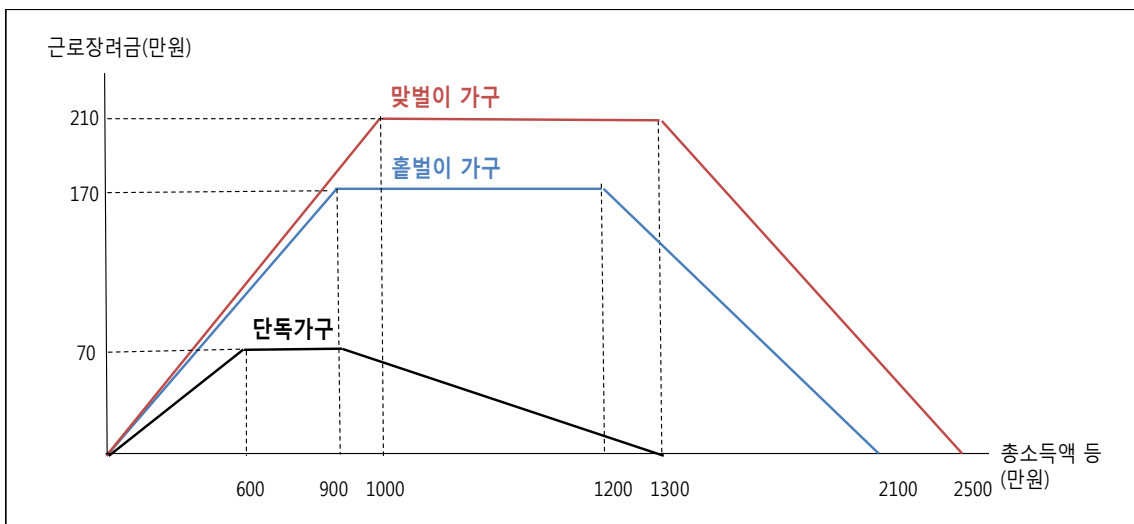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53922&ancYd=20140514&ancNo=12570&efYd=201405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100:0>, 검색일자: 2022. 2. 28.

- 2013~2015년에는 기존 부양자녀수에 따른 급여산정방식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변화됨²²⁾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함
 - 단독가구의 최대급여액은 70만원으로 총소득액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 가능함
 - 단독가구의 경우 부가적으로 연령요건이 있는데, 2013년은 기존과 같이 60세 이상, 2015년에는 50세 이상으로 완화됨
- 홀별이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함
 - 홀별이가구의 최대급여액은 170만원으로, 총소득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가능
- 맞별이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 홀별이 가구의 최대급여액은 210만원으로 총소득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 가능

[그림 II -3] 2013~2015년 근로장려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53922&ancYd=20140514&ancNo=12570&efYd=201405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100:0>, 검색일자: 2022.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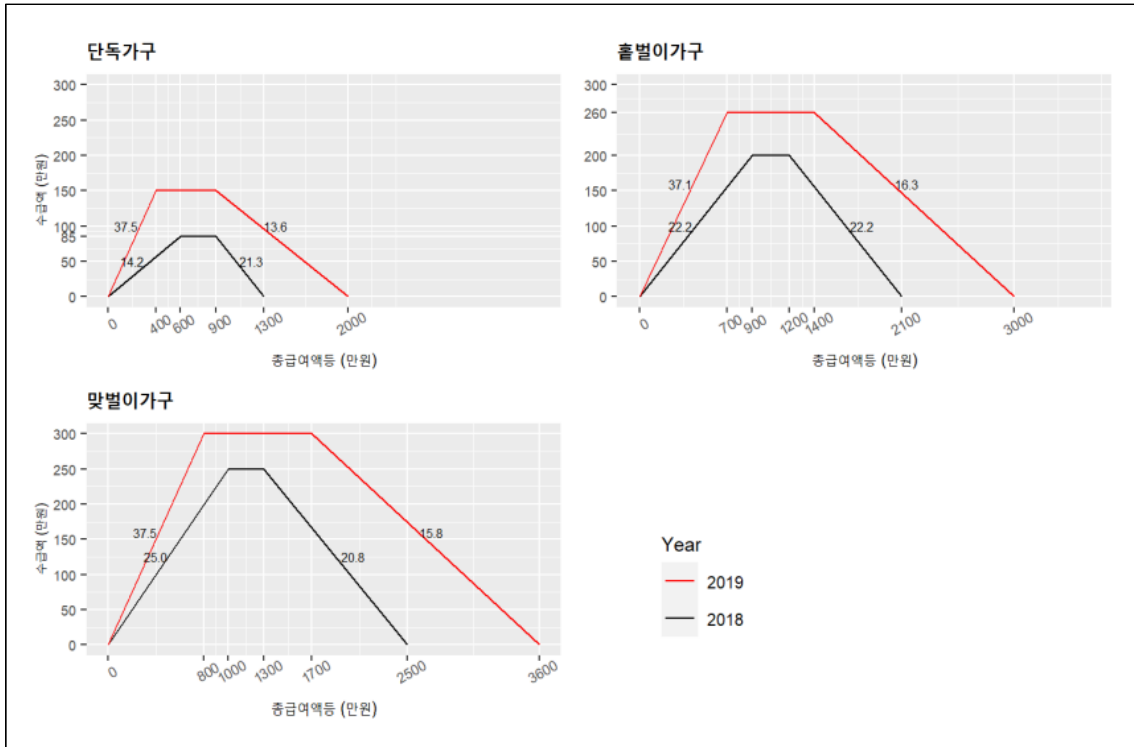
22)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7. 31.

- 2016~2017년 근로장려금의 산정방식은 2013~2015년과 비슷하나 최대지급액을 증가시키고 주택요건을 폐지(2016년)하였으며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을 40세 이상(2016년), 30세 이상(2017년)으로 완화하는 변화가 있었음
 - 2016년 최대장려금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으로 소폭 상승
 - 2017년에 최대장려금 상승이 한번 더 있어서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으로 증가함

- 2018년에는 최대지급액 증가, 소득, 재산, 연령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최대의 제도 확대가 있었음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확대
 -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재산요건 또한 기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 또한 2018년에 폐지되어 30세 미만 청년가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2018년 세법개정은 결과적으로 점증구간은 짧게, 평탄 및 점감구간이 길어지도록 변화시키고 점증률은 증가, 점감률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점증구간은 소득수준(총급여 등)이 단독가구는 0~400만원, 홑벌이가구는 0~700만원, 맞벌이가구는 0~8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점증률은 37~38%로 상승
 - 평탄구간은 단독가구는 4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1,7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하여 길어졌음
 - 점감구간은 단독가구는 900~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1,400~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1,700~3,800만원 미만이며 점감률은 14~16%로 감소

[그림 II -4]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



주: 그림의 연도는 수급연도를 의미함
 자료: 신상화·김문정(2023)의 [그림 1]

- 더불어, 2019년 귀속소득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지급제를 실시함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추정액의 35%를 상·하반기로 두차례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근로소득자임
 -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장려금지원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²³⁾
 - 반기지급액 지급방식
 - 2019~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1~6월)에 대하여 9월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7~12월)에 대하여 3월 신청-6월 지급, 9월 정산(정기신청시와 상반기 지급액 비교 및 정산)의 순으로 진행
 - 2021년 이후: 상반기 근로소득(1~6월)에 대하여 9월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7~12월)에 대하여 3월 신청~6월 정산(정기신청시와 상반기 지급액 비교 및 정산)

23) 홈텍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7. 31.

[그림 II -5] 2022년 정기 및 반기신청 지급일정



자료: 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7. 31.

<표 II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3. 15.	2023년 6월 중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9. 15	20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검색일자: 2023. 8. 1.

- 이후 2021년에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상한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소폭 상향됨
- 2022년에는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재산요건 또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됨

다. 제도 현황: 2022년²⁴⁾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함²⁵⁾
 - 총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

24)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연도는 소득귀속연도로 함

25)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7. 31.

- 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
- 2022년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임
 - 총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결정됨
 - 총급여액 등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을 의미함
 -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은 <표 II-3>과 같음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한 후 지급함
 - 신청제외자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표 II -3>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 / 400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 / 1,3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 / 700
	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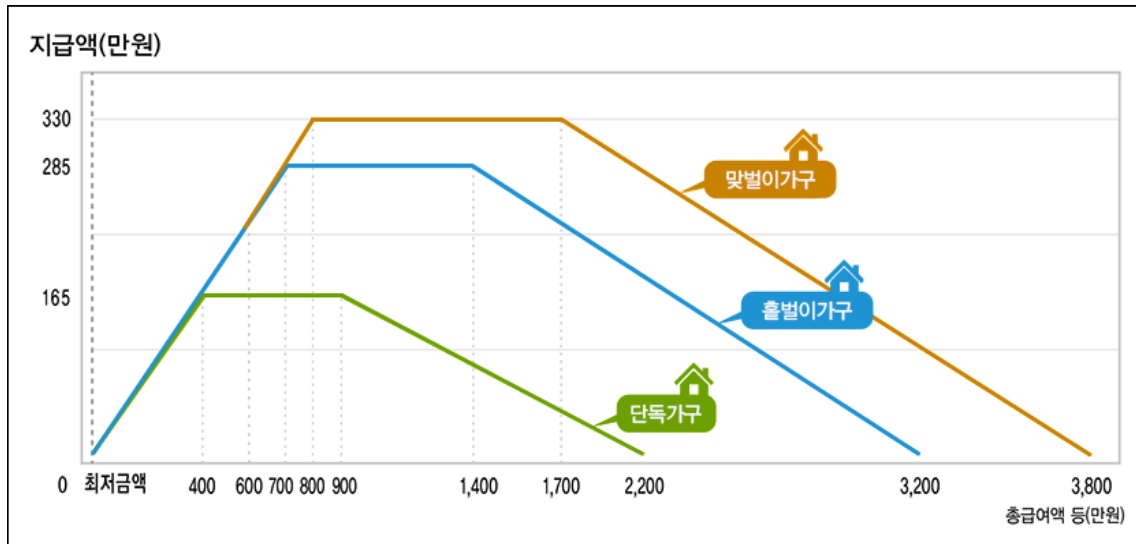
<표 II -3>의 계속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 / 800
	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 / 2,100

- 주: 1.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함
 2. 홀벌이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함
 3. 맞벌이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그림 II -6]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3. 7. 31.

라. 선행연구 조사²⁶⁾

-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의 연구들은 노동공급효과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3년이 되면서 소득, 소비, 저축 등에 대한 영향으로까지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26) 본 선행연구 조사는 고지현 외(2023 발간예정); 박지혜·이정민(2018); 신상화·김문정(2023)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제도도입 이전에 수행된 연구들은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공급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자 하였음(전영준, 2008; 조선주, 2009)
 - 전영준(2008)은 다소득계층 세대중복모형으로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로 토대로 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유인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되며, 가계는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취업여부 및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및 자본의 양을 선택하며, 정부는 소득세를 거두어 실업보험, 기초생보,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출을 충당함
 -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9가지의 시나리오(근로장려금 유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노동부 자료, 한국통계포털(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분석을 시행함
 -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의욕 증진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근로장려세제의 점증률이 낮고 기초생보급여 상한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지적함

-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반에는 주로 수급자·비수급자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했으며, 분석기간, 사용한 데이터, 실험군·대조군의 정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함
 - 김재진·이상은·이철인(2014)은 2008~201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노동공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대웅·권기현·문상호(2015)는 한국복지패널 제4차(2009)와 제8차자료(2013년)를 사용하고 성향점수매칭(PSM)에 이중차이법, 삼중차이법을 결합한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함
 - 이중차분법에 의한 분석결과,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실험군(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취업확률은 통제군(비수급자)보다 13.31% 높으며, 근로시간은 0.94개월 증가
 - 성별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효과의 차이 추정을 위해 삼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남성과 여성의 취업여부, 근로개월 수, 근로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정의룡(2014)은 한국복지패널 3~6차(2008~2011년)데이터를 사용하고 상향점수 매칭(PSM)과 결합된 이중차이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개별가구원전체, 가구주, 여성배우자의 취업률, 근로소득, 근로일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개별가구원전체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취업률 혹은 근로소득에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가구주나 여성배우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산정방식을 자녀수에서 가구유형으로 전환한 2014년 이후의 효과까지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신우리·송헌재(2018); 박지혜·이정민(2018) 등이 있음
 - 신우리·송헌재(2018)는 재정패널 3~10차(2008~2015년)를 사용하여 2008년 제도 도입, 2011, 2012, 2014년 개정에 따른 효과를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각각 분석함
 - 2011년 개정으로 무자녀 유배우자 가구, 2012년 개정으로 60세 이상 단독가구(무자녀, 무배우자가구), 2014년 개정으로 자영업자가 새로운 수혜가구로 포함됨
 - 기간을 2008~2015년, 2011~2015년, 2012~2015년, 2014~2015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제도 도입 및 개정으로 새롭게 수혜가구가 된 집단을 실험군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였으나 수급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군으로 설정함
 - 분석결과, 2008~2015년간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점증구간에 위치한 부부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임금노동참여확률(14~20%)과 임금근로개월(1.6~1.7)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결과, 비교적 수급요건이 크게 완화된 2011년, 2014년 개정으로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17~19%)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근로개월 수는 변화하지 않음
 - 박지혜·이정민(2018)는 한국복지패널(2006~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한국노동패널(2005~2016년), 재정패널(2010~2016년)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 변동을 변수화하여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함

-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세부 수급자격요건 및 급여체계 변동 중 외생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변수화하여 수급자격변수(Eligibility)와 수혜정도변수(Intensity)를 생성함
- 생성된 정책모수변수가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선형확률모형으로 OLS 추정
- 분석결과, 유의한 효과와 그렇지 않은 효과가 혼재하였으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Eligibility)이 주어지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1.6~7.2% 증가하고, 수혜정도(Intensity)가 커질수록(점증률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함

□ 가장 최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인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제도 확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김문정·김빛마로, 2020; 신상화·김문정, 2023)와 그렇지 않은 연구(권성오·홍우형, 2021)가 혼재함

○ 김문정·김빛마로(2020)는 거주지역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인 지역의 1,600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제도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

- 재산요건 충족여부(2억원 미만)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하여 노동공급효과를 분석
- 분석결과, 제도 확대 이후 통제군에 비하여 실험군의 경제활동 참가여부가 22%,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가량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질성 분석결과, 단독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여부(39%)나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11.31)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여타 연구와는 달리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소득, 가구, 재산요건,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기준)를 함께 조사한 것이 특징임
- 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 이상(60.1%)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험이 높은 가구에서의 인지도가 높았음
- 반면, 근로장려금 유인구조인 점증, 평탄, 점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권성오·홍우형(2021)은 재정패널 10~12차자료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제도 확대)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를 분석

- 실험군을 근로장려금 수급한 자, 대조군을 수급자격은 있으나 수급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는 경우 평탄 및 점감구간에 있는 가구 내 경제활동참가자수의 증가(0.26명)를 관찰할 수 있었음
 - 반면, 수급여부가 아닌 자격요건 충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유의미한 노동공급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신상화·김문정(2023)은 재정패널 10~13차 자료와 가구고정효과를 반영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제도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신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된 가구들을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재산요건은 만족하나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를 대조군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함
 - 분석결과 상용직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60만원가량 증가하며, 상용직 무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은 284만원, 근로소득이 347만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세제가 소득, 소득재분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함

- 정찬미·김재진(2015)은 2013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2014년도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2015년도 자녀장려세제의 도입효과를 분석함
-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체가구의 빈곤율 및 소득재분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함
- 신상화·김문정(2019)은 2018년도의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제도 확대)과 최저임금 인상의 두가지 정책 시나리오분석
- 2019년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지니계수가 -0.92% 개선되어 가구소득 분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0.7%)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함
- 김빛마로·김문정(2022)은 KCB 신용카드 자료(2015~2020년), 농식품 소비자패널자료(2017~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년)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비증진효과를 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외생적인 소득 변화는 농식품 소비, 소비 총액, 식료품 및 교육비 소비의 확대에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

2. 수급 현황²⁷⁾

-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2008년 이래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한 요건 완화와 최대 장려금 증가가 있었음
 - 소득요건은 1,700만원(2008년)에서 3,800만원(2021년)으로, 재산요건은 1억원 미만(2008년도)에서 2억 4천만원 미만(2022년)로 완화되었음
 - 주택요건은 2008년 무주택 혹은 5,000만원 미만에서 2016년 폐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완화
 - 대상요건은 2011년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추가, 2014년 자영업자 확대 적용, 2015년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2017년 종교인 소득인 추가 등을 거치며 완화
 - 최대장려금은 120만원(2008년)에서 330만원(2022년 맞벌이가구 기준)로 증가

-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함
 - 지급액은 4,537억원(2009년)에서 4조 4,447억원(2022년)으로 9.79배가량 증가
 - 지급가구수는 59만가구(2009년)에서 436만가구(2022년)로 7.38배가량 증가
 - 평균지급액은 76.8만원(2009년)에서 101.8만원(2022년)으로 증가

- 국세감면액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 (<표 II-4> 참조)
 - 조세지출비중은 2008년 1.5%에서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8.3%로 급격히 증가
 - 2020년과 2021년의 비중은 각각 7.9%, 7.5%가 될 것으로 예상²⁸⁾
 -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 추계에 따르면, 2022~2026년간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지출액은 1.3조원으로 예상

27)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 소득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작성하였음

28) 2020년과 2021년의 국세감면액이 추정치로 주어짐에 따라, 조세지출 비중 역시 추정치로 제시함

<표 II -4>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조원)

귀속연도	국세감면액 (A)	근로장려금 실적 (B)	조세지출 비중 (B/A)
2008	31.1	0.45	1.5%
2009	30	0.44	1.5%
2010	29.6	0.40	1.4%
2011	33.4	0.61	1.8%
2012	33.8	0.56	1.7%
2013	33	0.77	2.3%
2014	33.1	1.02	3.1%
2015	37.4	1.03	2.7%
2016	44	1.14	2.6%
2017	44	1.28	2.9%
2018	49.6	4.30	8.7%
2019	52.9	4.39	8.3%
2020(p)	55.9	4.43	7.9%
2021(p)	59.5	4.44	7.5%

주: 2020~2021년의 국세감면액은 추정치이므로, 조세지출 비중 또한 추정치

- 자료: 1. 2008, 2009년 국세감면액: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표 3] 주요 감면 항목의 현황
 2. 2010년 국세감면액: 조세재정연구원,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책흐름』, 2012 .10.
 3. 2011~2018 국세감면액: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나보포커스』 제33호, 2021. 6. 9.
 4. 2019~2021년 국세감면액: 기획재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2. 3
 5. 근로장려금 실적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 -5> 세목별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단위: 억원)

세법개정 주요항목	연평균	2022~2026년 누적
(소득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	-2,628	-13,139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10,938	-43,75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48,656	-211,716
(기타) 특정외국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관리 강화	180	9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작성

□ 본 장에 이어지는 절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기반으로 2014~2021년간 있었던 요건변동 이후 수급가구수, 지급액, 평균수급액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총지급대상 가구수 및 지급액을 살펴보고, 소득수준별, 연령별, 소득종류별, 재산규모별, 가구유형별, 정기 및 반기지급별 유형을 살펴봄

가.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 <표 II-6>과 [그림 II-7]~[그림 II-9]에서는 2014~2021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정리함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혜가구수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도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2015~202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31% 증가
 - 근로장려금의 수혜가구는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30% 증가
 - 신청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비율은 77~87.7%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신청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장려금을 수급
- 근로장려금 총신청금액 및 총지급액 또한 비슷하게 같은 기간 동안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도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 총신청금액은 2014년 1.3조원에서 2021년 5.2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18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35%로 가장 컸음
 - 총지급금액은 2014년 1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18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36%로 가장 컸음
 - 신청금액 대비 수혜금액의 비율은 75.1%에서 87.9%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 가구당 평균 수혜액은 [그림 II-9]에서와 같이 연도별 변화가 있었음

- 2014년의 경우 80만원대였던 가구당 평균 수혜액이 2015~2017년에는 70만원대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112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 이는, 2018년 세법개정으로 최대지급액이 상승한 것에 대한 효과로 보임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 2018년 이후 최근까지는 가구당 평균 수혜액이 1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II -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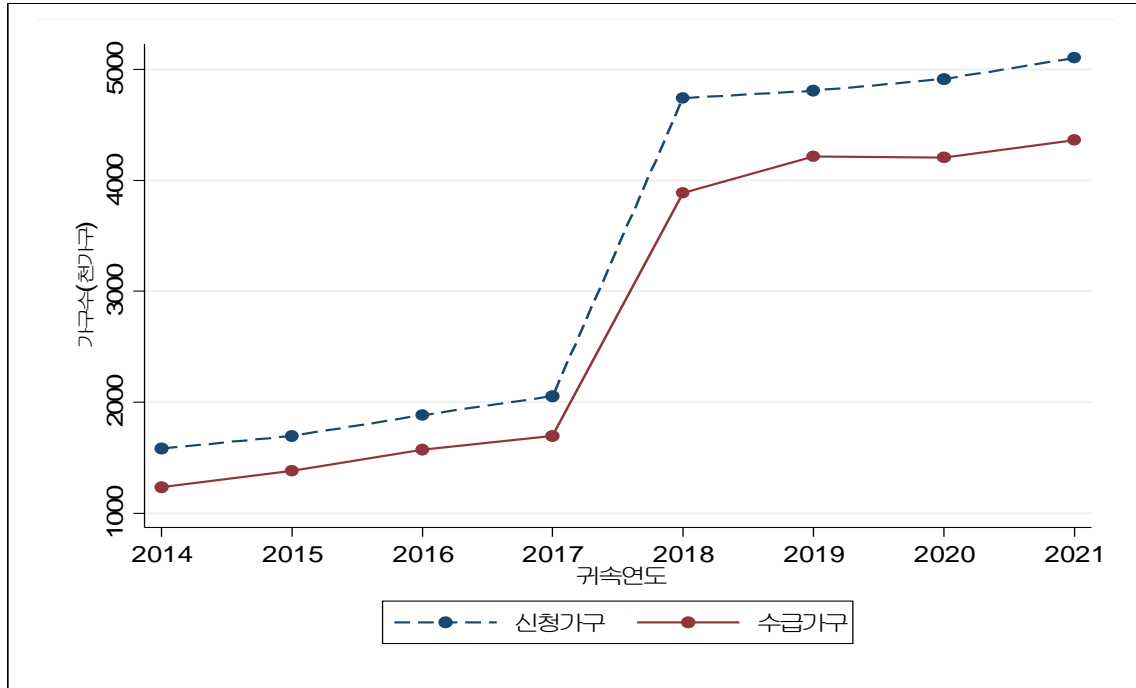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십억원, %,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수	신청	1,584.0	1,695.5	1,883.1	2,056.1	4,742.6	4,807.6	4,914.8	5,102.3
	지급	1,232.5	1,379.0	1,570.4	1,693.6	3,885.2	4,214.3	4,206.8	4,362.3
	(신청-지급)	351.5	316.5	312.6	362.4	857.4	593.3	708.0	740.0
	지급/신청(%)	77.8	81.3	83.4	82.4	81.9	87.7	85.6	85.5
금액	신청	1,361.0	1,304.8	1,417.6	1,586.5	5,315.6	4,997.9	5,256.8	5,227.4
	지급	1,021.7	1,028.0	1,141.6	1,280.8	4,300.3	4,391.5	4,428.6	4,444.7
	(신청-지급)	339.3	276.8	276.0	305.7	1,015.3	606.4	828.2	782.7
	지급/신청(%)	75.1	78.8	80.5	80.7	80.9	87.9	84.2	85.0
가구당 수혜액	신청	85.9	77.0	75.3	77.2	112.1	104.0	107.0	102.5
	지급	82.9	74.6	72.7	75.6	110.7	104.2	105.3	101.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7]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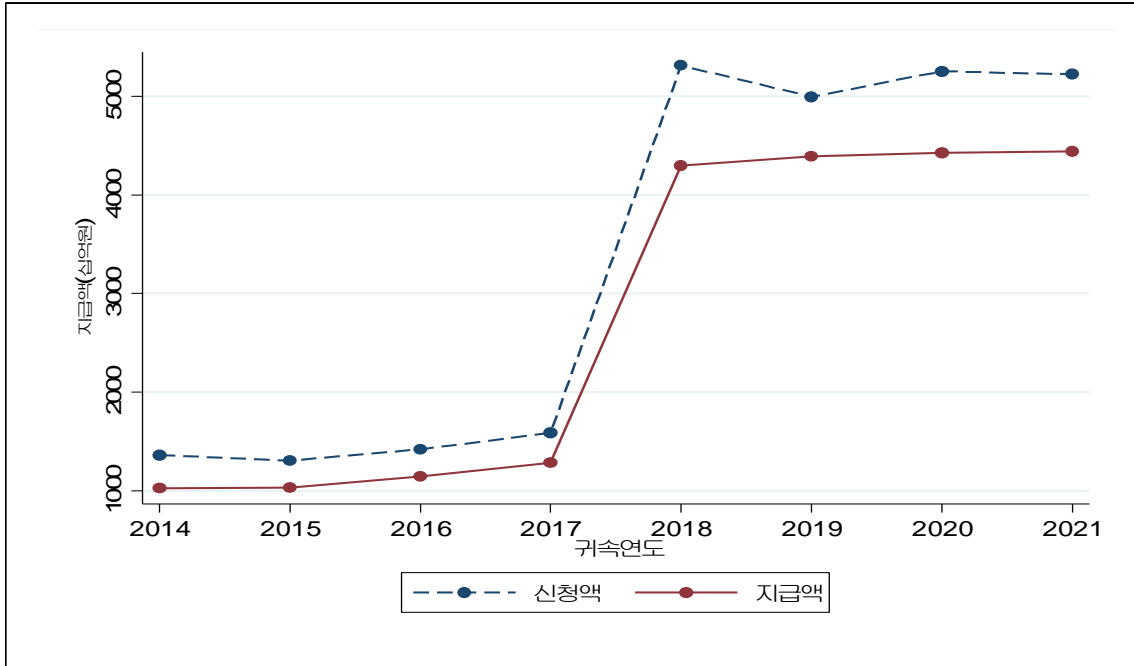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8]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총금액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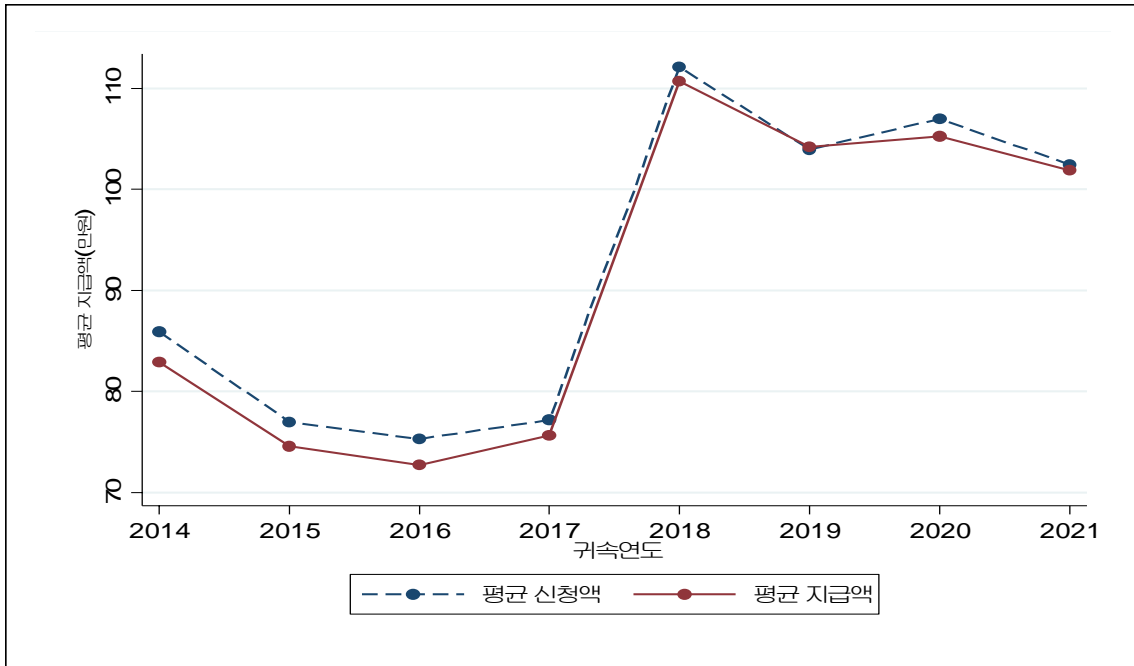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9]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평균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소득수준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 2013년 이후 소득요건은 두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2018년 개정으로 소득수준 2,5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인 가구, 2021년 개정으로 소득수준 3,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갖게 됨
 - 소득수준별 지급대상 가구수 및 지급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제도 확대에 따른 수혜자 현황 및 분포를 살펴봄

- <표 II-7>, [그림 II-10], [그림 II-11], [그림 II-12]는 가구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의 연도별 현황을 보여줌

- 2013년 이후 소득요건은 두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2018년 개정으로 소득수준 2,5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인 가구, 2021년 개정으로 소득수준 3,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획득
 - 2018년 소득수준 상향으로 유입된 2,5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인 수혜가구 수는 총 27만가구로 지급액은 총 1,657억원 수준임
 - 2018년 수혜가구 증가(220만 가구)의 12%, 지급액 증가(3조 195억원)의 5% 수준
 - 2021년 세법개정의 소득요건 완화로 유입된 3,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수혜가구수는 3만 5,000가구로 지급액은 135억원 수준임
 - 2021년 수혜가구 증가(15만 가구)의 23%, 지급액 증가(160억원)의 84% 수준

- [그림 II-10]에서 소득수준별 지급가구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4~2021년 동안 50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연도별 지급가구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연도 및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2014~2017년에는 소득구간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가구수가 증가하나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오히려 감소
 - 2018년 이후에는 소득구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가구수가 증가하다가 2021년에 감소
 - 2018년 이후에는 1,5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는 연도별 변동에 특별한 양상이 없음

-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전 소득구간에서 급격한 가구수의 증가가 있었으며, 증가폭은 500만원 미만에서 가장 컸다는 점임
 - 2018년 소득, 재산, 연령 요건의 완화로 수급가구수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 2018년에 220만가구가 새로이 유입되었으며, 그중 59만가구가 500만원 미만, 34만가구가 1,000만원 미만, 35만가구가 1,500만원 미만, 47만가구가 2,000만원미만에 위치
 - 점증구간 최대소득이 단독가구 40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 맞벌이가구 8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점증 혹은 평탄구간의 초반에 위치한 가구의 유입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표 II -7〉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십억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백만원 미만	가구수	74,779	99,000	124,985	134,500	303,935	334,595	346,612	347,321
	금액	6,351	7,963	10,225	11,781	51,967	64,249	66,131	63,873
2백만원 미만	가구수	123,838	139,346	166,287	136,961	232,845	254,082	265,777	247,914
	금액	29,145	31,258	39,748	33,222	124,458	133,035	139,984	129,460
3백만원 미만	가구수	66,867	79,608	121,125	188,289	322,100	359,388	325,459	374,188
	금액	25,301	28,419	43,188	70,295	281,787	308,320	281,009	332,703
4백만원 미만	가구수	54,524	69,846	85,890	92,488	197,702	251,738	310,643	271,528
	금액	30,633	36,160	45,908	52,559	239,672	290,222	360,641	314,485
5백만원 미만	가구수	51,810	66,534	82,651	95,999	180,976	182,172	201,477	188,392
	금액	37,509	44,109	56,321	70,214	257,481	250,885	279,398	260,343
6백만원 미만	가구수	49,330	65,782	77,633	87,372	166,412	182,191	195,202	188,582
	금액	43,969	53,391	64,786	77,944	251,775	267,994	286,984	277,328
8백만원 미만	가구수	103,855	135,005	159,274	177,137	313,582	326,791	351,787	339,402
	금액	115,878	133,955	159,212	186,990	512,977	518,505	557,719	530,906
9백만원 미만	가구수	52,491	63,102	74,611	85,017	148,656	150,901	160,027	151,320
	금액	70,732	73,567	85,710	100,727	248,287	245,031	258,343	241,193
10백만원 미만	가구수	57,356	68,849	79,012	87,681	144,898	146,337	153,506	148,007
	금액	80,886	82,852	91,611	104,769	239,005	232,796	242,498	231,654
12백만원 미만	가구수	106,888	129,705	149,649	168,702	270,725	282,796	286,088	279,722
	금액	153,115	149,291	158,234	176,993	416,258	413,576	415,127	404,877
13백만원 미만	가구수	58,397	65,385	76,544	84,673	141,472	150,986	146,853	144,490
	금액	83,196	73,860	74,899	79,309	203,216	204,042	196,093	193,795
15백만원 미만	가구수	108,933	99,720	85,638	80,401	267,897	292,104	279,129	273,195
	금액	140,166	127,207	117,472	118,830	352,329	356,559	335,833	334,706

<표 II -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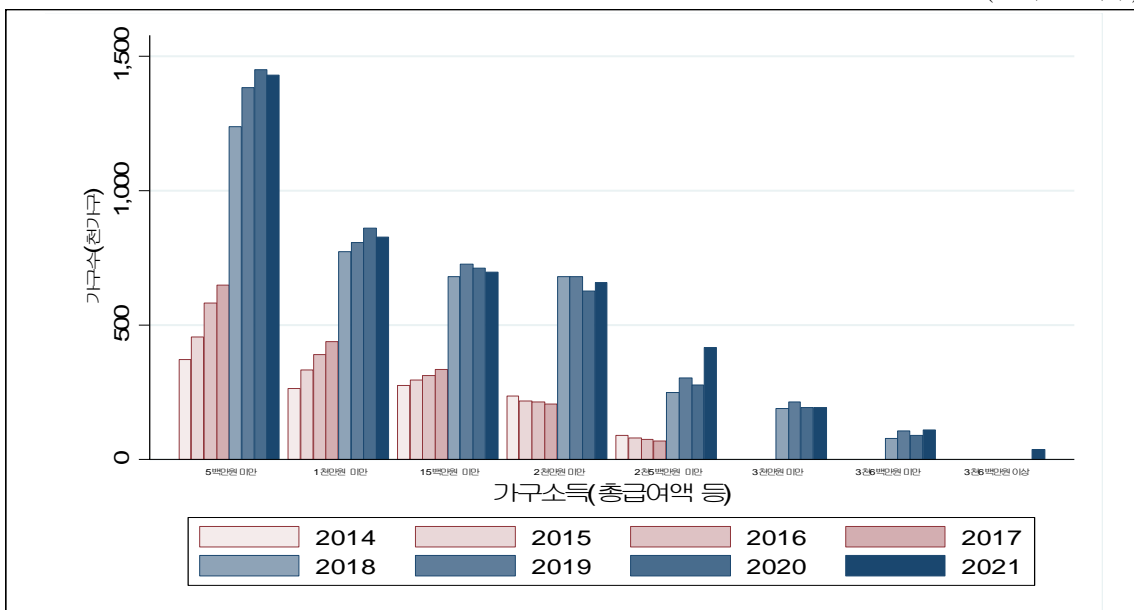
(단위: 가구, 십억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7백만원 미만	가구수	99,333	92,540	94,253	91,243	261,176	282,082	264,879	269,869
	금액	96,542	88,779	96,626	99,156	287,567	282,560	263,203	279,823
20백만원 미만	가구수	135,759	124,975	118,626	115,262	418,073	397,543	361,795	387,089
	금액	80,273	72,591	73,228	74,735	345,400	294,500	270,977	306,118
21백만원 미만	가구수	38,223	35,407	34,419	33,158	56,181	59,168	47,283	123,602
	금액	11,498	10,214	10,284	9,952	85,465	79,736	63,660	73,276
25백만원 미만	가구수	50,163	44,149	39,845	34,729	192,418	243,527	228,260	291,340
	금액	16,488	14,433	14,154	13,345	237,045	266,468	248,640	253,915
28백만원 미만	가구수	-	-	-	-	119,953	136,508	125,904	123,633
	금액	-	-	-	-	96,966	99,814	91,623	107,464
30백만원 미만	가구수	-	-	-	-	68,428	76,276	67,420	68,129
	금액	-	-	-	-	34,052	36,233	31,919	43,250
33백만원 미만	가구수	-	-	-	-	41,187	47,039	41,687	73,425
	금액	-	-	-	-	26,204	28,361	24,355	35,356
36백만원 미만	가구수	-	-	-	-	36,595	58,053	47,045	35,471
	금액	-	-	-	-	8,431	18,642	14,506	16,631
36백만원 이상 (38백만원 미만)	가구수	-	-	-	-	-	-	-	35,706
	금액	-	-	-	-	-	-	-	13,548

자료: 안중석 외(2017)의 <표 IV-2> 참고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제작성

[그림 II -10]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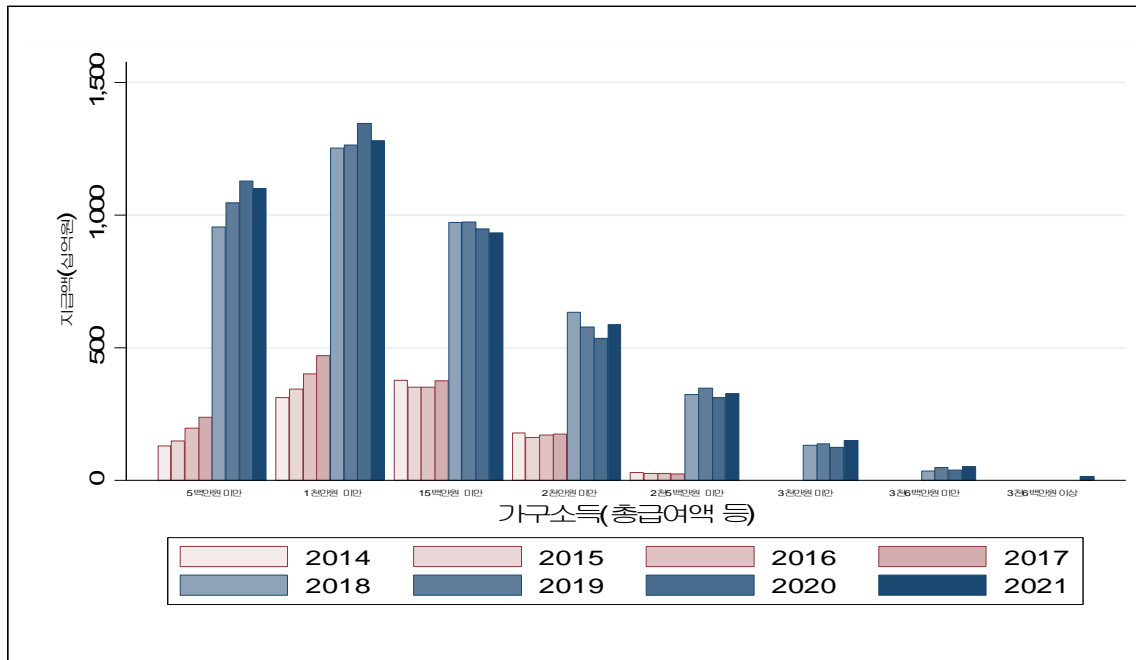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소득수준별 지급액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II-11]에 나타나 있음

- 소득수준별 지급액의 분포는 살펴보면, 2014~2021년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구간에 있는 가구들에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최고 산정액을 지급받는 평탄구간과 인접하거나 일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연도별 지급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연도 및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2014~2017년에는 소득구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증가하나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오히려 감소
 - 2018년 이후에는 소득구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2021년에 감소
 - 1,0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가구분포에서는 지급액 연도별 변동에 특별한 양상이 없음

[그림 II - 11]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소득수준별 가구당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연도별 현황은 <표 II-8>과 [그림 II-12]와 같음
 - 2014~2017년 평균지급액은 1,500만원 미만에서 최고점을 달성하고 이후 점감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2018년의 경우 최고점 달성이 9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어
 - 이는, 2018년 세법개정으로 점감구간이 줄어들면서, 최고 산정액에 도달하는 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른 효과로 보임

- 2018년, 2021년 소득요건 완화로 유입된 가구들의 경우 평균수급액이 전체가구 평균 수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2018~2021년 평균수급액은 각각 102.5~112.1만원 수준(<표 II-8> 참조)
 - 2018~2021년 2,5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소득구간 평균수급액은 23~86만원 수준
 - 이는, 새로 유입된 가구들이 주로 점감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수혜금액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표 II -8> 가구소득 수준별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백만원 미만	8.49	8.04	8.18	8.76	17.1	19.2	19.08	18.39
2백만원 미만	23.53	22.43	23.9	24.26	53.45	52.36	52.67	52.22
3백만원 미만	37.84	35.7	35.66	37.33	87.48	85.79	86.34	88.91
4백만원 미만	56.18	51.77	53.45	56.83	121.23	115.29	116.1	115.82
5백만원 미만	72.4	66.3	68.14	73.14	142.27	137.72	138.67	138.19
6백만원 미만	89.13	81.16	83.45	89.21	151.3	147.1	147.02	147.06
8백만원 미만	111.58	99.22	99.96	105.56	163.59	158.67	158.54	156.42
9백만원 미만	134.75	116.58	114.88	118.48	167.02	162.38	161.44	159.39
10백만원 미만	141.02	120.34	115.95	119.49	164.95	159.08	157.97	156.52
12백만원 미만	143.25	115.1	105.74	104.91	153.76	146.25	145.1	144.74
13백만원 미만	142.47	112.96	97.85	93.67	143.64	135.14	133.53	134.12
15백만원 미만	128.67	127.56	137.17	147.8	131.52	122.07	120.31	122.52
17백만원 미만	97.19	95.94	102.52	108.67	110.1	100.17	99.37	103.69
20백만원 미만	59.13	58.08	61.73	64.84	82.62	74.08	74.9	79.08
21백만원 미만	30.08	28.85	29.88	30.01	152.12	134.76	134.64	59.28

<표 II -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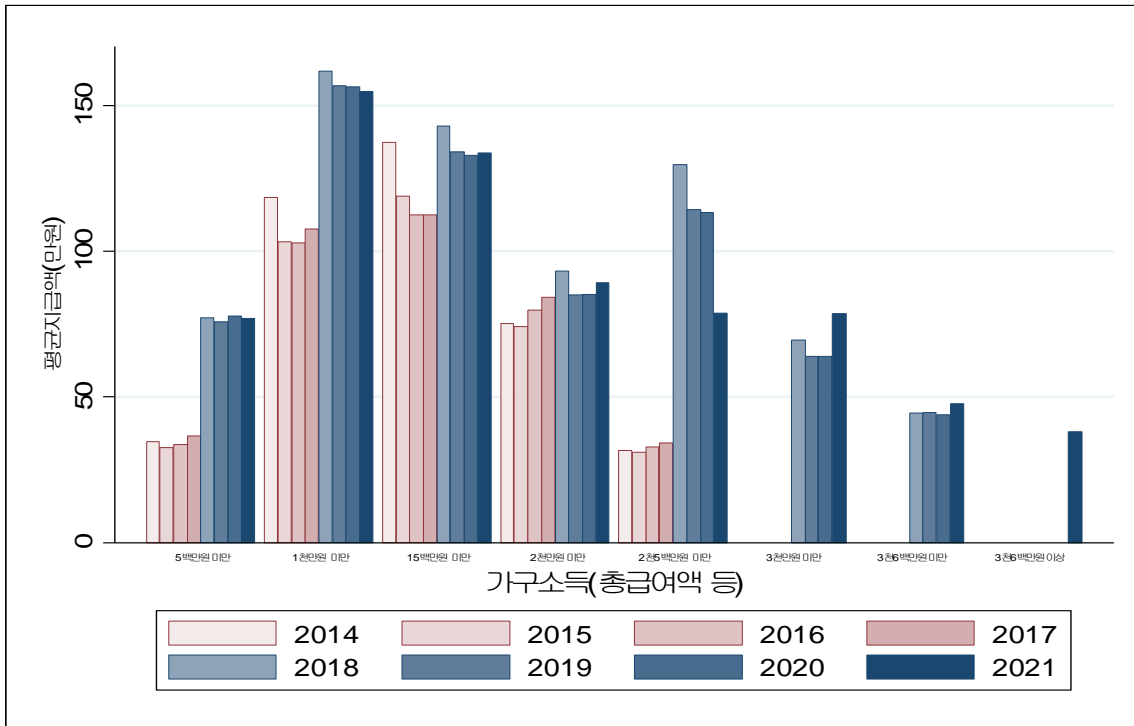
(단위: 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5백만원 미만	32.87	32.69	35.52	38.43	123.19	109.42	108.93	87.15
28백만원 미만					80.84	73.12	72.77	86.92
30백만원 미만					49.76	47.5	47.34	63.48
33백만원 미만					63.62	60.29	58.42	48.15
36백만원 미만					23.04	32.11	30.83	46.89
36백만원 이상 (38백만원 미만)								37.94

자료: 안중석 외(2017)의 <표 IV-3> 참고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II -12]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평균수급액의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연령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 2014년 이후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이 매년 완화되어 연도별로 해당 연령군의 지급가구수와 지급금액에 변화를 주었을 것으로 예상됨

- 연령요건은 2015년 50세 이상, 2016년 40세 이상, 2017년 30세 이상, 2018년 제한 없음으로 완화
- <표 II-9>과 [그림 II-14]에서는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의 완화에 따라 해당 연령군에서 수혜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혜가구수는 60세 미만은 2015년 25만가구에서 44만가구로, 50세 미만은 2016년 30만가구에서 43만가구로, 40세 미만은 2017년 45만가구에서 28만가구로 증가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전 연령의 수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연령요건 폐지의 효과로 30세 미만 수혜자 수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남
 - 2017년 3만가구에 달했던 30세 미만 가구는 2018년 107만가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의 요건 완화로 인한 효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임
 - 2018년 연령요건 완화는 단독가구에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이는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대거 유입을 의미
- 연령별 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또한 수혜가구수의 변화와 비슷하게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 완화에 따라 해당 연령군의 수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표 II-9>와 [그림 II-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60세 미만은 2015년 2,351억원에서 3,034억원으로, 50세 미만은 2016년 2,789억원에서 3,368억원으로, 40세 미만은 2017년 1,407억원에서 2,081억원으로 증가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전 연령의 수급액이 증가하였으나 연령요건 폐지의 효과로 30세 미만의 수급액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남
 - 2017년 30세 미만 가구의 수급액은 288억원에서 2018년 9,323억원으로 다른 연령대의 요건 완화로 인한 효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임
-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 완화에 따라 해당 연령군의 평균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표 II-9>와 [그림 II-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독가구는 동일 소득수준당 수급액이 가장 적은 가구유형이기 때문으로 보임
- 60세 미만은 2015년 95.3만원에서 69.4만원으로, 50세 미만은 2016년 93.2만원에서 78.4만원으로, 40세 미만은 2017년 96.6만원에서 74.3만원으로 감소
 - 2018년 세법개정으로 동일 소득에 대한 산정액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전 연령

에서 평균수급액이 증가하였으나 30세 미만에서는 2017년 93.8만원에서 2018년 86.9만원으로 감소

- 이는 30세 미만의 경우 단독가구가 대거 유입함에 따른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II -9>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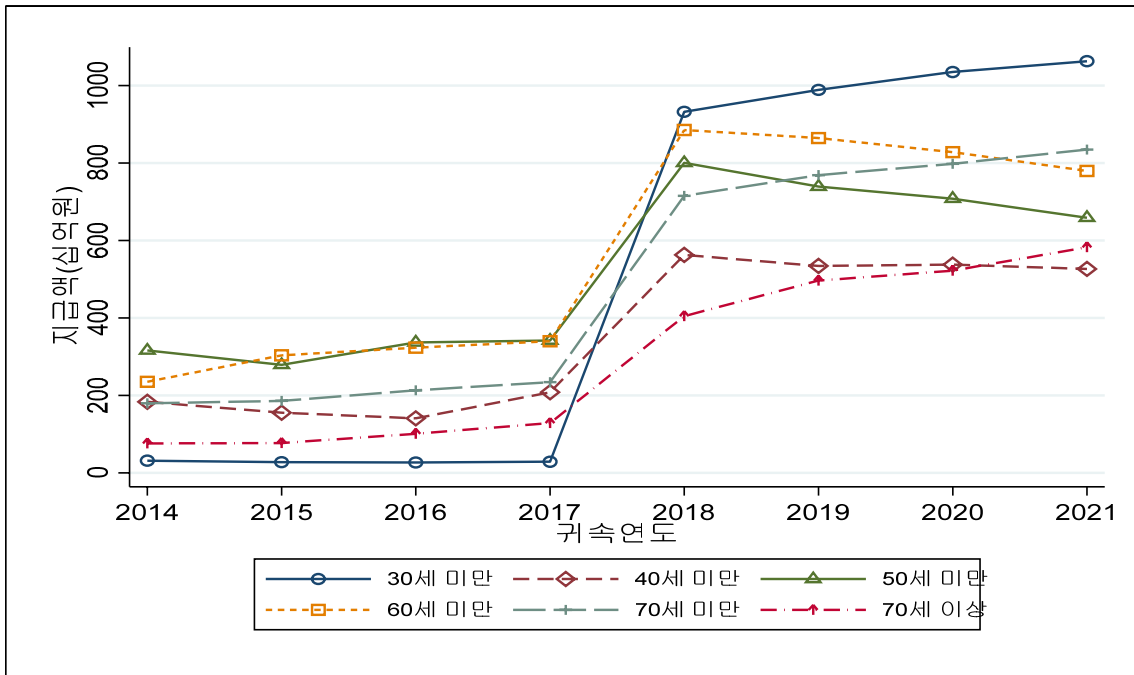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십억원,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세 미만	가구수	33.8	29.9	27.3	30.7	1073.3	1182.6	1187.6	1254.1
	금액	31.6	27.7	26.7	28.8	932.3	988.8	1034.9	1062.9
	가구당 평균 수급액	93.4	92.6	97.7	93.8	86.9	83.6	87.1	84.8
30~39세	가구수	197.1	168.4	145.6	280.0	519.0	519.8	524.1	544.1
	금액	183.3	155.3	140.7	208.1	562.8	534.1	537.6	526.6
	가구당 평균 수급액	93.0	92.2	96.6	74.3	108.4	102.8	102.6	96.8
40~49세	가구수	335.9	299.3	429.6	399.6	632.9	623.8	604.5	585.5
	금액	316.1	278.9	336.8	341.6	800.3	739.1	707.9	658.8
	가구당 평균 수급액	94.1	93.2	78.4	85.5	126.4	118.5	117.1	112.5
50~59세	가구수	246.7	437.3	452.3	432.8	716.4	757.7	725.4	710.4
	금액	235.1	303.4	323.3	339.9	885.2	864.4	828.0	779.5
	가구당 평균 수급액	95.3	69.4	71.5	78.5	123.6	114.1	114.2	109.7
60~69세	가구수	248.5	267.6	294.9	299.2	562.2	649.2	674.0	722.1
	금액	179.6	185.7	213.2	234.0	715.1	768.7	798.1	834.6
	가구당 평균 수급액	72.3	69.4	72.3	78.2	127.2	118.4	118.4	115.6
70세 이상	가구수	170.6	176.5	220.7	251.5	381.3	481.2	491.3	546.1
	금액	76.0	77.0	101.0	128.4	404.7	496.5	522.1	582.5
	가구당 평균 수급액	44.6	43.6	45.8	51.1	106.1	103.2	106.3	106.7
전체 (연도별)	가구수	1232.5	1379.0	1570.4	1693.6	3885.2	4214.3	4206.8	4362.3
	금액	1021.7	1028.0	1141.6	1280.8	4300.3	4391.5	4428.6	4444.7
	가구당 평균 수급액	82.9	74.6	72.7	75.6	110.7	104.2	105.3	101.9

자료: 안중석 외(2017)의 <표 IV-4> 참고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II -13] 연령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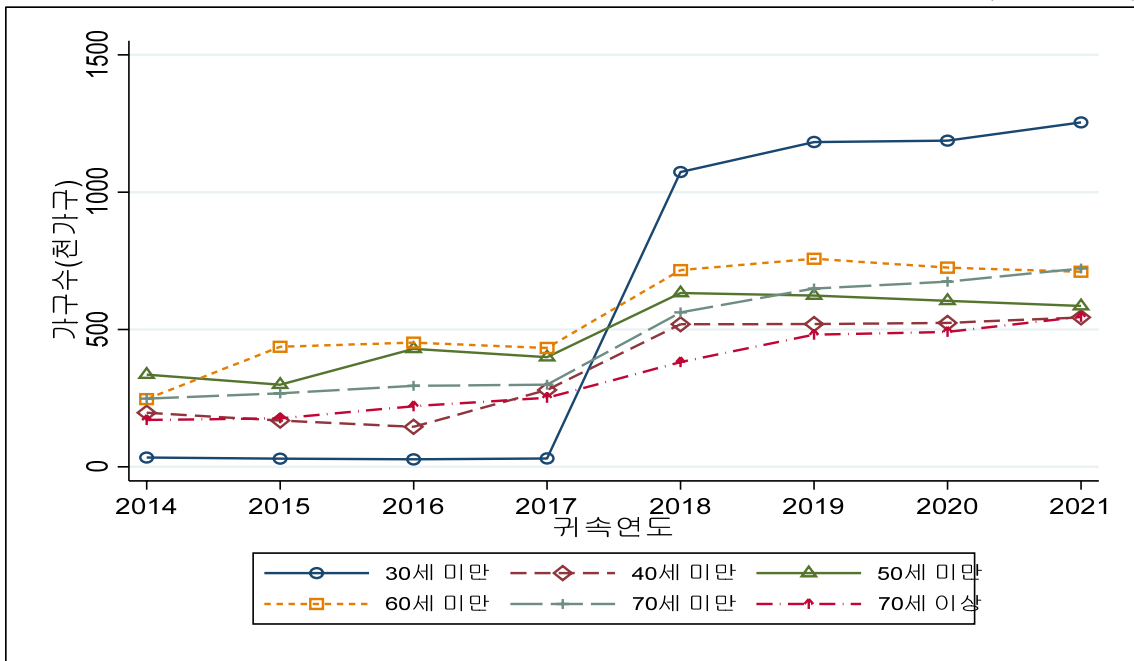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14]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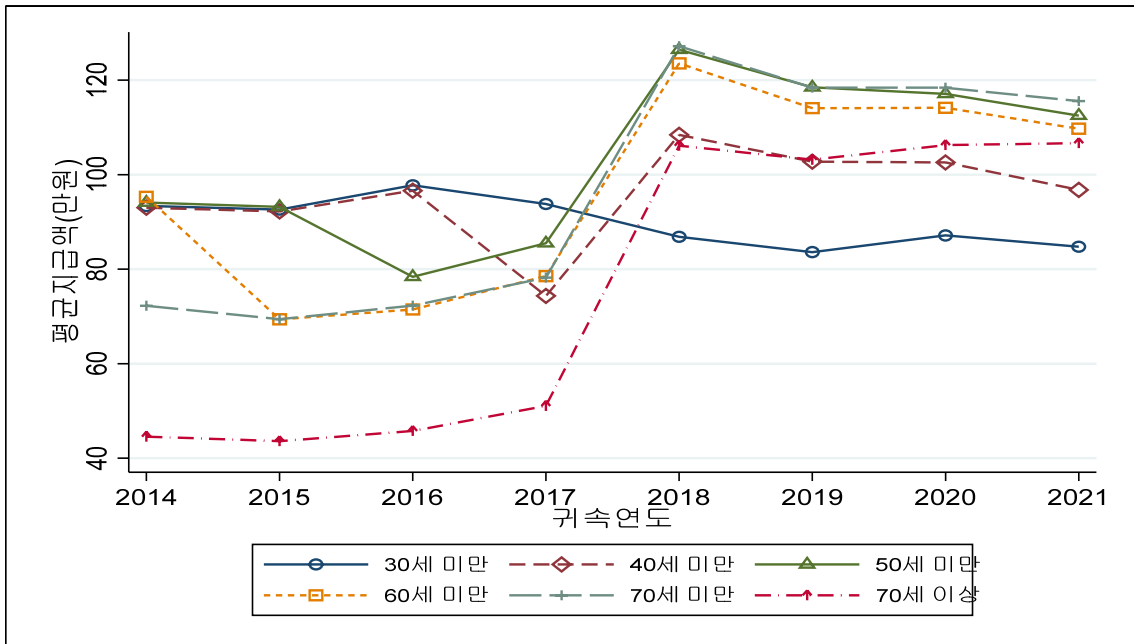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15] 연령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라. 소득 종류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반이 되는 근로소득의 개념은 초반에는 급여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8~2010년에는 수혜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다가 점차 대상자를 확대함²⁹⁾
 - 2011년부터는 사업자 중 급여소득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험모집원, 방문 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 포함
 - 2014년부터는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자까지 포함
 - 2017년부터는 기타소득이 있는 종교인 포함

-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 및 지급액 현황은 <표 II-10>, [그림 II-16], [그림 II-17]에 정리하였음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가구수와 지급액이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29) 안종석 외(2017), pp. 25~34를 참고함

- 전 연도에 걸쳐서 근로소득자의 지급가구수 및 지급액이 사업소득자의 지급가구수 및 지급액보다 높음
- 그 외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수급액이 2019년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큰 변동은 없음

- <표 II-10>, [그림 II-18]은 소득종류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의 변화를 보여줌
 - 가구당 평균수급액은 그 외 소득자(종교인 소득자)에서 2021년 기준 135.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소득자(104.5만원), 근로소득자(99.9만원) 순이었음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평균수급액은 2018년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2018년 이전에는 71.9~87.9만원 수준에서 2018년 이후 101.2~116.5만원 수준으로 증가

<표 II -10>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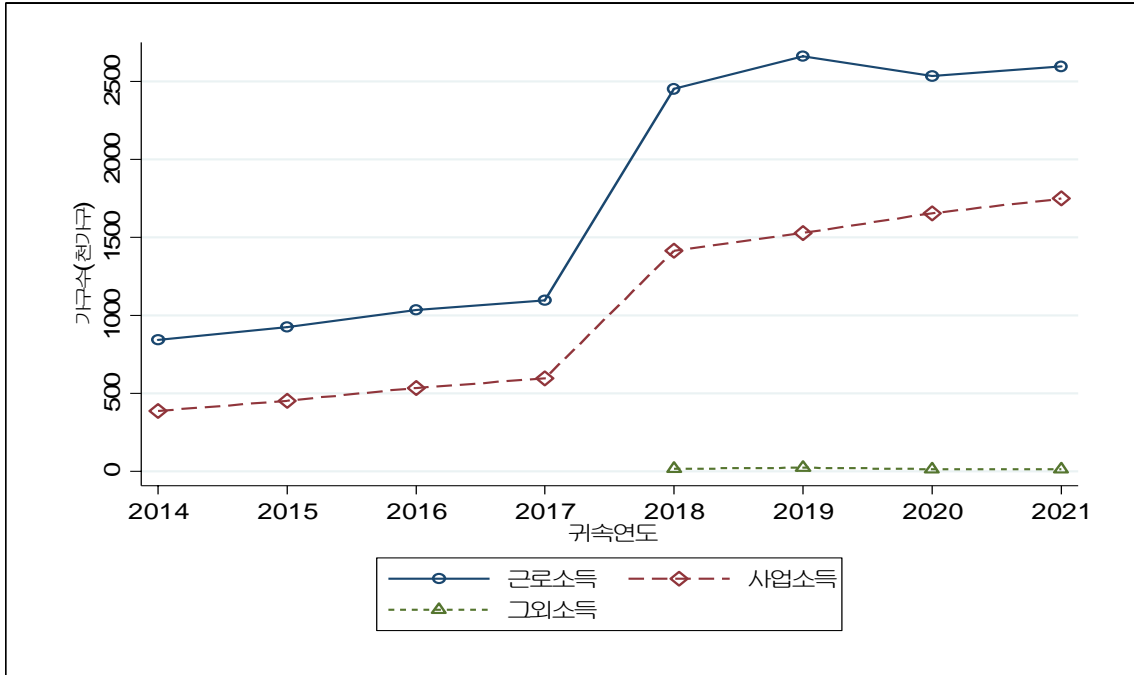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십억원,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수	근로소득자	843.8	925.0	1034.1	1097.3	2452.4	2660.5	2535.6	2597.6
	사업소득자	388.7	453.9	536.3	596.4	1415.3	1529.2	1655.8	1749.3
	그 외 소득 ¹⁾	-	-	-	-	17.5	24.6	15.5	15.4
금액	근로소득자	680.0	665.4	720.4	795.7	2626.0	2691.9	2603.4	2595.5
	사업소득자	341.7	362.6	421.2	485.1	1649.2	1670.7	1803.6	1828.4
	그 외 소득 ¹⁾	-	-	-	-	25.1	28.9	21.6	20.9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	근로소득자	80.6	71.9	69.7	72.5	107.1	101.2	102.7	99.9
	사업소득자	87.9	79.9	78.5	81.3	116.5	109.3	108.9	104.5
	그 외 소득 ¹⁾	-	-	-	-	143.3	117.8	139.6	135.5

주: 1) 국세통계연보에서 2018, 2019년은 그 외 소득, 2020, 2021년은 종교인소득의 항목을 기록함
 자료: 안중석 외(2017)의 <표 IV-5>를 참고하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16]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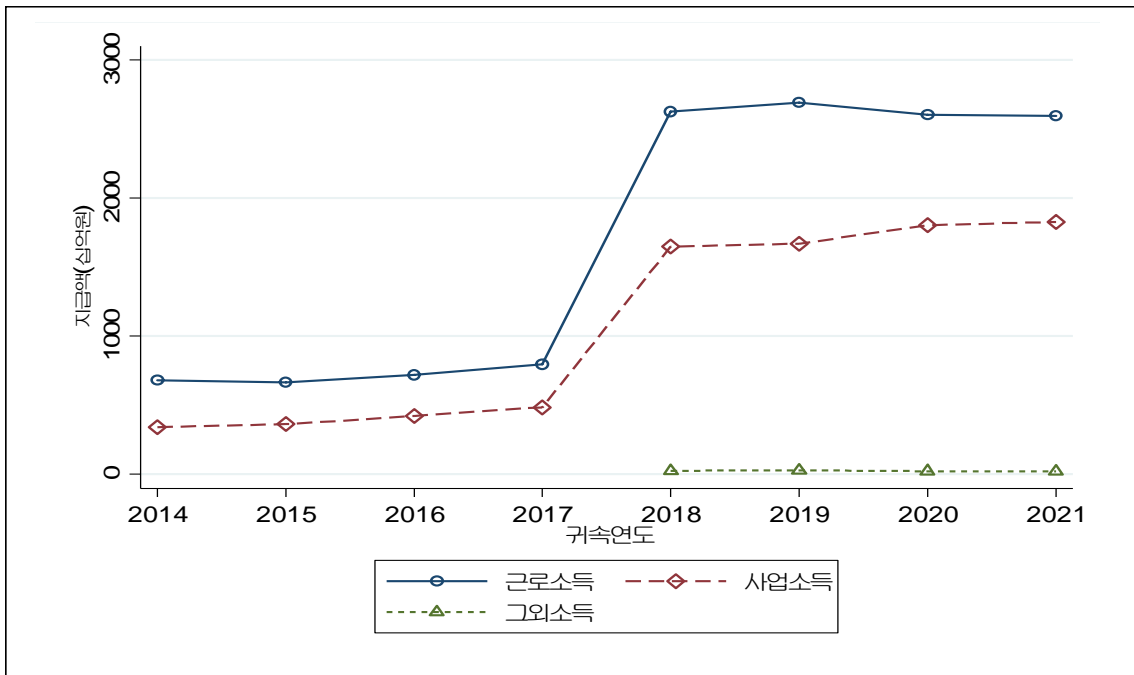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17]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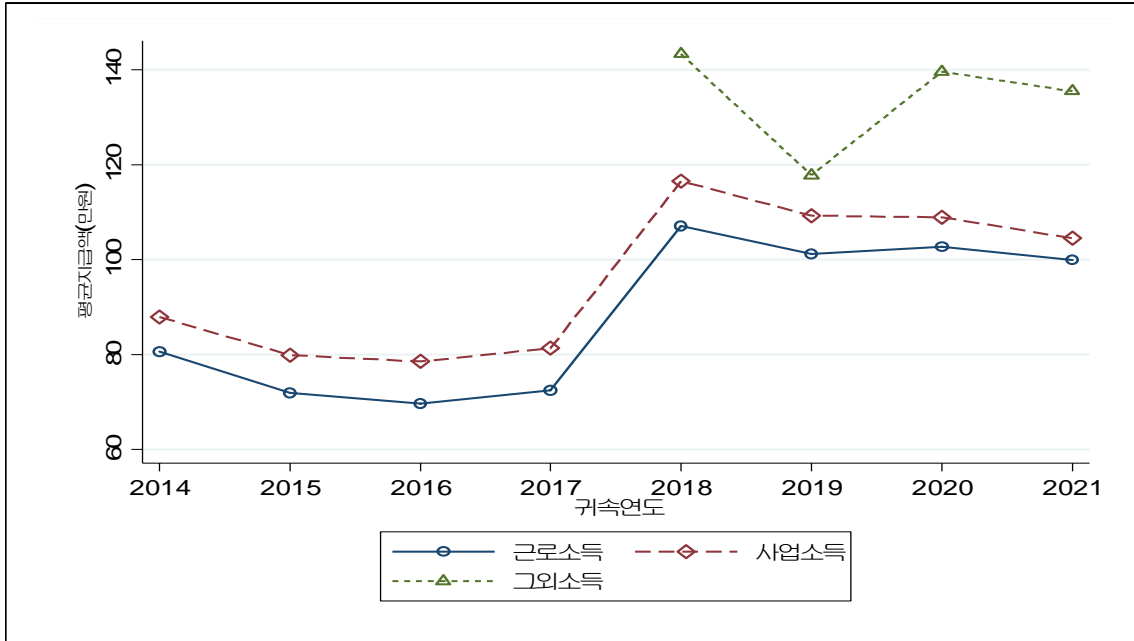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 18]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마. 재산 규모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008년도 1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로 2008~2021년간 2014년, 2018년에 총 두 번 확대되었음
 - 2014~2017년 재산요건은 1억 4천만원 미만(1억원 초과시 장려금의 50% 감액)으로, 2018~2021년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1억 4천만원 초과시 장려금의 50% 감액)으로 확대

-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현황은 <표 II-11>, [그림 II-19]와 같음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수혜가구로 편입된 재산규모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66만가구에 4,213억원이 지급됨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전 구간에서의 수혜가구가 증가하였으나,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다른 구간에 비하여 증가가 크지 않았음
 - 재산구간별 가구수 분포를 살펴보면 2014~2018년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함
 - 반면, 2019~2021년에는 1억 4천만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

- 이에 대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코로나19 등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새롭게 수급가구로 편입되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음

□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연도별 현황은 <표 II-11>, [그림 II-20]과 같으며, 앞서 살펴본 지급가구수와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음

- 2014~2018년의 재산구간별 지급액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장려금이 지급됨을 알 수 있음
- 반면, 2019~2021년에는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에 가장 많은 장려금이 지급됨
 - 이는,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급가구수는 많으나 점감구간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지급액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재산규모별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수혜금액의 연도별 현황은 <표 II-11>, [그림 II-21]에서와 같이 대체로 재산규모 전반에 고루 분포되어있으며, 2018년 제도 확대에 의한 증가를 제외한다면 연도별 뚜렷한 변화패턴은 없음

- 재산규모 1억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14~2017년에 평균지급액이 80만원 전후, 2018~2021년 110만원 전후로 나타남
- 2014~2017년 재산규모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지급액이 가장 낮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다른 재산규모 가구들과 비슷하여짐
- 2018년부터 새로 편입된 재산규모 1억 4천만원 이상 가구의 평균 근로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적음

<표 II -11> 재산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천가구, 십억원,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천만원 미만	가구수	42.5	48.4	66.6	78.1	111.9	119.0	136.3	157.6
	금액	34.0	32.3	43.7	57.4	123.4	123.5	142.2	157.5
	가구당 평균수급액	80.0	66.8	65.7	73.6	110.2	103.8	104.3	100.0
3천만원 미만	가구수	198.4	262.8	306.6	312.2	545.6	551.4	527.5	521.5
	금액	172.7	199.0	226.7	240.8	623.9	606.4	580.4	558.5
	가구당 평균 수급액	87.0	75.7	73.9	77.1	114.4	110.0	110.0	107.1
5천만원 미만	가구수	286.8	337.8	360.0	380.3	735.3	754.9	725.5	721.9
	금액	259.3	270.7	282.0	307.9	855.9	844.0	809.8	782.1
	가구당 평균 수급액	90.4	80.1	78.4	81.0	116.4	111.8	111.6	108.3

<표 II -1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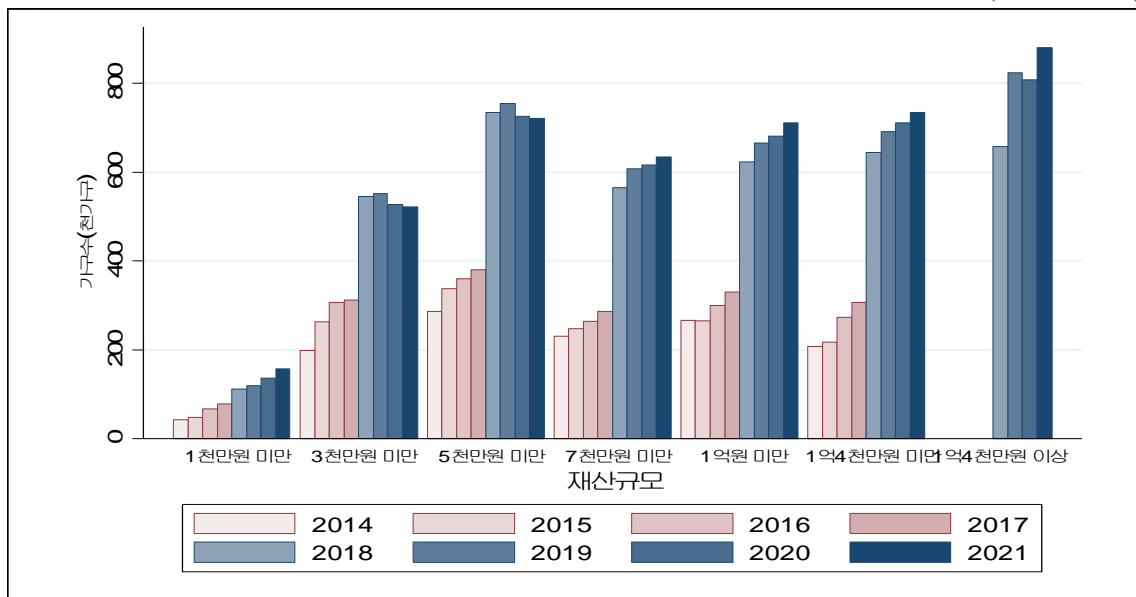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십억원,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7천만원 미만	가구수	230.8	247.1	264.3	286.4	565.8	608.1	616.3	633.9
	금액	211.2	205.2	216.0	242.3	679.3	696.4	706.6	702.9
	가구당 평균 수급액	91.5	83.0	81.7	84.6	120.1	114.5	114.6	110.9
1억원 미만	가구수	266.7	265.6	300.4	330.5	623.5	665.1	681.6	711.7
	금액	247.3	227.1	254.5	292.6	776.7	790.1	811.8	820.0
	가구당 평균 수급액	92.7	85.5	84.7	88.5	124.6	118.8	119.1	115.2
1억 4천만원 미만	가구수	207.3	217.4	272.6	306.0	644.9	691.5	711.3	734.8
	금액	97.3	93.8	118.7	139.8	819.8	840.4	871.8	873.8
	가구당 평균 수급액	46.9	43.1	43.5	45.7	127.1	121.5	122.6	118.9
1억 4천만원 이상	가구수	-	-	-	-	658.3	824.3	808.4	880.9
	금액	-	-	-	-	421.3	490.7	506.1	549.9
	가구당 평균 수급액	-	-	-	-	64.0	59.5	62.6	62.4
전체 (연도별)	가구수	1232.5	1379.0	1570.4	1693.6	3885.2	4214.3	4206.8	4362.3
	금액	1021.7	1028.0	1141.6	1280.8	4300.3	4391.5	4428.6	4444.7
	가구당 평균 수급액	82.9	74.6	72.7	75.6	110.7	104.2	105.3	101.9

자료: 안중석 외(2017)의 <표 IV-6>를 참고하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19]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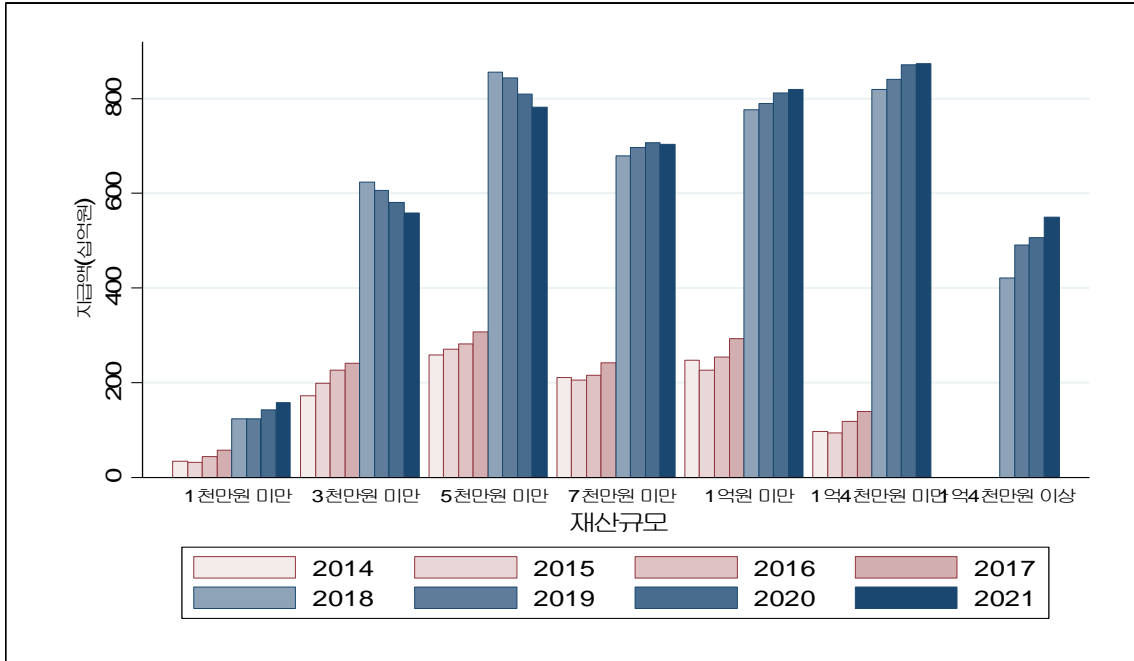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20]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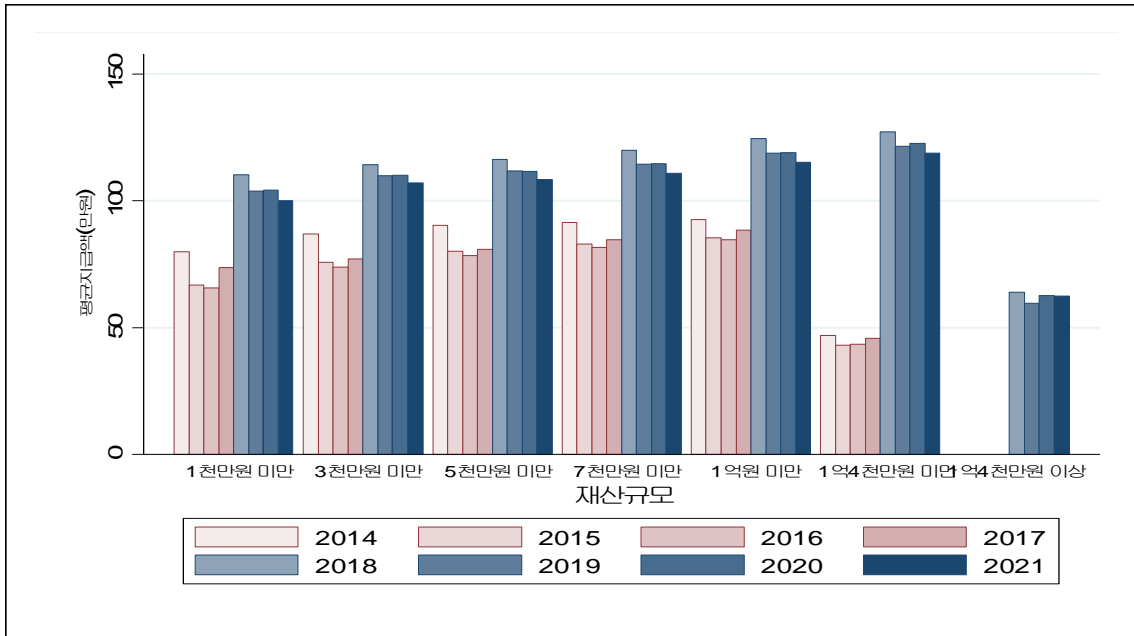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21]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바. 가구유형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2013년부터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가구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맞벌이가구에 가장 높은 장려금과 가장 넓은 소득구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홑벌이, 단독가구 순임

-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 및 지급액의 연도별 추이를 <표 II-12>, [그림 II-22], [그림 II-23]에 정리하였는데, 2018년 이전과 이후로 차이가 발생함
 - 2018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홑벌이가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순이었음
 - 2018년 세법개정 이후에는 단독가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독가구가 최대 수혜가구가 되었으며 그다음은 홑벌이, 맞벌이가구 순임
 - 총지급액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 2018년 이전에는 홑벌이가구에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2014년을 제외하고는 단독가구, 그다음은 맞벌이가구였음
 - 2018년 이후에는 단독가구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은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의 순임
 - 맞벌이를 유도하고자 가장 큰 장려금과 넓은 소득구간을 허용하였으나 수혜가구수와 지급액은 크지 않았음
 - 또한, 2018년 세법개정에도 맞벌이가구의 수와 지급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음

- 반면, 평균지급액은 <표 II-12>, [그림 II-24]에서와 같이 지급가구수나 지급액과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임
 - 2018년 이전 맞벌이가구에 대한 평균지급액이 99.5~116.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홑벌이(89.5~100.3만원), 단독가구(32.8~45.7만원) 순이었음
 - 2018년 이후 홑벌이가구에 대한 평균지급액이 137.6~148.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2020년 제외), 맞벌이가구에 대한 평균지급액도 134.4~146.4만원으로 비슷하게 유지됨
 - 2018년에 대거 유입된 단독가구에 대한 평균지급액은 84.6~87.1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 II -12>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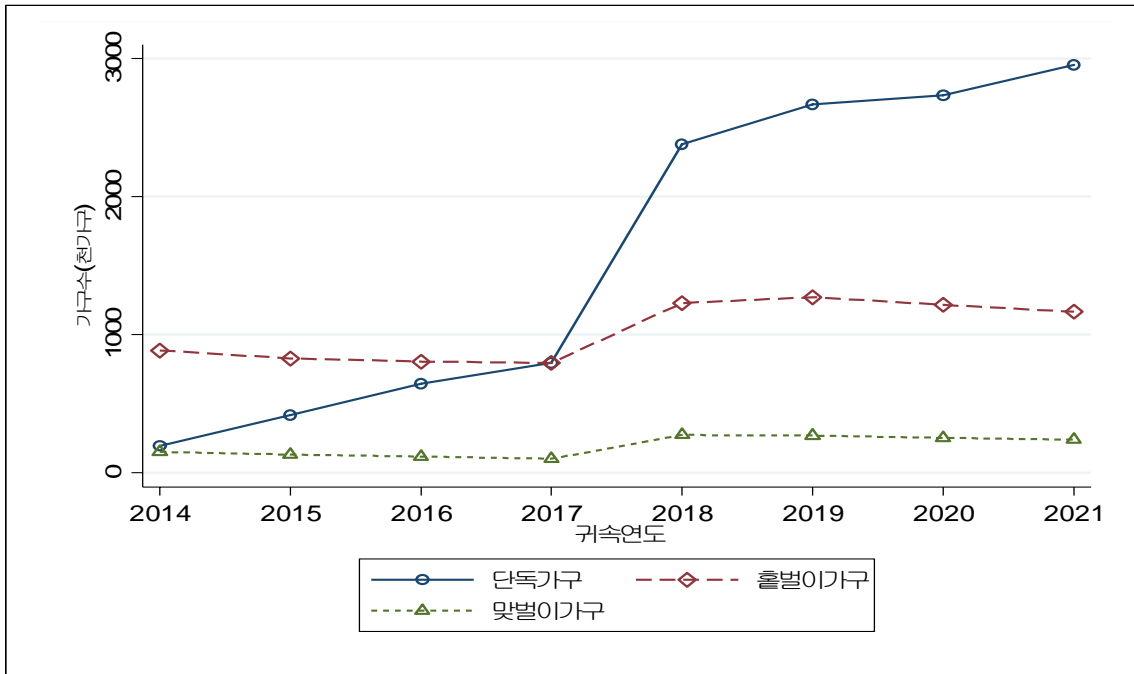
(단위: 천만가구, 십억원, 만원)

귀속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독 가구	가구수	194.7	418.0	646.5	795.4	2381.2	2671.4	2736.3	2956.2
	금액	63.9	155.1	263.8	363.5	2068.2	2259.8	2382.6	2510.8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	32.8	37.1	40.8	45.7	86.9	84.6	87.1	84.9
홀벌이 가구	가구수	887.2	828.6	806.3	796.1	1230.2	1272.8	1217.4	1166.2
	금액	807.3	741.3	752.1	798.7	1831.4	1769.0	1687.3	1604.6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	91.0	89.5	93.3	100.3	148.9	139.0	138.6	137.6
맞벌이 가구	가구수	150.7	132.4	117.7	102.1	273.8	270.0	253.1	240.0
	금액	150.4	131.7	125.7	118.7	400.7	362.8	358.7	329.3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	99.8	99.5	106.8	116.2	146.4	134.4	141.7	137.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22]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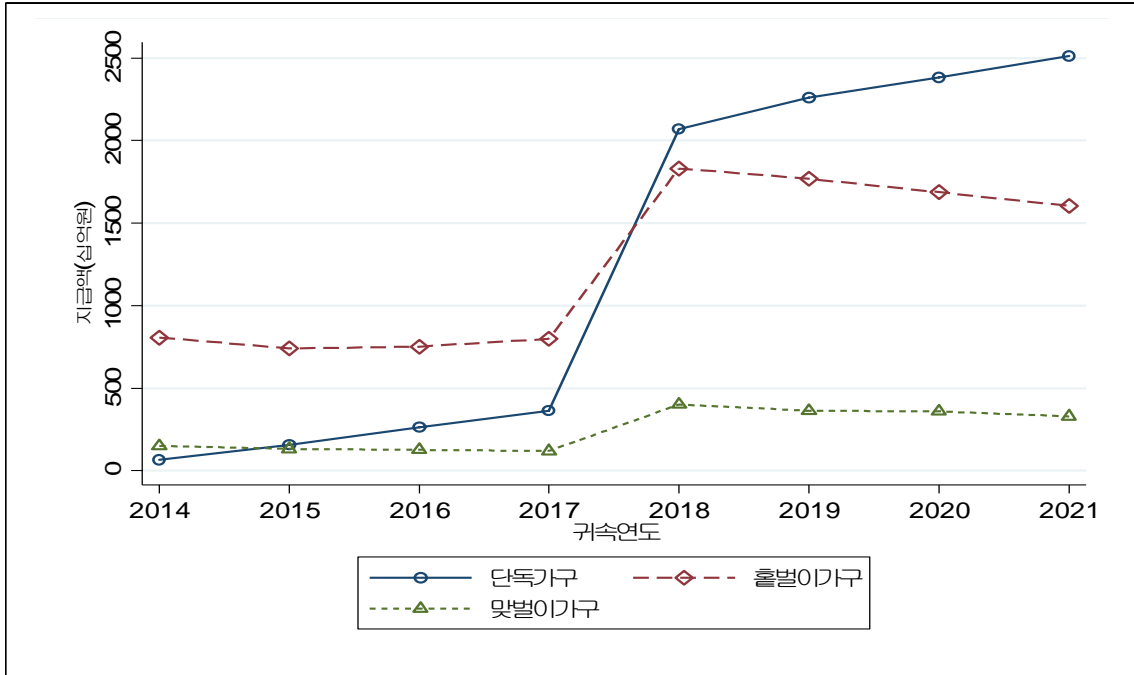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2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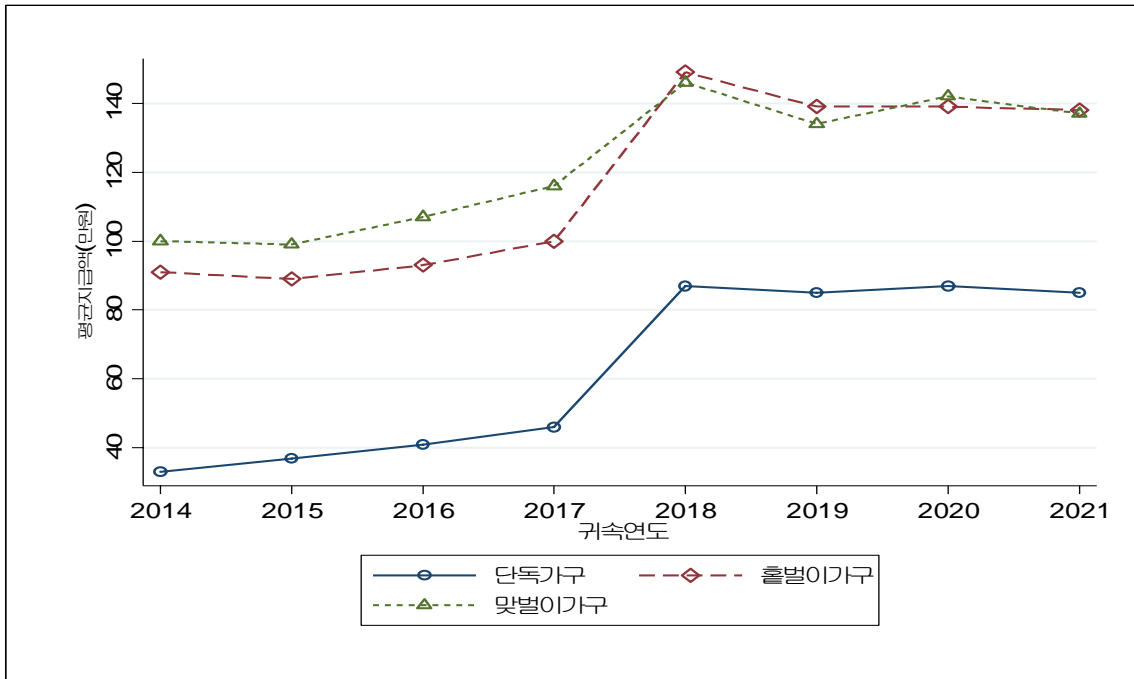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24]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Ⅲ. 주요국 근로장려세제



Ⅲ. 주요국 근로장려세제³⁰⁾

1. 미국

-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197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음
 - 1970년대 초반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NIT)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됨³¹⁾

가. 현황³²⁾

- 미국의 EITC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임
- EITC 수급자격은 조정총소득(Aggregate Gross Income, AGI)요건, 총급여액(Earned Income)요건,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요건, 적격자격 요건(사회보장번호, 미국 시민권 혹은 거주 외국인 등), 연령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주어짐³³⁾
 - 수급을 위해서는 조정총소득(AGI)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
 - 조정총소득(AGI)이란 총소득에 조정분을 제한 것을 의미함
 - 총소득은 근로소득, 배당금, 자본이득,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며 조정분은 교육비용, 학생대출이자, 양육비, 연금계좌 납부액 등을 의미함³⁴⁾

30) 신상화·정다운(2018); 전병목·신상화(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31) Hotz, V.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2001.

32) IRS, "publication 596(2022)," Earned Income Tax Credit,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6>, 검색일자: 2023. 4. 6.

33) IRS, "Earned Income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able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 검색일자: 2023. 4. 6.

34) IRS, "Definition of Adjusted Gross Income," <https://www.irs.gov/e-file-providers/definition-of-adjusted-gross-income>, 검색일자: 2023. 4. 6.

- 조정총소득 요건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달라짐(<표 III-1> 참고)
- 근로를 통한 총급여액(Earned Income)이 \$1 이상 존재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의 크기가 결정됨
 - 고용자의 총급여액은 임금(Wages), 월급(Salaries), 팁(Tips) 등 과세 가능한 고용주로부터의 급여를 포괄함
 - 자영업자의 총급여액은 순소득액(Net Earnings)을, 법제상 고용인(Satutory employee)은 총소득액(Gross Income)을 의미함
 - 혼인한 상태로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 한 명의 배우자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려금 수급자격이 부여됨
- 투자소득 요건은 투자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을 의미함 (<표 III-1> 참고)
 - 2022년(소득귀속연도) 기준으로 투자소득은 \$10,300 이하여야 함
- 적격자격요건은 세금 신고자가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미국시민권자이거나 과세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이어야 함을 의미함
 - 단, 세금 신고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자격을 만족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도 모두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함
 - 또한, 세금신고 당사자는 미국시민이거나 과세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어야 함
 - 단,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 둘 중 한 명만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면 조건을 충족함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추가로 적용됨
 - 자녀가 없는 경우 세금신고자의 나이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한 쪽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1년(귀속연도 기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도 수급자격을 부여함
- 부부인 경우 대체로 부부합산소득으로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아래와 같은 예외상황에는 장려금 지급을 허용함

- 6개월 이상 동거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6개월 이상 별거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함

<표 III-1> 2022년 귀속 총조정소득 및 투자소득 한도

(단위: 달러)

구분	적격 자녀 수				투자소득 한도
	0 ³⁾	1	2	3이상	
독신 ¹⁾	16,480	43,492	49,399	53,057	10,300 이하
부부합산 ²⁾	22,610	49,622	55,529	59,187	10,300 이하

주: 1) 독신(single)이거나 기혼이지만 별거 등의 이유로 분리과세(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는 경우
 2) 부부분리과세(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6개월 이상 분리되거나 법적으로 별거한 상태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자격이 주어짐
 3) 자녀가 없는 경우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부부라면, 적어도 한쪽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료: I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 검색일자: 2023. 4. 6.

-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 연령, 거주, 합산과세(Joint Return)요건을 만족해야 함
 -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위한 부양자녀 관계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함
 - 자녀(아들, 딸, 입양아, 위탁아동) 혹은 자녀(아들, 딸, 입양아, 위탁아동)의 후손인 경우
 - 형제 및 자매(의붓형제 및 자매 포함)나 형제 및 자매의 자녀인 경우
 - 부양자녀의 연령은 과세기간 동안 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 단, 학생인 경우(24세 미만)나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연령요건 없음)에는 연령요건을 완화함
 - 거주요건은 부양자녀와 미국 내에서 과세연도의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부양자녀는 합산과세(joint return)를 신청하지 않아야 함
- EITC 지급액은 총급여액(earned income)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최대지급액에 도달하면 점차 감소하는, 점증-평탄-점감의 세 가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확한 급여액은 [그림 III-1]과 <표 III-3>에서와 같이 부양자녀 수와 혼인 및

세금 신고상태(Single, Head of Households, Widowed, Married Filing Jointly)에 따라서 달라짐

- 최대장려금은 <표 III-2>에서와 같으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이 커지며, 부양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구조지만 자녀 수에 따라 비례하여 커지지는 않음
 - 부부의 경우 독신(혹은 별거부부)에 비하여 좀 더 넓은 평탄구간과 최대소득액을 인정받는 구조임
- 근로장려금은 TANF, Medicaid, SSI Food stamp, Low-income housing 수급을 위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³⁵⁾

<표 III -2> 2022년 EITC 최대장려금

(단위: USD)

부양자녀 수			
0	1	2	3명 이상
560	3,733	6,164	6,935

자료: I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 검색일자: 2023. 4. 6.

<표 III -3> 2022년 EITC 수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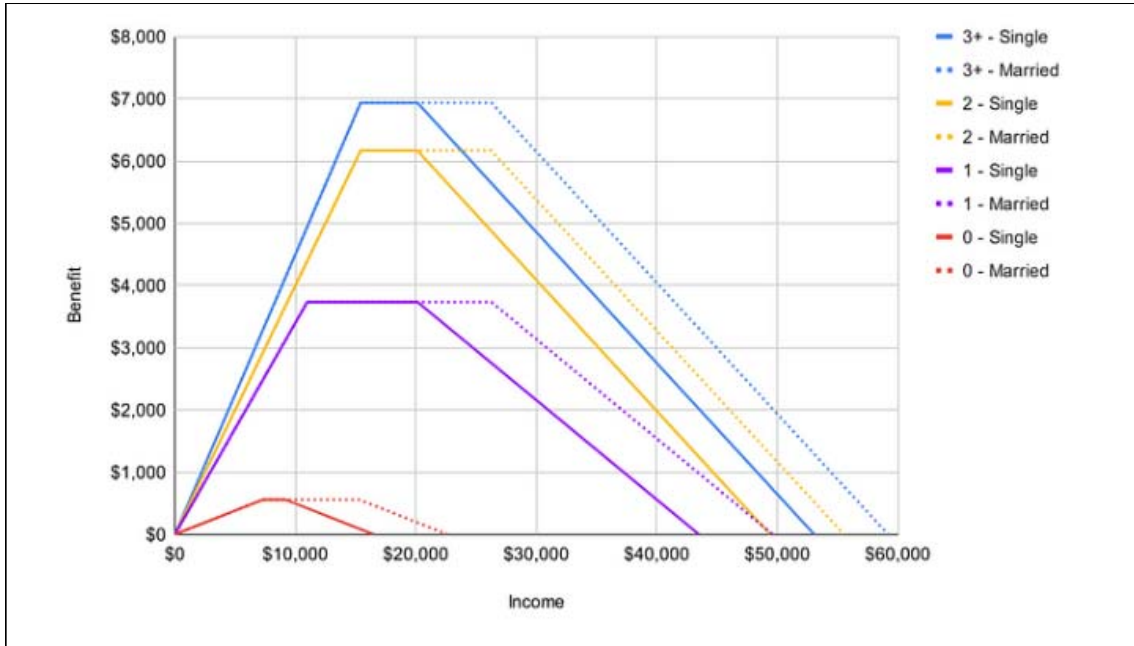
(단위: USD)

구분	자녀수	점증률	점증구간 최대소득	최대 장려금	점감률	점감구간 시작소득	점감구간 최대소득
부부 합산 신고	0	8%	7,300	560	8%	15,300	22,610
	1	34%	10,950	3,733	16%	26,300	49,622
	2	40%	15,400	6,164	21%	26,300	55,529
	3 +	45%	15,400	6,935	21%	26,300	59,187
단독 신고	0	8%	7,300	560	8%	9,200	16,500
	1	34%	10,950	3,733	16%	20,150	43,492
	2	40%	15,400	6,164	21%	20,150	49,400
	3 +	45%	15,400	6,935	21%	20,150	53,071

자료: IRS, EIC Table,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6>, 검색일자: 2023. 3. 24.

35) Arkansas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https://www.dfa.arkansas.gov/income-tax/individual-income-tax/earned-income-tax-credit/>, 검색일자: 2023. 7. 27.

[그림 III-1] 2022년 미국 단독(single) 및 합산(married) 신고가구의
부양자녀 수별 근로장려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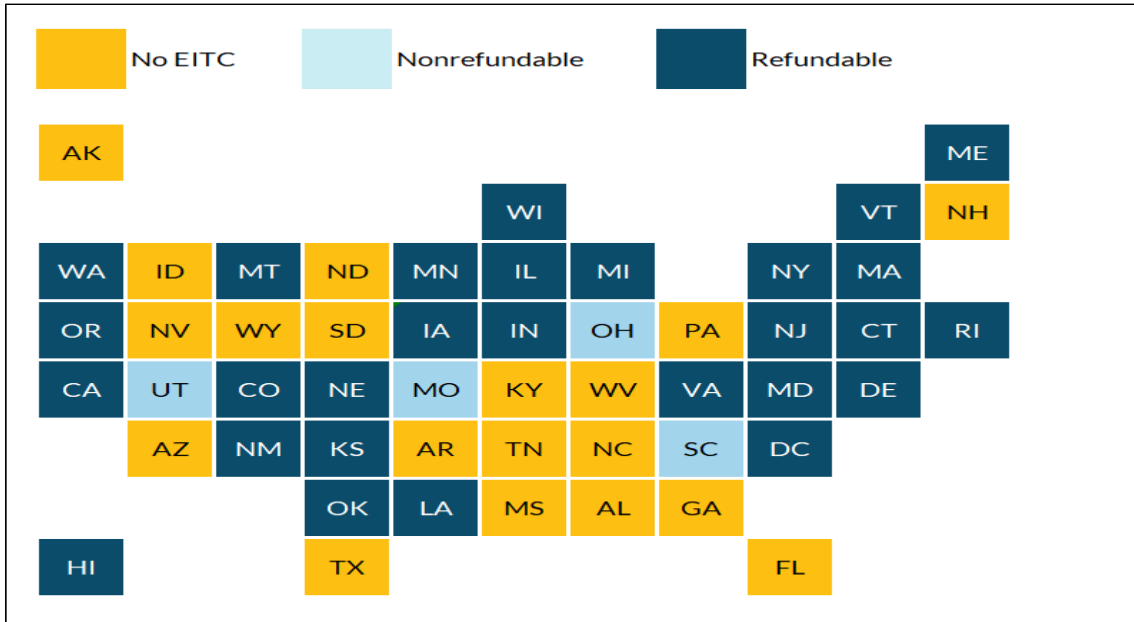
자료: Maryland Child Alliance, <https://medium.com/@marylandchildalliance/the-federal-earned-income-tax-credit-explained-6cbab0a6c928>, 검색일자: 2023. 7. 19.

- 연방정부의 근로장려금에 더하여, 각 주에서도 추가적인 근로장려금(State EITCs)을 지급함³⁶⁾
 -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을 가장 먼저 시작한 주는 1986년의 로드 아일랜드³⁷⁾로 2023년에는 31개의 주와 콜럼비아 주에서 주 근로장려금(State EITCs)을 지급하고 있음
 - 주 근로장려금(State EITCs)은 대체로 환급형으로 제공되나, 4개 주(미주리,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에서는 비환급형으로 제공됨([그림 III-2] 참고)
 - 주 근로장려금(State EITC)은 대체로 연방정부의 근로장려금의 비율로 산정되나 3개 주(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워싱턴)에서는 각 주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
 - 2023년도에 연방정부 근로장려금의 3%(몬타나)에서 125%(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비율이 다양함(<표 III-4>)

36) Urban Institute,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 <https://www.urban.org/policy-centers/cross-center-initiatives/state-and-local-finance-initiative/state-and-local-backgrounders/state-earned-income-tax-credits>, 검색일자: 2023. 4. 24.

37) ITEP, When Did Your State Enact its EITC?, [https://itep.org/when-did-your-state-enact-its-eitc/#:~:text=In%201986%2C%20Rhode%20Island%20became,Income%20Tax%20Credit%20\(EITC\)](https://itep.org/when-did-your-state-enact-its-eitc/#:~:text=In%201986%2C%20Rhode%20Island%20became,Income%20Tax%20Credit%20(EITC)), 검색일자: 2023. 4. 24.

[그림 III-2] 2023년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



자료: Urban Institute, <https://www.urban.org/policy-centers/cross-center-initiatives/state-and-local-finance-initiative/state-and-local-backgrounders/state-earned-income-tax-credits>, 검색일자: 2023. 7. 19.

<표 III-4> 2023년 미국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주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환급가능 여부	주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환급가능 여부
California	45%	Yes	Missouri	10%	No
Colorado	25%	Yes	Montana	3%	Yes
Connecticut	23%	Yes	Nebraska	10%	Yes
Delaware	4.5%	Yes	New Jersey	40%	Yes
District of Columbia	70%	Yes	New Mexico	25%	Yes
Hawaii	20%	Yes	New York	30%	Yes
Illinois	20%	Yes	Ohio	30%	No
Indiana	10%	Yes	Oklahoma	5%	No
Iowa	15%	Yes	Oregon ²⁾	12%, 9%	Yes
Kansas	17%	Yes	Rhode Island	15%	Yes
Louisiana	5%	Yes	South Carolina	125.00%	No
Maine ¹⁾	25%, 12%	Yes	Utah	15.00%	No
Maryland	28%	Yes	Vermont	38%	Yes

<표 III-4>의 계속

주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환급가능 여부	주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환급가능 여부
Massachusetts	30%	Yes	Virginia	15%	No
Michigan	6%	Yes	Washington	18% - 56%	Yes
Minnesota	25% - 45%	Yes	Wisconsin ³⁾	4%, 11%, 13%	Yes

주: 1) 25% - without dependent children, 12% - all other eligible filers

2) 12% - children under age of three, 9% - all other filers

3) 4% - one child, 11% - two children, 34% - three children

자료: Tax Policy Center, State EITC as Percentage of the Federal, EITC,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state-eitc-percentage-federal-eitc>, 검색일자: 2023. 4. 24.

나. 코로나19 대응: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의 영향³⁸⁾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2021년 바 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을 통과시킴
 - ARPA의 주요 재정정책에는 경제부양지원금 지급, 실업수당 지급 및 중소기업 급여 보호프로그램(PPP)이 포함되어 있음³⁹⁾
 - ARP의 주요 조세정책에는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부양가족 세액공제, 보육비용 소득공제, 공적부조 공제, 학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이 있음
- ARPA의 조세정책 중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는 투자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를 포함
 - 투자소득 기준은 2021년 \$3,500 이하에서 2022년 \$10,000 이하로 완화
 -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최대장려금 증가, 총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완화함
 - 최대장려금은 \$543에서 \$1,502로 증가
 - 총소득요건은 독신의 경우 \$16,000, 혼인한 경우 \$22,000으로 확대
 - 연령요건의 경우 기존 25~65세 미만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
 - 즉, 아이가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

38)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American-Rescue-Plan-Fact-Sheet.pdf>, 검색일자: 2023. 4. 5.

39) 윤성주,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논의현황」,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0., pp. 34~55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는 거의 없었으나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있었음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자녀의 경우 소득요건을 \$42,158(단독신고) 혹은 \$48,101(합산신고)로 소폭 확대하고, 최대장려금 또한 \$3,618(1명), \$5,980(2명), \$6,729(3명 이상)으로 기존 \$3,584, \$5,920, \$6,660보다 소폭 증가시킴
 - 자녀장려금의 경우 17세 미만 아동에 대해 최대 \$2,000를 적용하던 세액공제 금액을 6~17세 아동 1명당 최대 \$3,000, 6세 이상 아동 1명당 최대 \$3,600으로 인상⁴⁰⁾⁴¹⁾

<표 III-5> 2020~2021년도 미국 근로장려금 수혜 조건 및 최대장려금: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연도	조정총소득 기준		투자소득 기준	연령 기준	최대 장려금
	단독신고	부부합산 신고			
2021	\$21,430	\$27,380	\$10,000 이하	25세 이상	\$1,502
2020	\$15,820	\$21,710	\$3,650 이하	25세 이상 65세 미만	\$538

자료: 1. IRS, <https://www.irs.gov/taxtopics/tc601>, 검색일자: 2022. 12. 1.
2. I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 검색일자: 2022. 12. 1.

다. 성과

- 미국 근로장려금의 주된 확대는 1986년, 1990년, 1993년, 2009년에 있었으며, 2009년 이후에 최대지급액 및 소득요건의 조정이 있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았음
 -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75년 총지급액은 \$12억으로 622만 근로자 및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평균수급액은 \$201 수준으로 크지 않았음⁴²⁾
 - 3번의 제도 확대 이후 1999년 총지급액은 \$320억으로 1,900만 근로자 및 가구에 평균 \$1,656 지급

40) IRS, <https://www.irs.gov/newsroom/how-the-expanded-2021-child-tax-credit-can-help-your-family#:~:text=The%20American%20Rescue%20Plan%20Act,qualifying%20child%20under%20age%206>, 검색일자: 2023. 4. 5.

41) 윤성주,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논의현황」,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0., pp. 34~55

42) TPC,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recipients>, 검색일자: 2023. 7. 19.

- 2021년에는 총지급액이 \$64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수혜자 및 수혜가구 또한 3,100만명으로 증가하여 평균 지급액은 약 \$2,043 수준이었음
- 미국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자들의 20% 정도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이 있으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
 - 2012~2019년 근로장려금 참여율은 70.2~79.9% 정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III-6〉 미국의 근로장려금 참여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율	79.7%	79.9%	79.4%	70.2%	78.6%	77.8%	78.1%	79.3%

자료: IRS, <https://www.etc.irs.gov/etc-central/participation-rate-by-state/etc-participation-rate-by-states>, 검색일자: 2023. 6. 15.

- ARPA로 인한 근로장려금의 확대에 지급건수와 총지급액이 증가하였으나 급격한 변화는 없었음
 - 수혜가구는 2,600만명에서 3,100만명으로, 총지급액은 \$590억에서 \$64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수급액은 \$2,269에서 \$2,043로 감소
 - 이는 ARPA로 인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수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III-7〉 미국 EITC 지급건수 및 지급액 추이

(단위: 천가구, 백만달러, 달러)

귀속연도	지급건수	총지급액	평균지급액
1999	19,259	31,901	1,656
2000	19,277	32,296	1,675
2001	19,593	33,376	1,703
2002	21,703	38,199	1,760
2003	22,024	38,657	1,755
2004	22,270	40,024	1,797
2005	22,752	42,410	1,864
2006	23,042	44,388	1,926

<표 III-7>의 계속

(단위: 천가구, 백만달러, 달러)

귀속연도	지급건수	총지급액	평균지급액
2007	24,584	48,540	1,974
2008	24,757	50,669	2,047
2009	27,041	59,239	2,191
2010	27,368	59,562	2,176
2011	27,912	62,906	2,254
2012	27,848	64,129	2,303
2013	28,822	68,084	2,362
2014	28,538	68,339	2,395
2015	28,082	68,525	2,440
2016	27,383	66,723	2,437
2017	27,000	66,400	2,459
2018	26,500	64,900	2,449
2019	26,700	64,500	2,416
2020	26,000	59,000	2,269
2021	31,000	64,000	2,043

자료: 1. 1999~2016년도: IRS,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historical-table-1>, 검색일자: 2023. 4. 25.
 2. 2017~2020년도: I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tax-credit-statistics>, 검색일자: 2023. 4. 5.
 3. 2021년도: IRS, <https://www.eitc.irs.gov/eitc-central/statistics-for-tax-returns-with-eitc/statistics-for-tax-returns-with-the-earned-income>, 검색일자: 2023. 4. 5.
 4. 2022년도: I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reports-and-statistics>, 검색일자: 2023. 7. 19.

2. 캐나다

- 캐나다의 근로장려세제(The Canada Workers Benefit, CWB)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안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2007년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에 CWB로 명칭을 변경함⁴³⁾⁴⁴⁾
- 캐나다 연금 계획(Canada Pension Plan, CPP)의 변화로 근로자의 연금 기여분이 높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하고 명칭을 CWB로 변경함

43) Tabbara(2021), p.6.

44) Thomson Reuters, <https://www.thomsonreuters.ca/en/dtprofessionalsuite/blog/canada-workers-benefit-from-negative-income-tax-measure-to-possible-forerunner-of-universal-basic-income.html>, 검색일자: 2023. 7. 22.

- 이로 인해, 2019년에 200만명에게 10억CAD의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7만명의 빈곤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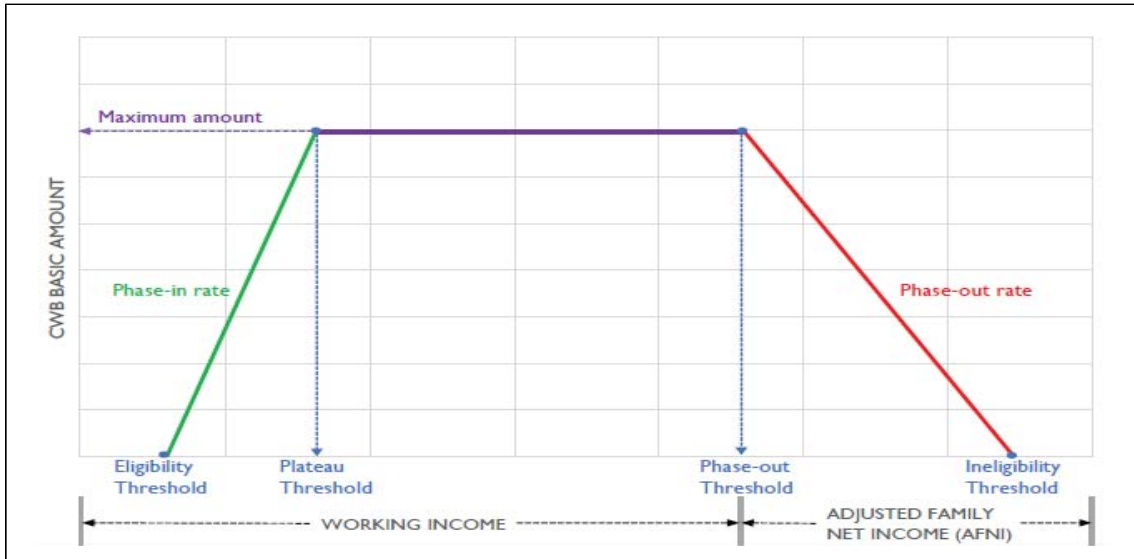
□ 201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CWB는 이전까지 시행된 WITB를 확장한 형태⁴⁵⁾

- CWB는 종전의 WITB에서와 같이 점증, 평탄, 점감의 세 가지 구간으로 구성 ([그림 III-3] 참조)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3,000CAD 이상인 경우부터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점증, 평탄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라서 수급액이 결정됨
 - 점감구간에서부터는 조정가구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AFNI)에 따라서 수급액이 결정됨
 - 조정가구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AFNI)은 세후소득에 아동돌봄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장애적금(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 RDSP) 소득을 제한 금액
 - 조정가구 순소득(AFNI)을 기준으로 CWB를 산정한다는 것은 CWB 수급시 사회부조금(Social Assistance)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정시 근로소득(Working income) 기준의 산정액보다 높을 것
- CWB로의 전환으로 최대장려금 및 소득구간이 증가함([그림 III-4, III-5])
 - 독신가구의 최대급여액은 1,059CAD에서 1,355CAD로, 수급자격을 위한 최대 소득기준은 19,076CAD에서 24,112CAD로 증가⁴⁶⁾
 - 가족가구의 최대급여액은 1,922CAD에서 2,335CAD로, 수급자격을 위한 최대 소득기준은 29,407CAD에서 36,483CAD로 증가
- CWB로의 전환으로 점증률은 증가하고 점감률이 감소함
 - 점증률은 25%에서 26%로 증가, 점감률은 15%에서 12%로 감소
- WITB 수혜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작업을 했던 것을 CWB의 경우 자동으로 급여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임
- CWB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CWB의 50%까지 세금신고에 앞서서 수급할 수 있도록 함

45) Loans Canada, <https://loanscanada.ca/taxes/claiming-the-canada-workers-benefit-cwb/>, 검색일자: 2023.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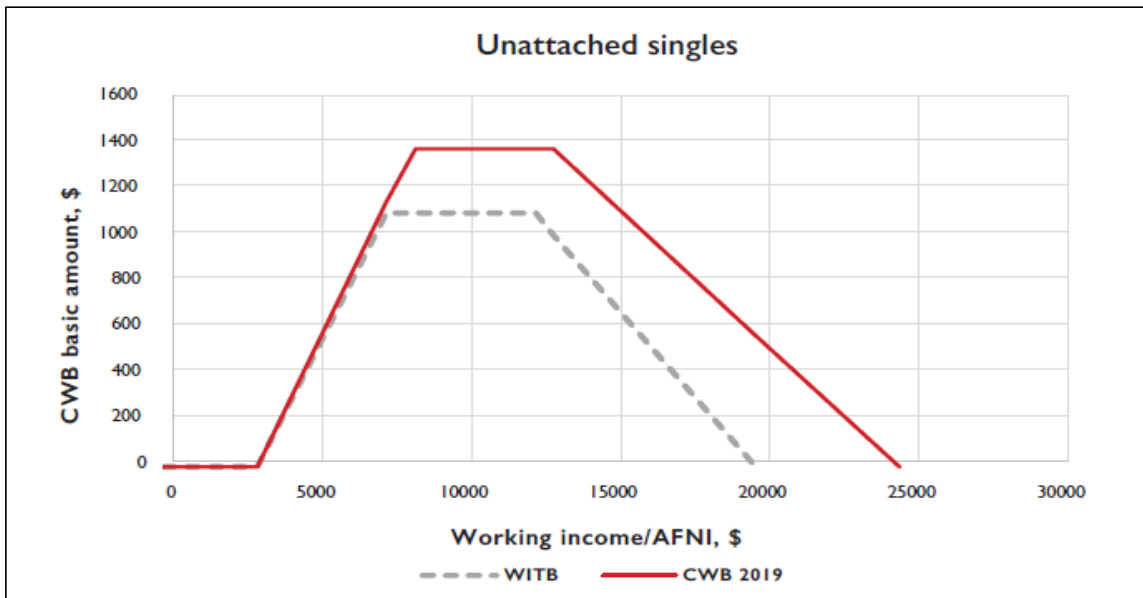
46) Tax Tips, <https://www.taxtips.ca/filing/working-income-tax-benefit/canada-workers-benefit-2019-vs-witb-2018.htm>, 검색일자: 2023. 7. 23.

[그림 III-3] 캐나다 CWB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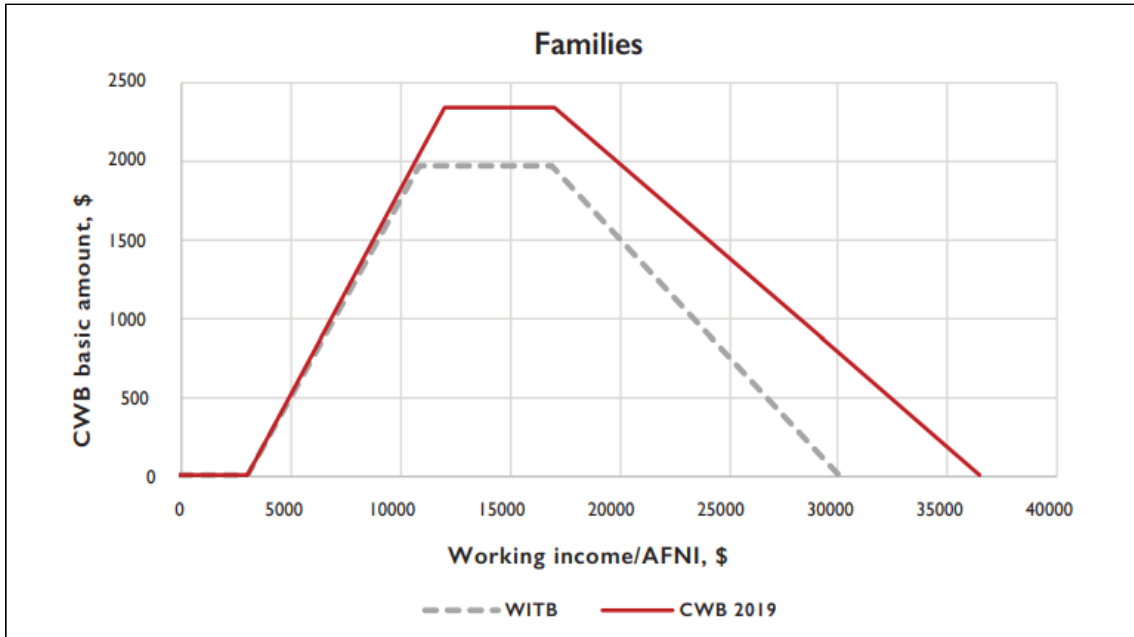
자료: Tabbara(2021), p. 4

[그림 III-4] 2019년 CWB와 WITB 간의 차이: 독신가구



자료: Tabbara(2021), p. 15

[그림 III-5] 2019년 CWB와 WITB 간의 차이: 가족가구



자료: Tabbara(2021), p. 15

- CWB의 지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WITB에서와 같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⁴⁷⁾
 - 캐나다 거주민(Resident of Canada)이어야 함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있어야 하며, 조정조정 순소득(AFNI)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함(<표 III-8>참고)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32,244CAD 이하(2021년도 기준)
 - 그 외(부양자녀가 있는 단독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가족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는 42,197CAD 이하(2021년도 기준)
 - 일부 주(Albert, Quebec, Nunavut)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
 -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함

- 신청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가 있거나 적격 부양가족(dependant)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 가능
 -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함

47)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acwb-eligibility.html>, 검색일자: 2023. 7. 22.

-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도 캐나다 거주자여야 함
 - 부양가족(dependant)은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며 CWB 자격요건을 갖지 않은 자여야 함
-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WB를 수급할 수 없음
- 적절한 부양가족(dependant)이 없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규(full-time) 학생으로 연간 13주 초과 재학 중일 경우
 - 연간 90일 이상 감옥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에 수감된 경우
 - 외교관과 같이 타국 공무원이거나 그의 가족 혹은 그에 의해 고용된 자로 캐나다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 CWB의 지급액은 혼인상태, 거주지역(province) 또는 territory), 소득(근로소득 및 조정가족순소득), 부양가족 수, 장애인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자격여부에 의하여 결정됨(<표 III-8> 참고)
- 2021년 기준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8,166~22,944CAD 경우 최대 급여액인 1,395CAD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22,944CAD를 초과하면 장려금이 점감하고, 32,244CAD 초과시 장려금이 없음
 - 2021년 기준 그 외 가족(부양자녀가 있는 단독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가족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12,900~26,177CAD인 경우 최대급여액인 2,403CAD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26,177CAD를 초과하면 장려금이 점감하고, 42,197CAD 초과시 장려금이 없음
 - Alberta, Quebec, Nunavut, Columbia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기준금액 및 최대급여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1년의 CWB 수급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구간 선정 및 지급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은 저소득자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30일에 발표한 조치의 결과였으며, 소득산정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음⁴⁸⁾

48) 캐나다 재정부, 「Government Expands Canada Workers Benefit to Support One Million More Canadians」, 보도자료, 2021. 6. 30.,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06/government-expands-canada-workers-benefit-to-support-one-million-more-canadians.html>, 검색일자: 2023. 4. 6.

- CWB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산정시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조정가구 순소득(AFNI)에서 최대 14,000CAD를 제외하는 것을 도입하여 점감구간에서의 수용도를 높임⁴⁹⁾

□ 가장 최근인 2022년의 CWB 급여액 산정은 <표 III-9>와 같으며 2021년과 큰 차이는 없음

- 2022년 기준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8,289~23,495CAD 경우 최대 급여액인 1,428CAD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23,495CAD를 초과하면 장려금이 점감하고, 33,015CAD 초과시 장려금이 없음
- 2022년 기준 그 외 가족(부양자녀가 있는 단독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가족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12,115~26,805CAD인 경우 최대급여액인 2,461CAD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26,805CAD를 초과하면 장려금이 점감하고, 43,212CAD 초과시 장려금이 없음
 -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근로소득에서 최대 14,336CAD를 제외하도록 하여 수용성을 높임

<표 III-8> 2021년 기본 CWB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단위: CAD)

구분	점중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득기준 (근로소득)	수혜금액 (수혜율 27%)	소득기준 (근로소득)	수혜금액	소득기준 (조정 가구순소득)	수혜금액 (수혜율 15%)
단독가구	3,000~8,166	0~1,395	8,166~22,944	1,395	22,944~32,244	1,395~0
가족가구	3,000~12,900	0~2,403	12,900~26,177	2,403	26,177~42,197	2,403~0

- 주: 1. Alberta, Quebec, Nunavut를 제외한 지역에 한함
 2. 점중구간 및 평탄구간은 근로소득(Working income)을 기준으로, 점감구간 도입시부터는 조정가구 순소득(AFNI: Adjusted Family Net Income)을 기준으로 산정됨
 3. 조정가구 순소득(AFNI: Adjusted Family Net Income)은 세후소득에 아동돌봄수당(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장애적금(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소득을 제한 금액임. 즉,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포함한 개념
 4. 조정가구 순소득 계산시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소득면제는 14,000CAD까지 가능

자료: Tabbara(2021)

49) Canada Tax and Financial Information, <https://www.taxtips.ca/filing/canada-workers-benefit/cwb-2022.htm>, 검색일자: 2023. 7. 27.

<표 III-9> 2022년 기본 CWB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단위: CAD)

구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득기준 (근로소득)	수혜금액 (수혜율 27%)	소득기준 (근로소득)	수혜금액	소득기준 (조정 가구순소득)	수혜금액 (수혜율 15%)
독신가구	3,000~8,289	0~1,428	8,289~23,495	1,428	23,495~33,015	1,428~0
가족가구	3,000~12,115	0~2,461	12,115~26,805	2,461	26,805~43,212	2,461~0

주: 1. Alberta, Quebec, Nunavut를 제외한 지역에 한함

2.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은 근로소득(Working income)을 기준으로, 점감구간 도입시부터는 조정 가구 순소득(AFNI: Adjusted Family Net Income)을 기준으로 산정됨

3. 조정가구 순소득(AFNI: Adjusted Family Net Income)은 세후소득에 아동돌봄수당(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장애적금(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소득을 제한 금액임. 즉,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를 포함한 개념

4. 조정가구 순소득 계산시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소득면제는 14,336CAD까지 가능

자료: Canada Tax and Financial Information, <https://www.taxtips.ca/filing/canada-workers-benefit/cwb-2022.htm>, 검색일자: 2023. 7. 27.

□ 앞서 소개한 기본 CWB(Basic CWB)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추가 CWB(CWB Disability Supplement)가 별도로 존재함⁵⁰⁾⁵¹⁾

○ 장애인을 위한 추가 CWB(CWB Disability Supplement)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수급요건을 만족하며 승인된 T2201 서류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을 것

- 근로소득이 1,150CAD 이상이고 조정가구 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 (<표 III-10, III-11>)

-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37,044CAD 미만, 2022년 37,934CAD 미만

- 가족가구의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장애가 있는 경우 2021년 기준 46,997CAD 미만, 2022년 기준 48,121CAD미만

- 가족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장애자인 경우 2021년 기준 51,797CAD미만, 2022년 기준 53,097CAD 미만

○ CWB disability supplement는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급여액은 2021년 기준 단독가구와 가족가구 모두에게 720CAD(2022년

50)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5000-s6/5000-s6-22e.pdf>, 검색일자: 2023. 7. 27.

51)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sr/srb.html?q=canada+workers+benefit&wb-srch-sub=>, 검색일자: 2023. 7. 27.

기준 737CAD)로 설정되어 있음([그림 III-6])

<표 III-10> 2021년 CWB 장애수당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단위: CAD)

구분	평탄구간		점감구간	
	수혜 시작 소득 (근로소득)	수혜금액	수혜 종료 소득 (조정 가구순소득)	수혜금액 (수혜율 15%, 7.5%) ¹⁾
장애가 있는 단독가구	1,150	720	37,044	720~0
한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	1,150	720	46,997	720~0
두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	1,150	720	51,797	720~0

주: 점감구간에서의 수혜율은 장애가 있는 독인가구와 한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15%, 두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7.5%

자료: Tabbara(2021)

<표 III-11> 2022년 CWB 장애수당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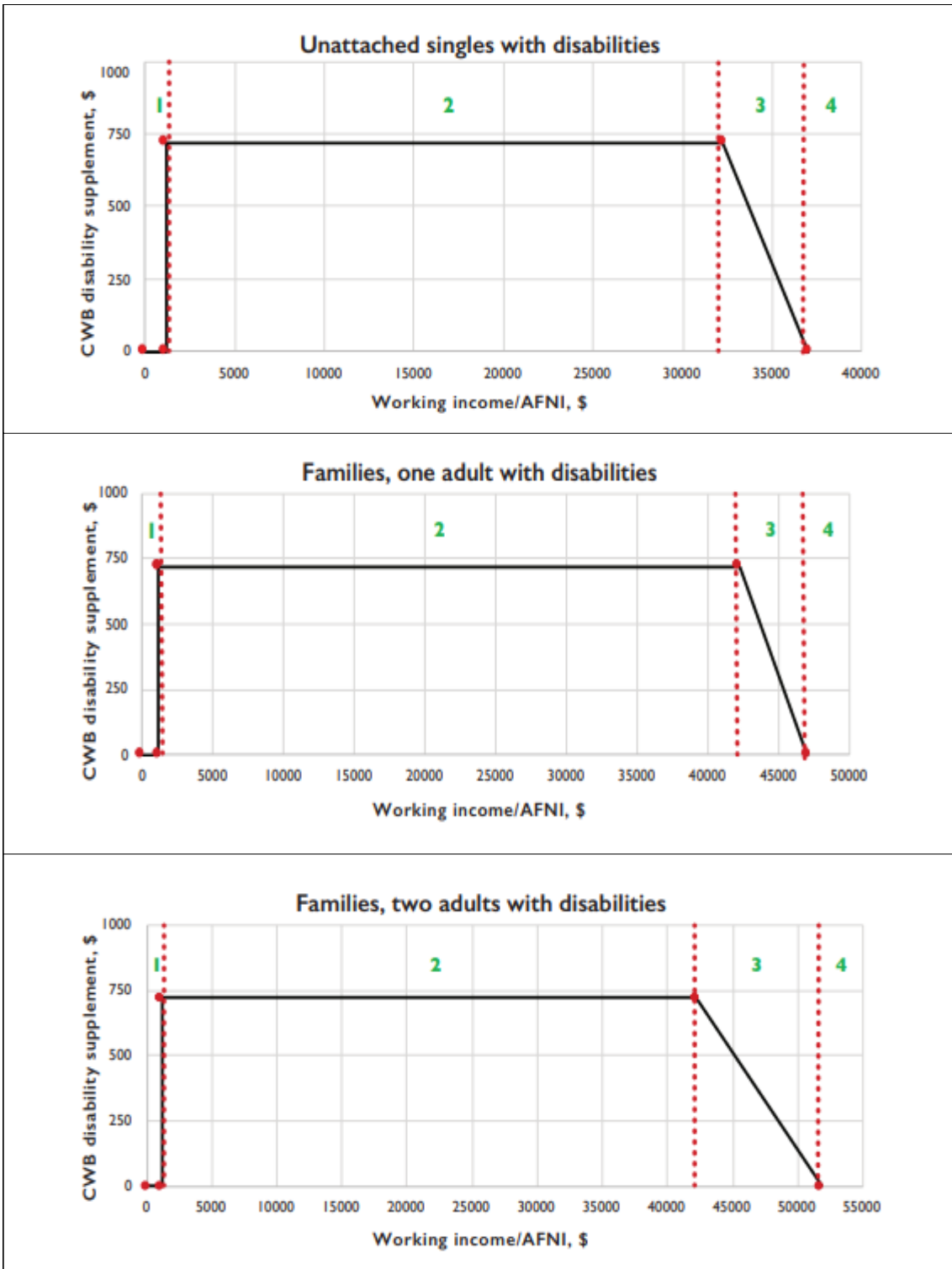
(단위: CAD)

구분	평탄구간		점감구간	
	수혜 시작 소득 (근로소득)	수혜금액	수혜 종료 소득 (조정 가구순소득)	수혜금액 (수혜율 15%, 7.5%) ¹⁾
장애가 있는 단독가구	1,150	737	37,932	737~0
한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	1,150	737	48,121	737~0
두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	1,150	737	53,037	737~0

주: 점감구간에서의 수혜율은 장애가 있는 독인가구와 한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15%, 두 명의 어른이 장애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7.5%

자료: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acwb-amount.html>,
검색일자: 2023. 7. 27.

[그림 III-6] 2021년 CWB disability supplement:
장애인이 있는 독신가구 및 가족가구



자료: Tabbara(2021), p. 11

- 캐나다 CWB의 2020년 가구구조별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표 III-12>에 정리하였음
 - 2019년과 비교하여 수급자 수는 총 1,578,900명 감소하였으며 지급액은 총 1,187,344,000CAD 감소하였음⁵²⁾

<표 III-12> 캐나다 CWB의 수급자 수와 지급액(2020년)

(단위: 명, CAD)

	CWB 수급자 수			CWB 지급액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총액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총액
단독가구	722,640	182,290	904,930	501,483,000	149,368,000	650,851,000
부부가구	137,420	117,120	254,540	126,755,000	106,767,000	233,521,000
총	860,060	299,420	1,159,480	628,237,000	256,135,000	884,372,000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prog-policy/stats/cwb-stats/2020/CWB_tbl3_e.pdf, 검색일자: 2023. 7. 27.

- CWB에 대한 다양한 비판점이 존재함⁵³⁾
 - CWB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3,000CAD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낮은 극빈층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CWB로 인한 세액공제 수혜금액이 지나치게 적음
 - 캐나다의 국가 빈곤 척도인 MBM(Market Based Measures)은 2019년에 독신가구에 24,652CAD로 설정되었으나, CWB의 점감구간 진입 소득인 22,944CAD를 버는 독신가구의 경우 CWB로 1,395CAD를 수혜받더라도 MBM에 도달하지 못함
 - CWB를 여타 국가 지원금과 함께 수혜받을 때 조화롭지 못함
 - CWB의 점증과 평탄구간의 경우, 여타 국가 지원금이 제외된 근로소득만 고려되어 수혜자의 실제 총소득이 왜곡됨
 - 다른 국가 지원금과 동시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 지원금의 점감률이 CWB의 점증률보다 커서 빈곤층의 소득보전에 어려움을 줌
 - CWB는 별도의 통로로 환급되지 않고 다른 공제액과 같이 환급되어 수혜자들이 혜택을 잘 인지하지 못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전년도 소득이어서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데 CWB가 잘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52)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prog-policy/stats/cwb-stats/2019/Table-3.pdf>, 검색일자: 2023. 7. 27.

53) Tabbara(2021), pp. 18~22

3. 영국⁵⁴⁾⁵⁵⁾

가. WTC(Working Tax Credit) 자격요건 및 현황

-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6년 가족공제(Family Credit)을 전신으로 하여, 1999년 4월부터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로, 2003년 3월 이후에는 WTC(Working Tax Credit)로 운영하고 있음⁵⁶⁾
 - 2018년도부터는 WTC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받지 않게 되어 Universal Credit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음
 - 그에 따라, WTC에 대한 수급자의 수는 2018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 2003~2018년에 시행된 WTC(Working Tax Credit) 수급을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자녀여부와 주당 업무시간과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함⁵⁷⁾
 - 16세부터 24세까지는 자녀가 있거나 적격 장애인이어야 하며,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요구조건이 없음
 - 다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Universal Credit area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연금세액공제 조건에는 해당해야 함
 - 장애 등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연령별로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의 일정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self-employed)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근로는 최소 4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함
 - 보수는 현물이나 미래에 받을 급여는 포함하나 임대소득,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 스포츠 상금 등은 제외됨

54)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december-2022/commentary-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december-2022#:~:text=As%20at%20December%202022%2C%20there,compared%20to%20the%20previous%20year>, 검색일자: 2023. 4. 6.

55) 영국 정부,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 검색일자: 2023. 4. 6.

56) 노대명 외(2014), pp. 132~133

57) 영국 정부,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 검색일자: 2023. 4. 6.

<표 III-13> 영국의 연령별 근로시간 요건(2023년)

상황	주당 시간
25~59세	30시간 이상
60세 이상	16시간 이상
장애인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독신 ¹⁾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 ^{1), 2)}	일반적으로 24시간(한 명이 최소 16시간 이상)

주: 1) 자녀는 16세 이하(승인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20세 이하).

2) 24시간 미만이라도 16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장애, 6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장애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보호자 공제를 받는 경우 또는 입원·투옥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 영국 정부, "Working Tax Credit,"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eligibility>, 검색일자: 2023. 4. 6.

- 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본적으로 연 최대 2,280파운드를 지급받으며,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지원금액이 추가됨
 - 부부가 함께 근로세액공제를 신청하였거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금은 연간 최대 2,340파운드임
 - 근무시간이 최소 30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지급액은 연간 최대 950파운드임
 -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은 연간 최대 3,685파운드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통은 장애수당에 더하여 지급되는데 연간 최대 1,595파운드임
 - 승인된 보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 주당 최대 122.5파운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당 최대 201파운드를 지급

<표 III-14> WTC 공제액 한도

(단위: 파운드)

구분	공제액	
기본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280	
추가 지원금액	부부가 함께 신청	연간 최대 2,340
	한부모가구	연간 최대 2,340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연간 최대 950
	장애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3,685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595
	승인된 양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주당 최대 122.5(자녀 1명) 주당 최대 210(자녀 2명 이상)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print>, 검색일자: 2023. 7. 25.

- WTC의 구조는 점증구간 없이 평탄-점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즉,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수준에서 최대금액이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축소됨⁵⁸⁾
 - WTC 지급액은 연간 가구소득이 7,455파운드까지만 지급되며, 초과하는 소득 1파운드당 41펜스씩 지급액이 줄어듦

나.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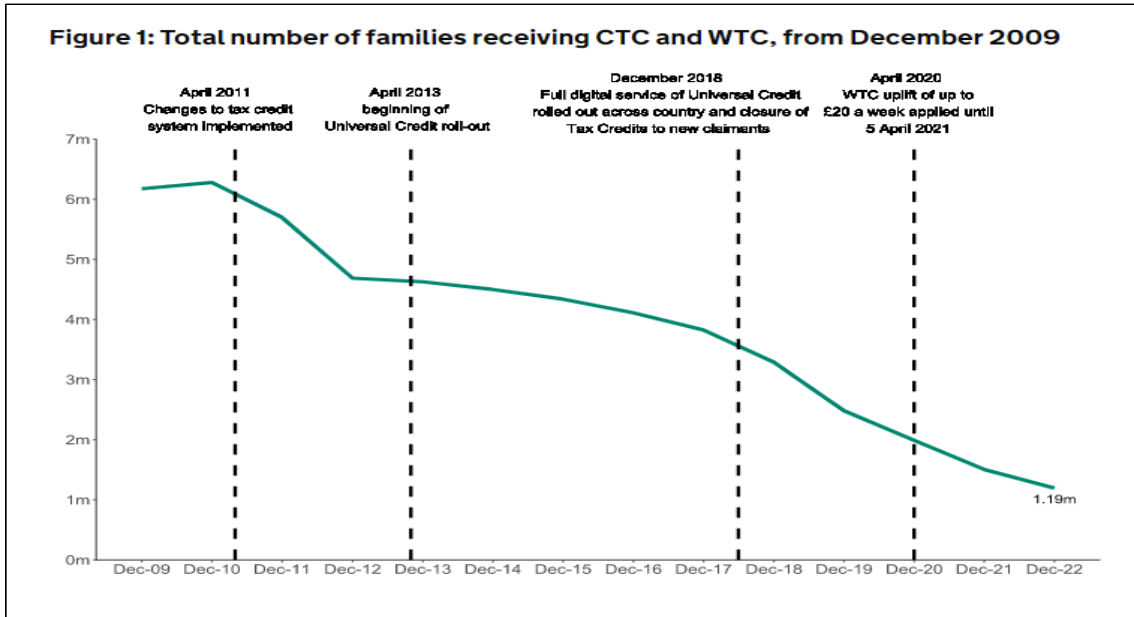
- 영국 정부는 2013년 4월에 영국 내 많은 정치적 지역(political area)에 Universal Credit(UC)을 도입하고, 2018년도에는 영국 전역에서 UC가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장려제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통합됨([그림 III-7 참고])
 - 기존의 세액공제 지급자와 여타 사회보장제도 지급자들은(means-tested benefits) Universal Credit이나 Pension Credit 둘 중 하나의 제도로 옮겨감⁵⁹⁾
 - 2024년 경에는 UC를 통해 Child Tax Credit,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JSA),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Working Tax Credit 등이 대체될 계획
 - Universal Credit과 여타의 Tax credit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음⁶⁰⁾
 - UC로 통합됨으로써 일을 하는 수혜자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며, 초과근무 및 계절근무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함
 - 각종 제도적 혜택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6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UC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함

58)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tax-credits/how-do-i-calculate-tax-credits>, 검색일자: 2023. 6. 12.

59)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tax-credits/how-will-universal-credit-affect-tax-credits>, 검색일자: 2023. 4. 27.

60)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tax-credits/universal-credit-and-stopping-tax-credits#:~:text=Universal%20credit%20\(UC\)%20is%20a,tax%20credit%20award%20will%20stop](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tax-credits/universal-credit-and-stopping-tax-credits#:~:text=Universal%20credit%20(UC)%20is%20a,tax%20credit%20award%20will%20stop), 검색일자: 2023. 6. 12.

[그림 III-7] 영국의 WTC와 CTC 수급자 이탈



자료: 영국 관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december-2022/commentary-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december-2022#:~:text=As%20at%20December%202022%2C%20there,compared%20to%20the%20previous%20year>, 검색일자: 2023. 4. 27.

- 기존 세액공제 수급자들은 자발, 자연, 정부개입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Universal Credit(UC)으로 옮겨감
 - 자발적인 전환(Voluntary migration)을 통해서 UC로 옮겨갔으나, 실제로 수급자격이 상실되거나 수급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전환기 보조금(transitional protection)을 받을 수 없음
 - 자연적 전환(Natural migration)은 수급자의 상황변동으로 인해 자격이 자연스럽게 상실되는 경우로, 이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없고 UC(Universal Credit)나 PC(Pension Credit)를 신청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전환기 보조금(transitional protection)은 받을 수 없음
 - 정부개입 전환(Managed migration)은 노동연금부(DWP)와 국세청(HMRC)으로부터 UC를 신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로,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와 새로 받게 되는 UC의 차분을 전환기 보조금(transitional protection)으로 받게 됨

- 영국의 UC는 일반 국민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일정 요건을 만족한 가구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영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예외적으로 16~17세 이상도 가능), 국가연금(State Pension) 연령 미만인 경우 자격을 충족함
- 16,000파운드 이하의 저축, 투자 등의 재산이 있어야 함
- 연간 급여의 상한은 가구구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표 III-15>에 정리하였음
- 부부가 함께 신청을 하되 둘 중 한 명이 국가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같이 UC를 받게 되며, 두 사람 모두 국가연금 연령을 지날 경우 PC로 전환됨
- 16~17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UC를 받을 수 있음

<표 III-15> 영국 UC의 연간 급여 상한(Benefit Cap)

(단위: 파운드)

구분	지역	급여 상한
독신	런던	15410~16967
	런던 외	13400~14753
부부	런던	23000~25323
	런던 외	20000~22020

자료: Young Women's Trust, <https://www.youngwomenstrust.org/voices/how-benefits-will-increase-april-2023/>, 검색일자: 2023. 6. 12.

- UC의 급여액 및 추가급여를 아래의 <표 III-16>, <표 III-17>에 정리하였음
 - 기준급여(Standard Allowance)는 25세와 가구구조를 기준으로 지급됨
 -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 추가급여(Additional Allowance)를 받을 수 있음

<표 III-16> 영국의 UC의 기준 급여(Standard Allowance)

(단위: 파운드)

구분	월별 기준 급여
25세 미만, 독신	292.11
25세 이상, 독신	368.74
배우자와 함께 살며 둘다 25세 미만	458.51(두 명 모두에게 각각)
배우자와 함께 살며 둘 중 한 명 25세 이상	578.82(두 명 모두에게 각각)

자료: Young Women's Trust, <https://www.youngwomenstrust.org/voices/how-benefits-will-increase-april-2023/>, 검색일자: 2023. 6. 12.

<표 III-17> 영국의 UC의 추가급여(Additional Allowance)

(단위: 파운드)

구분	급여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	315.00 (2017. 4. 6 이전 태생)	269.58 (2017. 4. 6 이후 태생)
둘째 아이 이상의 경우	269.58 (각 아이당 금액)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	146.31 (장애가 심한 경우 £456.89)	
장애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90.06	146.31 (2017.4.3 이전에 급여 시작)
장애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	185.86 (주당 35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자료: Young Women's Trust, <https://www.youngwomenstrust.org/voices/how-benefits-will-increase-april-2023/>, 검색일자: 2023. 6. 12.

- 연금 수령연령(State pension qualifying age)에 도달한 경우에는 working age UC를 받을 수 없고,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Pension Credit(PC)을 신청해야 함⁶¹⁾
 - 부부가구의 경우 두 명 모두 연금 수령연령(state-pension qualifying age)에 도달해야만 PC를 받을 수 있음

-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는 PC(Pension Credit)임
 - 수혜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연령(state pension age)에 도달한 고령층 중 Great Britain(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거주해야 함
 - 소득 여건으로는 다른 수입이나 저축, 자가가 있어도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으면 수혜가 가능
 - 파트너와 신청자 모두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넘어야 PC를 받을 수 있음
 - PC의 급여액은 <표 III-18>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일반적인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보장크레딧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임

61)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tax-credits/how-will-universal-credit-affect-tax-credits>, 검색일자: 2023. 6. 12.

<표 III-18> 2023년도 영국의 PC(Pension Credit) 수혜금액

(단위: 파운드)

구분	보장크레딧 (Guarantee Credit)
단독 가구일 경우	201.05까지 보장
배우자, 사실혼 관계일 경우	306.85까지 보장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76.40 추가 보장
성인을 돌보고 있는 경우	42.75 추가 보장
아이를 책임지고 있을 경우	61.88 추가 보장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pension-credit>, 검색일자: 2023. 5. 31.

다.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UC으로의 정부개입 전환(managed transition)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22년 5월에 재개함⁶²⁾
 -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WTC, Universal Credit(UC),⁶³⁾ Local Housing Allowance rates의 수혜금액을 임시적으로 증대함⁶⁴⁾
 - UC와 WTC의 경우 연간 1000파운드, 혹은 주간 20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지급

라. 성과

- 영국의 UC의 수혜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누적 16,256,080명을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국가 봉쇄 시점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꾸준히 신규 가입자를 받았음
 - 2019년 이후 월별 신규 가입자가 20만명 전후를 유지함
 -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봉쇄 기간에 200만명의 신규 가입자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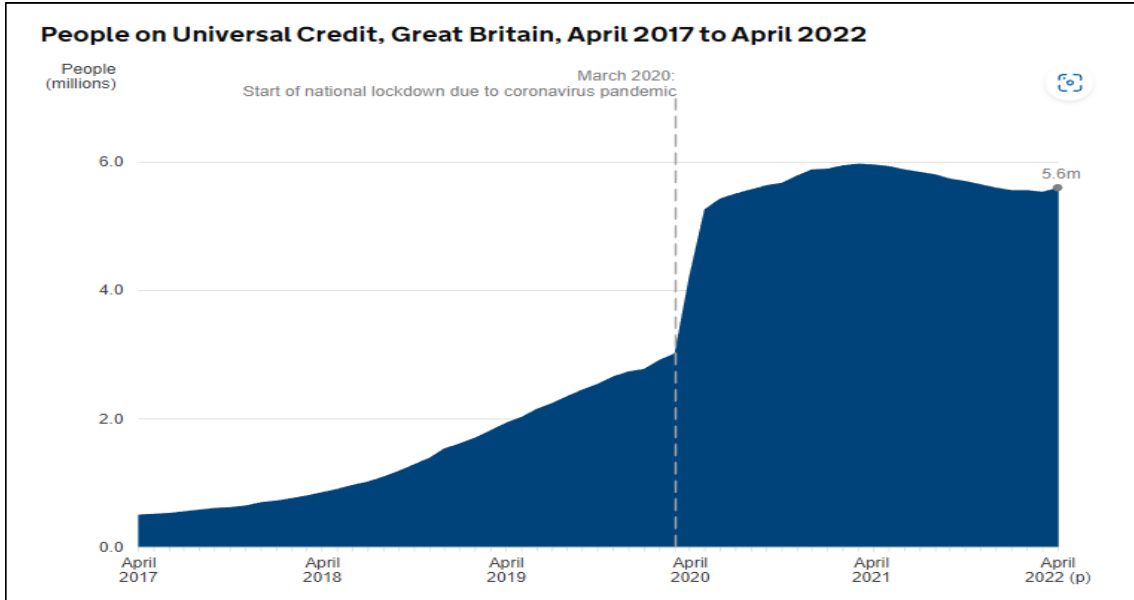
62)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tax-credits/how-will-universal-credit-affect-tax-credits>, 검색일자: 2023. 4. 27.

63) Universal Credit은 2013년도에 도입되고 2018년 12월에 roll-out이 마쳐짐.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DWP)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점진적으로 WTC와 CTC를 대체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2024년 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됨.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universal-credit>, 검색일자: 2023. 4. 27.

64) Mackley, Hobson, and McInnes, "Coronavirus: Legacy Benefits and the Universal Credit 'Uplift,'" No. 9246,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5.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246/CBP-9246.pdf>, 검색일자: 2023. 4. 27.

- [그림 III-8]에 UC의 누적 가입자를 정리하였음

[그림 III-8] 영국의 UC(Universal Credit) 누적 수혜자



자료: 영국 노동연금부,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niversal-credit-statistics-29-april-2013-to-14-april-2022/universal-credit-statistics-29-april-2013-to-14-april-2022>, 검색일자: 2023. 7. 21.

- PC의 신청률은 61%로 약 40%의 수급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⁶⁵⁾
 - PC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음
 -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낙인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4. 프랑스⁶⁶⁾

-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로는 PA(Prime d'activité)가 있으며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함
 - 프랑스는 기존 RSA와 근로에 대해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화를 위해 2016년에 통합함⁶⁷⁾

65) 임완섭 외,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 101

66) Capital, <https://www.capital.fr/votre-argent/prime-d-activite-1319889>, 검색일자: 2023. 7. 19.

- PA(Prime d'activité)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만 18세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근로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 저소득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 월 2,074유로 이하를 버는 경우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실업수당, 의료보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함
 -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1070.78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함⁶⁸⁾

- PA(Prime d'activité) 지급액은 직업소득 및 가구자원(위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구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가구 내에 인원이 1명 추가되면 50%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음
 - 2명이 추가되면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3명 이상이 추가되는 경우부터 40%의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가구에 2명 이상의 자녀나 25세 이하 부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함

- 구체적인 개별 소득요건 및 지급액은 프랑스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인 Smic(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을 기준으로 함
 -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PA 급여액은 순 월별 소득이 Smic의 0.5배 이상인 경우
 - PA 최대 급여액은 순 월별 소득이 Smic의 0.8배일 때 받을 수 있음

5. 스웨덴⁶⁹⁾

- 2007년 1월 1일 스웨덴은 전 연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였으며 특별히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에게 더 큰 장려금을 책정하여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함⁷⁰⁾

67) 오민애, 『프랑스 경제활동 추가수당제도의 통합 배경과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6. 6., p .92

68) Caf,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rofessionnelle/la-prime-d-activite>, 검색일자: 2023. 7. 19.

69) 고지현 외(2023)를 참고 및 수정하여 작성함

70) OEC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65d05e5-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965d05e5-en>, 검색일자: 2022. 12. 23.

- 스웨덴의 근로장려세제는 네 차례에 걸쳐서(2008년, 2009년, 2010년, 2014년) 개정됨
-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제도가 도입된 2007년과 2008년도에는, 고령 근로자(65세 이상)의 점증구간과 점증률을 확대하여,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고령 근로자는 더 큰 장려금을 수급
- 이러한 경향은 2009년도에 강화되어서, 고령 근로자의 장려금이 대폭 상향됨
- 스웨덴의 EITC는 비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며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됨⁷¹⁾

□ <표 III-19>와 [그림 III-9]에 스웨덴의 65세 이상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와 구조를 정리하였음

- 특징적인 점은 두 번의 점증구간이 있다는 것과 2016년도 이후에야 점감구간을 도입했다는 점임⁷²⁾
-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100,000크로나(한화 0~1,278만원)인 구간에서 20%의 점증률로 증가하고, 100,001~300,000크로나(1,278~3833만원)의 구간에서는 5%의 점증률로 증가
- 소득이 300,001~600,000크로나(3,833~7,665만원)인 평탄구간에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최대 장려금인 30,000크로나(383만원)를 지급
- 600,001~1,600,000크로나(7,665~2억 440만원)의 구간에서는 3%의 점감률로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구조

<표 III-19> 2022년 스웨덴 근로장려세제: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단위: SEK)

근로소득 (Earned Income)	근로장려금 (EITC)
0~100,000 [0~1,278만원]	근로소득 × 0.2
100,001~300,000 [1,278~3833만원]	15,000 + 근로소득 × 0.05 [192만원 + 근로소득 × 0.05]

71) 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3aebdb4e-en.pdf?expires=1690942186&id=id&accname=ocid72023593&checksum=35B6E8784FDF8C9528758585B56B6888>, 검색일자: 2023. 8. 2..

72)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는 달리 초반에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점증-평탄 구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6년도부터 점감구간을 도입했음

<표 III-19>의 계속

(단위: SEK)

근로소득 (Earned Income)	근로장려금 (EITC)
300,001~600,000 [3833~7665만원]	30,000 [383만원]
600,001~1,600,000 [7665~2억 440만원]	$30,000 - 0.03 \times (\text{근로소득} - 600,000)$ [383만원 - 0.03 × (근로소득-7,665만원)]

주: 환율은 1SEK당 128.0583원을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1. Google Finance, <https://www.google.com/finance/quote/SEK-KRW?sa=X&ved=2ahUKEwj0ZLktND7AhVMgVYBHcrvCJIQmY0JegQIBhAc>, 검색일자: 2022. 11. 28.

2. OEC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65d05e5-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965d05e5-en>, 검색일자: 2023. 7. 27.

□ <표 III-20>과 [그림 III-9]에 스웨덴의 65세 이하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와 구조를 정리하였음

- 65세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33,300크로나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가 부여됨
- EITC는 공제액은 BA(Basic Amount), BAL(Basic Allowance) 및 LTR(Local Tax Rate)에 따라 결정됨
 - 2022년 기본 금액(BA)은 48,300크로나(한화 590만원)
 - BAL은 근로소득에 따라 14,200~37,200크로나 사이임(한화 173~454만원)
 - 지방세율인 LTR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022년에 32.24%
- 연간 약 600,000크로나 이상의 소득부터 점감구간이 시작됨(한화 7,333만원)

<표 III-20> 2023년 스웨덴 근로장려세제: 65세 이하 근로자 대상

(단위: SEK)

근로소득 (Earned Income)	근로장려금 (EITC)
0~43,953 [0~537만원]	$(\text{근로소득} - \text{BAL}) \times 32.24$
43,953~156,492 [537~1,913만원]	$\{43,953 + 0.3874 \times (\text{근로소득} - 43,953) - \text{BAL}\} \times 32.24$ $[\{537\text{만원} + 0.3874 \times (\text{근로소득} - 537\text{만원}) - \text{BAL}\} \times 32.24]$
156,492~390,264 [1,913~4,771만원]	$\{87,512 + 0.128 \times (\text{근로소득} - 156,492) - \text{BAL}\} \times 32.24$ $[1,069\text{만원} + 0.128 \times (\text{근로소득} - 1,912\text{만원}) - \text{BAL}] \times 32.24]$

<표 III-20>의 계속

(단위: SEK)

근로소득 (Earned Income)	근로장려금 (EITC)
390,264~653,982 [4,771~7,996만원]	$(117,466 - \text{BAL}) \times 32.24$ [(1,435만원 - BAL) × 32.24]
653,982~ [7,996만원 이상]	$(117,466 - \text{BAL}) \times 32.24 - 0.03 \times (\text{근로소득} - 653,982)$ [(1,435만원 - BAL) × 32.24 - 0.03 × (근로소득 - 7,99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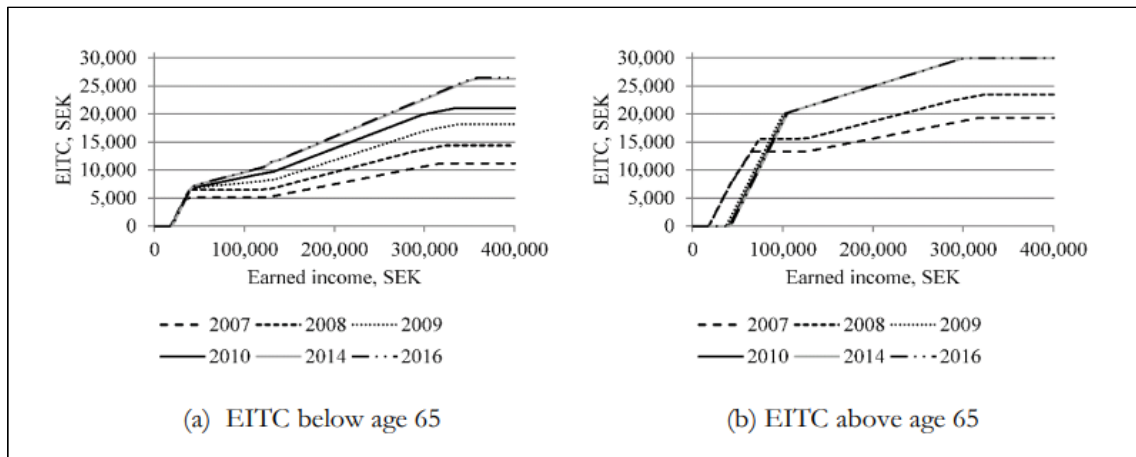
주: 1. BA는 2022년 금액인 48300SEK, LTR은 2022년 평균치인 32.24%로 계산함

2. 환율은 1SEK당 122.24원을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1. 네이버 환율,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spdlqj+ghks&qdt=0&ie=utf8&query=%EB%84%A4%EC%9D%B4%EB%B2%84%ED%99%98%EC%9C%A8, 검색일자: 2023. 8. 2.

2. 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3aebdb4e-en.pdf?expires=1690942186&id=id&acname=ocid72023593&checksum=35B6E8784FDF8C9528758585B56B6888>, 검색일자: 2023. 8. 2.

[그림 III-9] 2007~2016년 스웨덴 EITC



자료: Laun(2019), "In Work Benefits Across Europe," p. 35

□ 스웨덴의 근로장려세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다고 보고함

- Laun(2017)은 순노동시장참여세가 1% 낮아짐에 따라 노동공급이 0.22% 증가했다고 보고
-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65세에 은퇴할 확률이 4.9~12.5% 감소함
- <표 III-21>에 2017~2020년 근로장려세제의 실적을 정리하였음

<표 III-21> 스웨덴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단위: 천명, 백만SEK, %)

	2017	2018	2019	2020
수혜자	5445.2	5444.5	5453.3	5457.5
수혜금액	109,048	111,153	123,580	126,067
65세 이상 빈곤율	10.0	10.6	12.5	9.6

주: 빈곤율은 60% median HDI(Human Development Index)으로 계산된 값임

자료: Wallera et al., "EUROMOD Country Report - SWEDEN 2017-2020," EUROMOD, December 2020.

6. 호주⁷³⁾

- 호주정부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2004~2015년에 고령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인 Mature Age Worker Tax Offset(MAWTO)를 시행함
 - MAWTO의 세액공제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점증, 평탄, 점감의 세 구간으로 이루어짐
 -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
 - 2012년 이후 만 56세, 2013년 이후 만 57세로 연령 요건이 변화하였으며 <표 III-22>에 MAWTO 시행 이후 연령 요건의 변화를 정리하였음

<표 III-22> MAWTO Qualifying Age Threshold

Financial year	Born before(date)	Minimum age(years)
2004 - 2005	1 July 1950	55
2005 - 2006	1 July 1951	55
2006 - 2007	1 July 1952	55
2007 - 2008	1 July 1953	55
2008 - 2009	1 July 1954	55
2009 - 2010	1 July 1955	55
2010 - 2011	1 July 1956	55
2011 - 2012	1 July 1957	55
2012 - 2013	1 July 1957	56
2013 - 2014	1 July 1957	57
2014 - 2015	MAWTO was abolished	-

자료: Carter and Breunig(2019) Table 2

73) 호주 사례는 Carter and Breunig(2019)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지현 외(2023)를 참고 및 수정하여 작성함

- MAWTO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표 III-23>와 [그림 III-10]에 정리하였음
 - 근로소득 계산을 위하여 NIFW(Net Income from Working)를 사용하여 신청자의 근로소득을 계산하며 소득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이 존재함
 - 점증률은 5%, 최대 근로장려금 세액공제액은 500AUD, 점감률은 5%임
 - 2005~2006년 기간에 점감구간의 시작 소득액을 완화함

<표 III-23> 2004~2005년도 호주 근로장려세제 MA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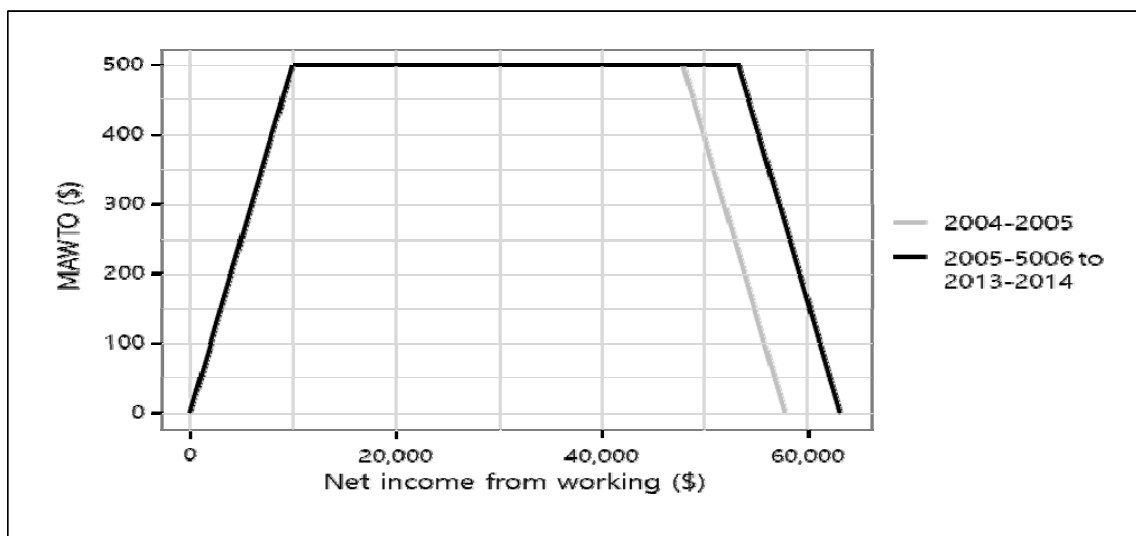
(단위: AUD)

근로소득 (NIFW: Net Income from Working)	근로장려금(MAWTO)
0~10,000 [0~900만원]	$NIFW \times 0.05$
10,000~48,000 [900~4,300만원]	500 [45만원]
48,000~58,000 [4,300만원 초과~5,200만원]	$500 - [0.05 \times (NIFW - 48,000)]$ [45만원 - $[0.05 \times NIFW - 4,300$ 만원]]

주: 환율은 1호주달러당 895.7640원을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Google Finance, https://www.google.com/finance/quote/AUD-KRW?sa=X&ved=2ahUKEwjExYv8ttD7AhUusVYBHX_TBpIQmY0JegQIDxAc, 검색일자: 2022. 11. 28.

[그림 III-10] 2004~2005년도 호주 근로장려세제 MAWTO



자료: Carter and Breunig(2019), p. 203

- MAWTO의 도입 이후 호주 정부는 10년간 43.6억호주달러(한화 3.9조원)를 지출함
 - 제도가 시작된 2004~2005년도의 지출액은 425백만 호주달러, 2011~2012년도의 지출액은 465백만호주달러, 2013~2014년도의 지출액은 350백만호주달러 수준
 -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12년 7월부터 새로운 수급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최종적으로 제도가 일몰

- MAWTO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도 그 효과성을 찾지 못함
 - Carter and Breunig(2019)는 제도가 시작된 200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55세인 그룹을 처치군, 54세인 그룹을 통제군으로 삼아 이중차분법 분석(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
 - 2012년부터 새로운 수급자를 받지 않게 되면서 마지막 수혜그룹인 2012년 6월 30일에 55세인 그룹을 처치군, 54세인 그룹을 대조군으로 삼아 효과를 분석
 - 분석 결과, MAWTO의 노동공급 제고효과(0.5%)가 크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치를 이용하여 1명의 고령 근로자를 일하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7,000~78,000호주달러 정도로 추정되어, 노동공급 제고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로 판단
 - MAWTO의 효과가 적었던 이유로는 세액공제액이 크지 않았던 점, 세액공제가 비환급제(non-refundable)로 운영된 것과 더불어 MAWTO의 적용 순서가 뒤로 밀려나 세액경감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 MAWTO 실제 공제액을 수혜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있음
 - Freebairn and Warren(2010)은 MAWTO의 수혜자는 적게 근로하는 것이 수혜금액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노동자를 전일제 근로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밝혀냄
 - Daley et al.(2016)은 고령자들이 은퇴가 아닌 근로를 선택하게 하는 데도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하였으며, MAWTO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고령자들이 충분히 노동시장에 남아있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분석함
 -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MAWTO는 직원당 90,000호주달러의 비용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는 5,000명의 인력만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⁴⁾

74) 호주 재무부,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david-bradbury-2012/media-releases/2012-13-budget-builds-growing-record-tax-reform>, 검색일자: 2023. 6. 15.

-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고령자들의 주요 장벽은 재정적 인센티브의 부족보다는 장애, 기술 장벽,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인 것으로 나타남⁷⁵⁾

7. 뉴질랜드⁷⁶⁾

- 뉴질랜드에는 네 가지 유형의 가족지원금(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WFTC)이 있음
 - 가족 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
 - 근로지원세액공제(In-work Tax Credit): 주당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원
 -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
 - 신생아 세액공제(Best Start Tax Credit):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
- 이 중 In-work Tax Credit(IWTC), Minimum Family Tax Credit(MFTC)이 근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액공제 제도임
- IWTC(In-work tax credit)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됨⁷⁷⁾
 -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부부 합산 근로시간이 30시간, 한부모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도 소득에 포함됨
 - 2021년 4월 1일부터 이직이나 퇴직에 의한 무급 휴직 시 최대 2주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IWTC는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함⁷⁸⁾

75) ACOSS, “Waste not, want not: Making room in the Budget for essential services,” April 2012., http://www.acoss.org.au/images/uploads/ACOSS_paper_188_waste_not_want_not.pdf

76)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topics/working-for-families/how-working-for-families-works>, 검색일자: 2023. 7. 19.

77)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working-for-families/payment-types>, 검색일자: 2023. 7. 19.

78)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200--ir299/ir271/ir271-2024.pdf?modified=20230221204652&modified=20230221204652> p.1., 검색일자: 2023. 7. 20.

- 자녀가 1~3명일 경우 연간 소득이 68,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일 때 IWTC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당 72뉴질랜드달러임
 -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수가 4명인 경우 IWTC 지급액은 주당 87뉴질랜드달러, 5명인 경우 102뉴질랜드달러, 6명인 경우 117뉴질랜드달러임
- MFTC(Minimum family tax credit)은 수입이 최저 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됨
- 편부모는 최소 주당 20시간, 부부가구는 가구 내에서 총 최소 30시간을 일해야 함
 - 최소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주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최소 근로시간은 사업소득(self-employed)에서 나올 수 없으며 자영업자는 MFTC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시간만큼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2023년 4월 1일부터 세후 연간 소득이 34,216뉴질랜드달러(세전 40,286뉴질랜드달러) 미만일 경우 MFTC를 받을 수 있음
 - 2023년 4월 1일부터 MFTC는 세후 주당 가구의 소득을 최소 658뉴질랜드달러 까지 보장함
- MFTC의 소득구간별 급여액을 [그림 III-11]에 정리하였음

[그림 III-11] 2024년 뉴질랜드 MFTC의 소득구간별 급여액

FAMILY INCOME (BEFORE TAX)		
Weekly \$ (gross)	Annual \$ (gross)	Weekly MFTC \$
0 to 182	0 to 9,500	658 - 494
182 to 269	9,501 to 14,000	494 - 417
270 to 298	14,001 to 15,500	417 - 393
299 to 326	15,501 to 17,000	393 - 369
327 to 355	17,001 to 18,500	369 - 345
356 to 384	18,501 to 20,000	345 - 321
385 to 413	20,001 to 21,500	321 - 298
414 to 442	21,501 to 23,000	298 - 274
443 to 471	23,001 to 24,500	274 - 250
472 to 500	24,501 to 26,000	250 - 226
501 to 528	26,001 to 27,500	226 - 202
529 to 557	27,501 to 29,000	202 - 179
558 to 586	29,001 to 30,500	179 - 155
587 to 615	30,501 to 32,000	155 - 131
616 to 644	32,001 to 33,500	131 - 107
645 to 673	33,501 to 35,000	107 - 83
674 to 682	35,001 to 36,500	83 - 75
682 to 711	36,501 to 38,000	75 - 52
711 to 743	38,001 - 39,500	52 - 26
743 to 774	39,501 - 40,286	26 - 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200---ir299/ir271/ir271-2024.pdf?modified=20230221204652&modified=20230221204652> p. 2., 검색일자: 2023. 7. 20.

8.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EITC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연계형 세액공제제도로 근로자세액공제(Employee Tax Credit)와 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두고 있음⁷⁹⁾
 - 근로자세액공제(Employee Tax Credit)는 PAYE(Pay As You Earn)시스템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소득의 예로는 근로소득(wages), 현물급여(benefit in kind),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소득(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income)이 있음
 - 아일랜드 거주민의 경우 다른 EU국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이 있거나 PAYE(Pay As You Earn)시스템에 의해서 과세되는 해외로부터의 임금(wage)이 있는 경우 근로자 세액공제의 수혜자격이 주어짐
 - 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는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되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운영됨
 - 소득으로 고려되는 대상은 사업소득(trading income), 회사 소유주(proprietary directors)로 벌어들인 소득 등이 있음
 - 반면, 임대수입, 이자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위 두 제도에 의해 연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2023년에 1,775유로
 - 단, 두 제도 모두의 수혜를 받는 경우 수혜금액의 합은 근로자세액공제(Employee tax Credit)의 최대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또한, 세액공제액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함

79) 아일랜드 관세청, <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income-and-employment/earned-income-credit/index.aspx>, 검색일자: 2023. 7. 20.

IV.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IV.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두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일하는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를 할 유인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크지 않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노동공급 의사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함

- 2006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근로장려세제는 이러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한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음
 - 이론적으로 볼 때 EITC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층의 노동공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층에서 ① 정부로부터 수령한 EITC 금액(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과 더불어 ② 추가적인 근로를 통한 소득 개선 효과(근로 유인을 통한 시장에서의 소득 개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이처럼 명확한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어 본 제도 운용 방식이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지에 초점을 두고 타당성 평가를 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현재 근로장려세제의 운용 방식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음
 -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일반적인 운용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도록 하겠음
 - 근로장려세제는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운용방식에 있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존재함
 - 다음으로, 현재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근로자층이 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인 ‘일하는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과도 같으며 이를 통해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
 - 가구당 지원 규모가 근로 빈곤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모인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부분은 제V장 효과성 분석의 노동유인효과 분석 결과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 세 번째로, 근로장려세제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신규 수혜가구의 유형 및 특성이 기존 가구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신규 수혜가구의 특성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네 번째로, 본 제도를 운용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지원대상의 규모가 과연 지속가능한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여타 소득지원형 복지제도와 본 제도의 중복성이 존재하는지를 수혜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이상의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소득, 재산, 연령요건 등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1.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 앞서 제도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임
- 특히, 수혜자의 ‘근로’ 행위와 정부의 ‘복지지출’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 정부의 복지지출과는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정부의 복지지출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이 저해되어 장기적으로 빈곤 상황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이 부분을 근로 연계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근로장려세제가 근본적으로 복지제도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장려세제 운용의 타당성은 복지제도와 유사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구성원의 빈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근로를 여기에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이며 이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EITC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관련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ITC 제도가 실제 근로유인효과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음
- 즉, 근로장려세제의 두 가지 특징인 ‘근로장려’와 ‘복지지출’이 각각 정부의 합당한 정책목표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 둘을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 또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타당함
- 이처럼 근로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제도라는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병목·신상화(2018)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근로를 하고 있는 이들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 유인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만약, 근로장려세제의 존재로 인해 근로를 하고 있는 계층에서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유인이 발생한다면 본 제도의 정책목표에 상충됨
 - 복지제도로서 소득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가. 기초생활수급가구 포함 여부에 대한 평가

- 첫 번째 기준인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 특정 개인이 일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세후소득이 복지제도에 안주할 때보다 더 커야 함
 - 또한,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에 근로행위와 무관한 소득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근로를 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제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음
 -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하는 것이 두 가지 복지제도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시사함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반대한 입장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두 가지 정책목표 중 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실제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들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성명재 외, 2008)

-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외 방침은 2014년 개편을 통해 2015년부터 폐지되었음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존재함
 - 송헌재·전영준(2011)의 경우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로 시행될 경우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
 - 전병목 외(2017)는 두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한계세율을 추정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벗어남에 따른 한계세율이 매우 높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
 - 박고은 외(2021)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의 노동시장 참여확률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
 -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효과를 증대시킨다면 근로장려세제 정책 목표에 부합함
 - 근로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유인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임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의 이행 과정을 고려하면 근로장려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장기적으로 근로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 포함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와 일관되나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소득 증가를 기대할 경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서는 이하 중복성 평가에서 자세히 논할 계획임

나. 근로유인 관점에서의 평가

- 두 번째 기준인 근로를 하는 이들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유인 감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성이 있음
 - 근로를 하는 계층이 근로장려금의 존재로 인해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유인이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이론적으로 볼 때 시간당 임금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를 가지며 이는 노동공급 관점에서 상반된 효과를 낳게 됨
 - 소득효과는 증가한 소득에 따라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자 하는 효과를 의미함
 - 대체효과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로 인해 여가 생활 영위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은 노동공급을 하고자 하는 효과를 의미

-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근로계층의 노동공급이 감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더 커야 할 것임
 -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세후소득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

-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함께 증가하는 점증구간뿐만 아니라 평탄구간과 점감구간도 함께 존재함
 - 이론적으로 볼 때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존재로 인해 근로계층의 노동공급이 더 감소할 수 있음
 - 실제, 선행연구들은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발견하고 있음

-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의 존재는 모든 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또한, 해당 구간에 속한 근로계층의 노동공급이 실제 감소하였는지는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직관적으로 볼 때 상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노동공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이 어려움

○ 만약,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수급가구의 상용직 비중이 높을 경우 소득효과에 따른 근로유인 감소효과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냄([그림 IV-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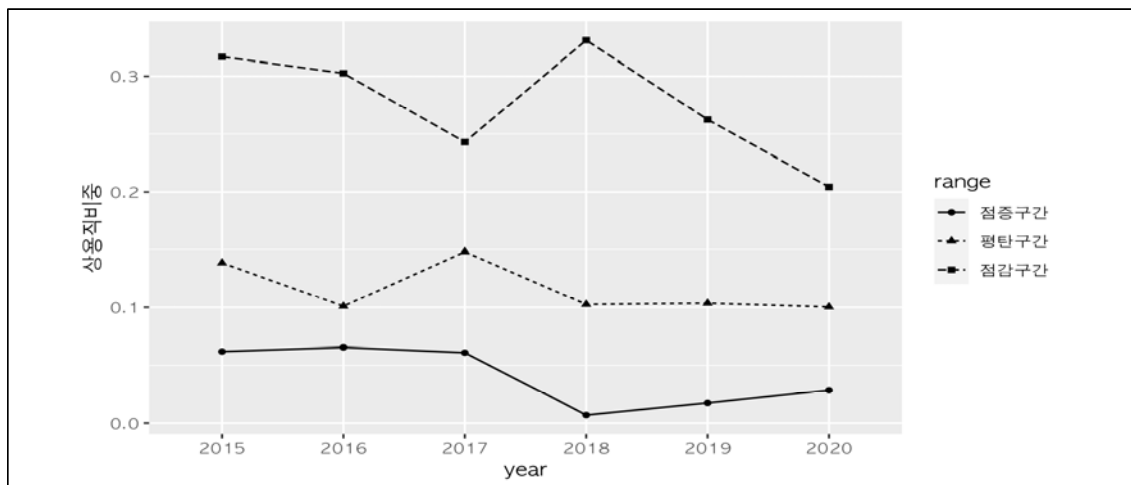
-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한 가구들을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구분한 뒤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모든 연도에 있어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서의 상용직 가구의 비중이 점증구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점감구간의 상용직 비중이 귀속연도 2020년 기준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은 상용직 비중으로 인해 근로유인 감소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IV-1> 연도-구간별 상용직 비중

연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2015	0.06	0.14	0.32
2016	0.07	0.10	0.30
2017	0.06	0.15	0.24
2018	0.01	0.10	0.33
2019	0.02	0.10	0.26
2020	0.03	0.10	0.20

자료: 재정패널 9차~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 구간별 상용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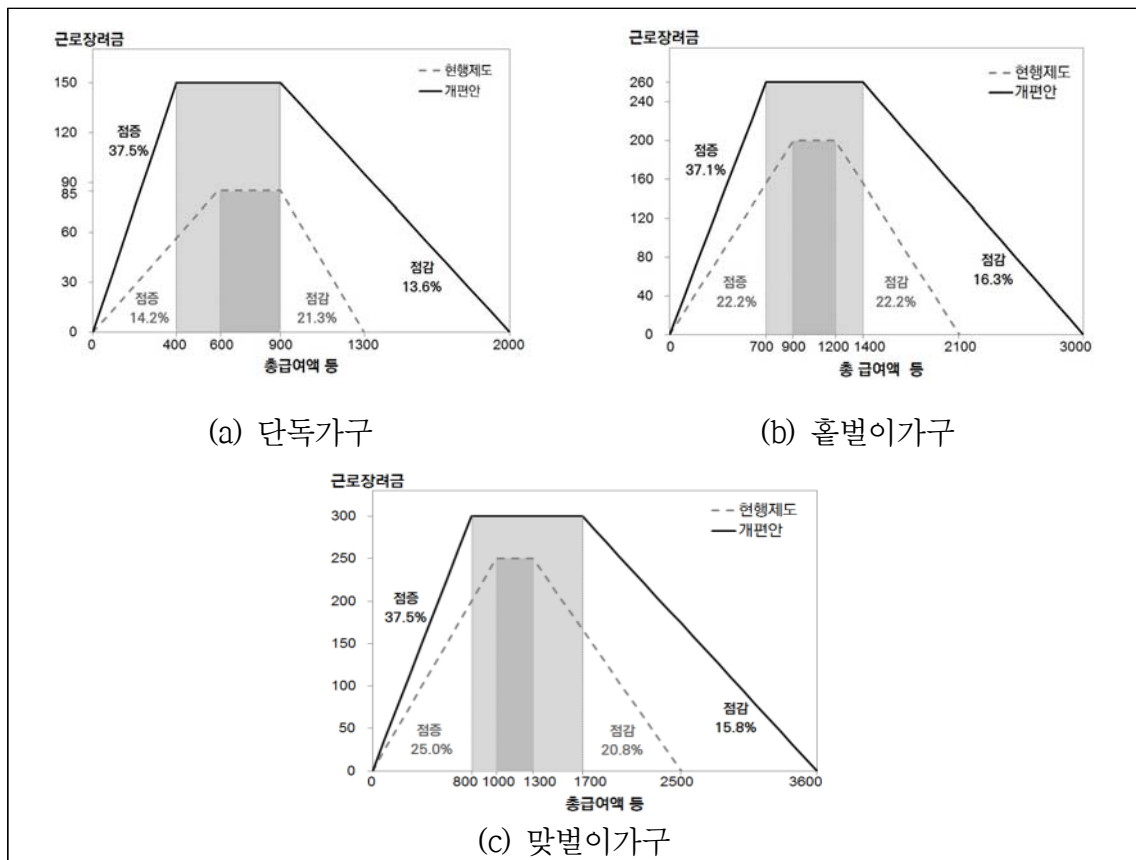
자료: 재정패널 9차~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는 평탄구간의 길이와 점감구간에서의 점감률에 의해 결정될 것임

□ 아래 그림은 2019년 개편 전후의 근로장려세제 지급 기준을 나타내고 있음([그림 IV-2] 참조)

- 최대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총급여액 등의 상한 또한 단독가구는 2,000만원까지,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까지 인상하였음
-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영역 또한 세 가구 유형 모두에서 매우 넓어짐
 -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600~900만원에서 400~900만원으로 증가
 - 홑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900~1,200만원에서 700~1,400만원으로 증가
 -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1,000~1,300만원에서 800~1,700만원으로 증가

[그림 IV-2] 가구유형별 개편안



자료: 신상화(2019) 재인용

- 이러한 개편의 결과로 점증구간의 길이는 짧아진 반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의 길이가 매우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래의 표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의 가구유형별 점증률과 점감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IV-2> 참조)
 - 소득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점증구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점증률의 경우 세 가구 유형 모두에서 크게 증가함
 - 소득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낮아지는 점감구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점감률의 경우 세 가구 유형 모두에서 크게 감소함
 - 2019년 개편 이후에도 점증률과 점감률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점증률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점감률은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2> 연도별 점증률과 점감률

(단위: %)

시행연도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점증률	점감률	점증률	점감률	점증률	점감률
2018년	14.2	21.3	22.2	22.2	25.0	20.8
2019년	37.5	13.6	37.1	16.3	37.5	15.8
2021년	37.5	13.6	37.1	16.3	37.5	15.8
2022년	37.5	11.5	37.1	14.4	37.5	14.3
2023년	41.3	12.7	40.7	15.8	41.3	15.7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점증률이 상승한 것은 2019년 개편에서 최대지급액이 증가한 것과 평탄구간의 시점이 낮추어진 것에 기인함
 -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규모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기 위한 조정의 결과임
 - 2019년 개편이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시사함
- 점증률 상승은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들의 노동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점증구간의 길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노동 유인이 증대되는 가구의 총량은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탄구간의 폭이 크게 증가한 것 또한 최대지급액을 최대한 많은 가구들에 지원하기 위한 조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또한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의 일환임
 - 이론적으로 볼 때 평탄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대체효과가 사라지고 소득효과만 남게 되어 근로유인이 저하됨
- 점감률이 낮아지면서 점감구간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노동공급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근로유인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다만, 점감률이 낮아진 것은 추가적인 소득 획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낮아지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여 노동공급 유인을 낮추는 대체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는 이론적으로 볼 때 2019년 개편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 기능을 크게 축소시켰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점증구간이 축소됨
 -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의 확대는 노동공급 유인을 감소시킴
-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해가는 과정에서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급여액 등 수준을 물가상승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2019년 개편 이후 몇 차례 소폭 개편이 있었으나 평탄구간의 시점은 유지한 채 최대지급액만 인상되어 점증률이 더욱 커지고 점증구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됨
 - 가령, 2022년 개정안은 최대지급액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나 점증, 평탄, 점감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에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 근로유인이 감소되는 평탄 및 점감구간은 점증구간이 존재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나 점감구간의 끝점에 해당하는 소득 상한 이내의 범위에서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의 배분에 신경쓸 필요성이 있음
 - 점감구간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더해져 근로유인이 가장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 점감구간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근로유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
 - 점감률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해당 구간에 위치한 근로자의 근로유인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의 상대적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세지출 변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 소득지원 대상자에 대한 평가

- 마지막으로, 현재의 근로장려세제가 복지제도로써 소득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현재 근로장려세제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리고 최대지급액 수준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음

<표 IV-3>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만원)

연도	1인	2인	3인	4인
2018년	2,007	3,417	4,420	5,423
2019년	2,048	3,488	4,512	5,536
2020년	2,109	3,590	4,645	5,699
2021년	2,193	3,706	4,781	5,852
2022년	2,334	3,912	5,034	6,145
2023년	2,493	4,147	5,322	6,481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⁸⁰⁾

80)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

〈표 IV-4〉 중위소득 대비 소득상한 및 최대지급액 비중

(단위: 만원)

연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소득상한	최대지급액	소득상한	최대지급액	소득상한
2018년	85 (0.04)	1,300 (0.65)	200 (0.06)	2,100 (0.61)	250 (0.05)	2,500 (0.46)
2019년~ 2022년	150 (0.07)	2,000 (0.98)	260 (0.07)	3,000 (0.86)	300 (0.05)	3,600 (0.65)
2023년	165 (0.07)	2,200 (0.88)	285 (0.07)	3,200 (0.77)	330 (0.05)	3,800 (0.59)

주: () 안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중을 의미함. 홀벌이가구의 경우 2인 기준, 맞벌이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4>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상한액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2019년 개편 이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약 46%(맞벌이가구)에서 약 65%(단독가구)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2019년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65%(맞벌이가구)에서 약 98%(단독가구) 수준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함

-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30%에서 50%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소득상한액 기준은 근로장려세제가 또 다른 복지제도의 일환이었음을 시사함
 -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수준이며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수준임
 - 따라서, 2018년까지의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의 정책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의 복지제도 외적인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중위소득에 근접한 수준까지 소득 상한을 인상시킨 2019년 개편은 타당한 측면이 존재함

<표 IV-5> 근로장려금 국가간 비교(미국 달러 기준 GDP)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대비 비율		
		최대급여		지원대상 소득상한	최대급여		지원대상 소득상한
		급여	소득상한		급여	소득상한	
미국 (2018)	단독신고, 자녀 0	519	8,490	15,270	0.8	13.1	23.6
	자녀 1	3,461	18,660	40,320	5.3	28.9	62.3
	자녀 2	5,716	18,660	45,802	8.8	28.9	70.7
	자녀 3+	6,431	18,660	51,492	9.9	28.9	79.5
	합산신고, 자녀 0	519	14,170	20,950	0.8	21.9	32.3
	자녀 1	3,461	24,350	46,010	5.3	37.6	71.0
	자녀 2	5,716	24,350	51,492	8.8	37.6	79.5
	자녀 3+	6,431	24,350	54,884	9.9	37.6	84.7
캐나다 (2018)	독신가구	1,355	12,820	24,112	2.7	25.3	47.6
	가족	2,335	17,025	36,484	4.6	33.6	72.1
한국 (2019)	단독가구	1759	10,554	23,455	4.1	24.6	54.6
	홀벌이가구	3049	16,418	35,182	7.1	38.2	81.9
	맞벌이가구	3518	19,936	42,219	8.2	46.4	98.2

주: 미국 GDP: \$64,770, 캐나다 GDP: \$46,420, 한국 GDP: \$31,940

자료: 1. 신상화·정다운(2019) <표 II-12> 재인용

2. OECD, 2019년 1사분기 평균 환율 기준,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4 미국 달러 기준(2019년 1사분기 평균 환율), 검색일자: 2019. 6. 6.;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CMR>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검색일자: 2019. 6. 6.

□ <표 IV-5>는 신상화·정다운(2019)에서 2019년 개편 내용과 주요국의 근로장려금 수준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⁸¹⁾

-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근로장려금 지급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과 최대지급액 수준이 미국, 캐나다보다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은 최대급여액이 1인당 GDP 대비 4.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미국(0.8%), 캐나다(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홀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최대급여액 수준은 1인당 GDP 대비 약 7.1~8.2%로 미국의 자녀 가구에 대한 지급액 수준인 5.3~9.9%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캐나다의 4.6%에 비해 높은 수준임

8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지급 수준은 2019년 개편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 이후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각국의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됨

- 소득상한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단독가구 기준이 1인당 GDP 대비 약 24.6%로 미국(13.1%)보다 크게 높고 캐나다(25.3%)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상한은 우리나라가 81.9~98.2%로 설정되어 있어 미국(62.3~84.7%)이나 캐나다(72.1%)보다 더 높은 수준임
- 이처럼 소득상한 및 최대지급액 수준에 대한 설정은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향되어 있으나 재산요건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개편 당시 총재산 2억원 미만 가구까지를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재산요건이 한 차례 완화되어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까지로 설정되어 있음
 - 앞서 비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가구의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소득요건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요건의 존재로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은 수급대상을 상대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독특한 특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고자산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판단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자녀 세대의 부의 축적이 부모 세대의 재산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 있을 경우 총재산 수준을 통제하여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할 수 있음
 - 가령, 독립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이 상당히 존재하는 저소득 자녀 가구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재산요건은 실물자산의 가격 변동성으로 충족여부가 달라져 수급자격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즉, 실물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낮아지는 경우 근로에 대한 노력이 동일함에도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재산요건의 존재는 근로장려세제 운용의 재정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제통계연보의 관련 통계자료들만으로는 재산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재정소요액을 알 수 없음

- 이에 14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음
 - 아래의 표는 현재의 소득요건에 재산요건을 배제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나타냄 (<표 IV-6> 참조)
 - 재산요건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여도 소득요건의 존재로 인해 6분위 이상의 고소득 분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추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가구들 중 재산요건이 2억원을 초과하여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구들이 추가로 제도에 편입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가구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은 약 6조 8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20년 재정패널 자료에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이 약 3조 5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조 3천억원의 추가적인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⁸²⁾

<표 IV-6>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 재산요건 삭제(2020년)

(단위: 가구, 천원)

소득 분위	가구수	현행기준			재산요건 삭제		
		수급 가구수	총지급액 (추정)	평균 지급액	수급 가구수	총지급액 (추정)	평균 지급액
1분위	2,421	520	1,534,487,808	1,306	809	2,742,033,484	1,551
2분위	899	456	1,519,177,643	1,369	817	2,986,051,639	1,613
3분위	864	242	420,106,861	697	495	984,538,442	888
4분위	920	51	43,591,940	413	88	107,020,204	602
5분위	973	1	30,007	39	3	166,032	59
계	6,077	1,270	3,517,394,259	-	2,212	6,819,809,801	-

주: 1. 소득분위는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총지급액은 재정패널 가구별 수급액을 시뮬레이션한 값에 가구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82) 재정패널의 한정된 가구샘플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이라서 실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통계치와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재산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총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반으로 감액하는 반액기준액 또한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조특법」 제100조의3)
 - 단,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2을 지급(「조특법」 제100조의5)

- 재산요건 중 반액 적용 기준을 운용하는 것의 효과 또한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 아래의 표는 반액 적용 기준을 삭제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액을 추정하고 있음(<표 IV-7> 참조)
 - 반액 적용 기준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액은 약 3천 8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현행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총지급액 수준인 약 3조 5천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IV-7>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 반액 적용 기준 삭제(2020년)

(단위: 가구, 천원)

소득 분위	가구수	현행기준			반액 적용 기준 삭제		
		수급 가구수	총지급액 (추정)	평균 지급액	수급 가구수	총지급액 (추정)	평균 지급액
1분위	2,421	520	1,534,487,808	1,306	520	1,675,607,725	1,551
2분위	899	456	1,519,177,643	1,369	456	1,701,726,639	1,613
3분위	864	242	420,106,861	697	242	468,469,768	888
4분위	920	51	43,591,940	413	51	49,451,574	602
5분위	973	1	30,007	39	1	60,015	59
계	6,077	1,270	3,517,394,259	-	1,270	3,895,315,722	-

주: 1. 소득분위는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총지급액은 재정패널 가구별 수급액을 시뮬레이션한 값에 가구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재산요건의 존재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양도받은 저소득 청년가구들과 자산 축적이 이미 이루어진 60대 이상 노인 가구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두 집단을 생계를 위해 근로제공하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어 재산요건을 활용하여 해당 집단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운용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산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기반할 때 재산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라. 소결

- 이상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였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포함 여부
 - 충분한 근로유인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적절한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오랜 논의 끝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대상자의 근로유인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더 많은 근로활동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탈수급 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이하 중복성 평가에서 더 상세히 논할 계획임
- 충분한 근로유인 제공 관점에서 현재의 점증, 평탄, 점감구간의 설계 방식은 향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의 개편은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함
 - 그 결과, 점증구간이 짧아지고 평탄 및 점감구간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음

- 이론적으로 볼 때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 근로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개편 과정에서 점증구간의 범위를 현재에 비해 넓히고 평탄구간의 길이는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2019년 개편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상한과 최대지급액 규모가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1인당 GDP 대비 소득상한과 최대지급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근로장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재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재산요건의 존재는 저소득-고자산 가구를 제도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기능과 더불어 전체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자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소득-고자산 가구들을 제도에서 배제시키는 현재의 재산요건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새롭게 제도에 편입된 가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평가 내용들은 근로장려세제 개별 구성 요소들이 정책 목표에 맞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이해
 - 2019년 개편은 전체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을 크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그 결과 지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 수급 대상 가구들의 특성 또한 크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이하에서는 2019년 개편에 따라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된 신규 수급 가구들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해당 가구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함

2. 신규 수급가구 분석

가. 국세통계연보

- 2019년 개편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에 편입된 신규 가구의 특성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귀속소득부터 2019년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지급된 근로장려금 규모와 그 전년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기에 제도 변화 전후의 경제변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큰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

- 하지만, 2019년 개편 내용이 2018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2019년 개편이 적용된 첫 해의 경우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크지 않은 시점임
 - 2019년 개편은 2018년 12월 국회 통과 이후 2018년 귀속분에 바로 적용되었음
 - 그런데 2018년 귀속소득의 경우, 제도 개편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편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2018년과 2019년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행태 변화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IV-8〉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단위: 가구, 백만원)

가구유형	가구수			금액		
	2019년	2018년	차이	2019년	2018년	차이
	3,885,211	1,693,612	2,191,599	4,300,342	1,280,821	3,019,521
단독가구	2,381,247	795,432	1,585,815	2,068,227	363,454	1,704,773
홀별이가구	1,230,152	796,096	434,056	1,831,389	798,695	1,032,694
맞별이가구	273,812	102,084	171,728	400,726	118,672	282,054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9년과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위의 <표 IV-8>은 2018년과 2019년의 가구유형별 가구수 및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2018년 약 169만가구에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이 2019년 약 389만가구로 확대되었음
 - 증가한 219만가구의 약 72.6%가 단독가구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8년 약 1조 3천억원 수준에서 2019년 4조 3천억원 수준으로 3조원가량 증가하였음
 - 이 중 약 1조 7천억원이 단독가구에서 증가하여 전체 증가액의 약 56.4%를 차지함
 - 홑벌이가구의 경우 약 1조원가량 증가함

<표 IV-9> 신청자 연령대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단위: 가구, 백만원)

연령대	가구수			금액		
	2019년	2018년	차이	2019년	2018년	차이
	3,885,211	1,693,612	2,191,599	4,300,342	1,280,821	3,019,521
30세 미만	1,072,358	30,655	1,041,703	932,298	28,752	903,546
40세 미만	518,610	279,991	238,619	562,752	208,149	354,603
50세 미만	632,975	399,573	233,402	800,319	341,608	458,711
60세 미만	717,217	432,740	284,477	885,154	339,854	545,300
70세 미만	562,654	299,174	263,480	715,089	234,030	481,059
70세 이상	381,397	251,479	129,918	404,730	128,428	276,302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9년과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신청자의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세 미만 신청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0세 미만 신청자의 상당수가 단독가구 유형임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앞선 가구유형별 비교에서의 단독가구수의 큰 폭의 증가와 유사한 결과임

<표 IV-10> 부양자녀수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단위: 가구, 백만원)

부양자녀수	가구수			금액		
	2019년	2018년	차이	2019년	2018년	차이
	3,885,211	1,693,612	2,191,599	4,300,342	1,280,821	3,019,521
0명	3,255,917	1,281,361	1,974,556	3,376,287	849,337	2,526,950
1명	355,066	236,159	118,907	527,989	247,598	280,391
2명	219,562	139,762	79,800	315,414	145,558	169,856
3명	47,443	31,231	16,212	69,517	32,869	36,648
4명	5,958	4,149	1,809	9,161	4,419	4,742
5명 이상	1,265	950	315	1,974	1,040	934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9년과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증가는 <표 IV-10>의 부양자녀별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신규 수급가구의 대부분이 부양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는 2019년 개편으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가 부양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20·30대 단독가구 유형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음을 시사함

<표 IV-11> 재산규모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단위: 가구, 백만원)

재산규모	가구수			금액		
	2019년	2018년	차이	2019년	2018년	차이
	3,885,211	1,693,612	2,191,599	4,300,342	1,280,821	3,019,521
1천만원 미만	111,925	78,090	33,835	123,382	57,446	65,936
3천만원 미만	545,566	312,246	233,320	623,934	240,800	383,134
5천만원 미만	735,293	380,250	355,043	855,895	307,858	548,037
7천만원 미만	565,752	286,446	279,306	679,345	242,349	436,996
1억원 미만	623,504	330,531	292,973	776,704	292,554	484,150
1억4천만원 미만	644,904	306,049	338,855	819,784	139,814	679,970
1억4천만원 이상	658,267	-	658,267	421,298	-	421,298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9년과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신규 가구가 부양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젊은 가구주로 주로 구성되었다면 재산 수준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표 IV-11>의 재산규모별 비교를 살펴보면, 2019년에 증가한 신규 가구 중 약 66만가구만이 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로 나타남
 - 2019년부터 재산요건이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음
 - 전체 신규 수급가구의 약 70%가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근로장려금 증가액의 약 86%가 1억 4천만원 미만 가구에서 발생하였음

- 이 결과는 2019년 개편의 두 축인 재산요건 완화와 소득요건 완화 중 소득요건 완화로 인한 효과가 더 컸을 수 있음을 시사함⁸³⁾
 - 전체 증가 가구수의 70%와 증가 금액의 86%가 최대지급액 및 소득상한 인상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변동분은 기존 가구에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 인상분과 신규 수급가구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신규 가구의 비중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함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재산수준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들 중에도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새롭게 근로장려제 대상으로 포함된 가구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임

- 국세통계연보 분석을 통해 신규 가구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이하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신규 가구와 기존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음

나.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14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14차 재정패널 자료는 2021년에 수집된 자료로 2020년을 조사 대상연도로 함

83)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 요건 폐지 효과를 『국세통계연보』만으로 구분할 수 없기에 크게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으로만 논하였음

- 시뮬레이션은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식별한 뒤 해당 가구들에 2018년까지의 과거 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2020년 수급가구 중 2018년 제도에서도 수급하였을 것으로 분석된 가구는 제도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었을 가구들임
 - 해당 가구들은 제도 개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증가한 가구들임
 - 이하에서는 이 가구들을 ‘기존 가구’라 칭하도록 하겠음
 - 2020년 수급가구 중 2018년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했을 가구가 존재하며 이 가구들을 ‘신규 가구’라 칭하도록 하겠음
 - 신규 가구들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주의 연령요건으로 인해 2018년 제도하에서는 수급하지 못한 가구들임

- 재정패널 14차 자료에서 2020년 귀속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구는 총 1,270가구임
 - 이는 14차 조사가구의 약 14.4%에 해당하는 가구수임
 - 이 중 기존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658이며 신규 가구는 612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12〉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및 기존 수급가구수

(단위: 가구)

총수급가구수	기존 가구	신규 가구
1,270	658	612

주: 재정패널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기존 가구 분석

- 우선, 기존 가구에 해당하는 658가구의 가구유형을 정리하였음
 - 기존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가 332가구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 홑벌이가구는 288가구
 - 맞벌이가구는 38가구

<표 IV-13> 기존 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가구)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별이가구
332	288	38

주: 재정패널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14>의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액 변화를 통해 제도 개편이 기존 가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단독가구의 경우 2018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평균 약 51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수령하였을 것이나 제도 개편으로 약 122만원을 수령하여 약 71만원의 수령액 증가가 발생함
 - 홀별이가구의 경우 약 100만원에서 약 196만원으로 약 96만원 상승
 - 맞별이가구의 경우 약 124만원에서 약 255만원으로 약 132만원 상승
 - 이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기존 수급액 대비 약 100% 내외의 근로장려금 인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표 IV-14>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가구·가구유형별

(단위: 가구, 천원, 세)

가구유형	가구수	평균 수급액 (2020년)	평균 수급액 (2018년)	평균 인상액	평균 가구소득	평균 총재산	평균 가구주 연령
단독가구	332	1,218	510	708	6,007	44,268	64.3
홀별이가구	288	1,961	997	963	10,444	63,273	62.0
맞별이가구	38	2,554	1,235	1,320	17,162	54,794	59.5

주: 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표 IV-15>는 기존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음
 - 기존 가구의 경우 모두 1분위에서 3분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소수의 가구만이 3분위에 해당함
 - 전체 기존 가구 중 409가구가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분위의 경우 240가구가 속함
 - 이 결과는 기존 가구가 2020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 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해당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IV-15>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가구·소득분위별

(단위: 가구, 천원, 세)

소득분위	가구수	평균 수급액 (2020년)	평균 수급액 (2018년)	평균 인상액	평균 가구소득	평균 총재산	평균 가구주 연령
1분위	409	1,409	718	690	4,769	51,111	66.0
2분위	240	1,841	796	1,044	13,407	54,000	58.9
3분위	9	1,997	279	1,717	22,877	63,153	59.6

주: 1. 소득분위는 2020년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함
2. 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기존 가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3분위로 증가한다 할지라도 평균 총재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이는 기존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소득요건이 더 강한 결속조건(Binding condition)이었을 것임을 시사함
- 또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0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고령 가구가 개편 전 근로장려세제의 주 수혜계층이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령은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신규 가구 분석

- <표 IV-16>는 전체 신규 가구수를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기존 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의 비중이 낮고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신규 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18.6%로 기존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증가분의 대부분은 단독가구 유형의 축소에서 발생
 - 기존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중이 약 50.5%였으나 신규 가구의 경우 약 39.2%로 낮아짐

<표 IV-16> 기존 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가구)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별이가구	계
신규 가구	240 (39.2%)	258 (42.2%)	114 (18.6%)	612
기존 가구	332 (50.5%)	288 (43.8%)	38 (5.8%)	658

주: 재정패널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앞선 국세통계연보 분석에서 2019년 개편의 소득요건 완화가 재산요건 완화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표 IV-16>의 결과는 2018년까지 적용된 맞별이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Binding)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
- <표 IV-17>은 신규 가구의 기초 통계를 가구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가구당 지급되는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기존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단독가구의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약 62만 5천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 가구의 약 122만원에 비해 약 51.3%에 그치는 수준임
 - 홀별이가구의 경우 신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기존 가구의 약 45% 수준이며 맞별이가구의 경우 약 3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IV-17>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구·가구유형별

(단위: 가구, 천원, 세)

가구유형	가구수	평균 지급액	평균 가구소득	평균 총재산	평균 가구주 연령
단독가구	240	625	12,737	69,934	48.3
홀별이가구	258	891	20,016	112,594	56.2
맞별이가구	114	764	29,504	105,884	57.1

주: 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기존 가구에 비해 신규 가구의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적다는 것은 신규 가구 중 점감구간에 위치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표 IV-18>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신규 가구와 기존 가구의 분포를 나타내고

- 있는데 실제로 신규 가구의 대부분이 점감구간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존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약 26.3%가 점감구간에 속했으나 신규 가구의 경우 약 78.3%에 이에 해당함
 - 이 결과는 2019년 개편에서 재산요건의 완화에 비해 소득요건의 완화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근거임

<표 IV-18> 신규·기존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계
신규 가구	65 (10.6%)	68 (11.1%)	479 (78.3%)	612
기존 가구	254 (38.6%)	231 (35.1%)	173 (26.3%)	658

주: 재정패널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17>의 가구유형별 시뮬레이션 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유형에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임
 - 이 결과는 국세통계연보를 정리한 <표 IV-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임
- 소득요건 완화가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모든 가구유형에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개편 전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고령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역할에 국한되었음을 시사함
 - 개인의 생애소득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 증가한 뒤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개편 전 소득요건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가운데 단독가구에 대한 가구주 연령요건이 30세로 설정되어 있어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 위주로 기존 제도가 운용되었음을 시사함
 - 연령요건이 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 효과로 현재 제도하에서 더 많은 젊은 가구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IV-19>은 신규 가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구소득 분위별로 나타내고 있음

- 신규 가구의 경우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분포하나 5분위의 경우 관측치 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가구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가구(<표 IV-15>)의 경우 소득 1분위에서 3분위까지 분포
- 신규 가구 중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한 소득분위는 3분위이며 그다음으로 2분위, 1분위, 4분위 순임
 - 기존 가구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대부분의 가구들이 집중되어있음
 - 이는 신규 가구가 기존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
- 모든 소득분위에서 신규 가구의 평균 근로장려금 수급액 수준은 기존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신규 가구들은 재산요건 완화가 아닌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새롭게 제도 내로 편입되었음을 시사함
 - 실제,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수급가구의 평균 총재산 수준은 총재산요건인 2억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신규 가구들의 평균 총재산 또한 기존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가령,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기존 가구의 평균 총재산은 약 5,1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신규 가구는 약 1억 2천만원 수준임

<표 IV-19>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구·소득분위별

(단위: 가구, 천원, 세)

소득분위	가구수	평균 수급액	평균 가구소득	평균 총재산	평균 가구주 연령
1분위	111	948	5,133	119,646	54.5
2분위	216	835	17,634	99,597	50.8
3분위	233	649	21,895	72,588	53.1
4분위	51	413	32,793	95,984	56.3
5분위	1	39	35,500	170,000	57.0

주: 1. 소득분위는 2020년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함
 2. 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다. 소결

- 이 절에서는 2019년 개편에 따라 제도에 새롭게 편입된 신규 가구의 특성을 국제 통계연보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이상의 신규 가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신규 가구는 기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연령대의 가구들로 구성됨
 - 신규 가구는 재산요건 완화보다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로 근로장려세제에 편입됨
 - 신규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및 총재산은 기존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이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도한 바임
 - 신규 가구당 지급되는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은 기존 가구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임
 - 신규 가구의 상당한 비중이 점감구간에 위치함

- 다수의 신규 가구가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편입되었고 그 결과 기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신규 가구들 역시 가구소득 기준 1~4분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
 - 신규 가구들의 다수가 점감구간에 위치하여 근로장려금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 무엇보다 일하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장려세제 정책 대상으로 더 적합한 측면이 존재함
 - 신규 가구는 실제 근로를 왕성하게 하는 30대에서 50대까지의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근로유인으로서의 기능이 기존 가구에 비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가구는 수급가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 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 신규 가구에 대한 노동유인 효과는 향후 실증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존재함

3. 유사·중복성 평가

-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요건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임
 - 일반 보조금제도의 근로비유인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능

- 동 제도와 중복성을 검토함에 있어 두 가지 제도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다른 조세 및 재정지원제도를 검토
 - 유사 조세특례제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가 있음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청년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감면한도 200만원)하는 제도
 - 유사 소득지원제도로는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가 있음
 -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자산 검증 후 일정기준 미달가구에 제공하는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
 - 단, 동 제도는 보충급여방식의 소득지원제도로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근로비유인이 높은 소득지원제도

-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 중 대표적 소득지원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성 분석과 함께 제도 조화방안을 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이며,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
 - 두 제도 간 지원대상, 제도구성 등의 조화가 중요함
 -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는 근로시 혜택을 받는다는 유사성이 있으나, 중소기업 취업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근로유인제도로 보기 어렵고 소득에 대한 고려도 없어 소득재분배성 지원제도로 보기에 어려움 중복적이라 하기 어려움

-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동일 대상에 대해 중복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 노동소득에 대해 두 번의 혜택을 제공

하는 중복성 문제 내포

-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하도록 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소득(중위소득의 30%)은 3인 이하 가구에
서는 근로장려세제의 평탄구간 이하에 포함되는 구조

<표 IV-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단위: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748	1,244	1,597	1,944	2,279	2,602	2,919
의료급여	997	1,659	2,129	2,592	3,039	3,469	3,892
주거급여	1,172	1,949	2,501	3,046	3,571	4,077	4,573
교육급여	1,247	2,074	2,661	3,241	3,798	4,337	4,865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홀별이	맞벌이
점증구간	400	700	800
평탄구간	900	1,400	1,700
소득상한	2,200	3,200	3,800

자료: 보건복지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20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또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소득에 대해 두 번의 혜택을 제공
 - 즉, 노동소득 수준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동일 노동소득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생계급여를 증액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권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허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청년(대학생)과 노인은 공제금액 상향
 - 24세 이하자 또는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100% 공제후 초과액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은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 100% 공제후 초과액 30% 공제
 - 이는 노동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근로장려금(EITC)의 점증구간과 동일한 구조
- 동일 목적의 중복적 제도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의 분리가 필요할 수 있음
- 빈곤층의 근로유인(소득지원 포함) 목적은 동일 제도내 근로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하고 탈수급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근로유인의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
 -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가 더 필요하다면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경을 통해 유도할 수 있음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공제로 인해 수급자는 탈수급시점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소득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즉 생계급여 산정에서 적용되는 30% 소득공제가 탈수급시점에서 사라지게 되어 소득은 탈수급시점에서 30%가 감소하게 됨
 - 탈수급 직전 소득 = 실제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실제소득⁸⁴) + 근로소득 공제액 (= 0.3 × 실제소득)
 - 탈수급시점 소득 = 실제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이러한 소득절벽현상은 수급자의 탈수급유인을 저하시키는 요인
 - 생계급여 수급구간 내에서 소득공제가 근로유인으로 작용하지만 궁극적인 탈수급시점에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하게 되면 탈수급시점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되어 동 시점에서 소득감소 폭이 축소하거나 소득감소가 사라져 탈수급에 유리한 환경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탈수급시점에서 근로소득공제액(A)만큼 소득이 감소하게 됨

8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으로 가정

- 가구규모별 탈수급시 소득감소액은 224만원(1인)~583만원(4인)에 달함
-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하면 탈수급시점의 소득감소액은(기초생보 소득공제액 - 근로장려금)으로 감소
- 2023년 기준 소득감소액이 59만원(1인)~253만원(4인)으로 축소
- 이는 탈수급시점의 소득감소율을 크게 하락시켜 탈수급 저해유인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
- 기존 소득감소율 23.1%에서 중복 배제시 5.5~10.0%로 하락

□ 근로장려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적용제외를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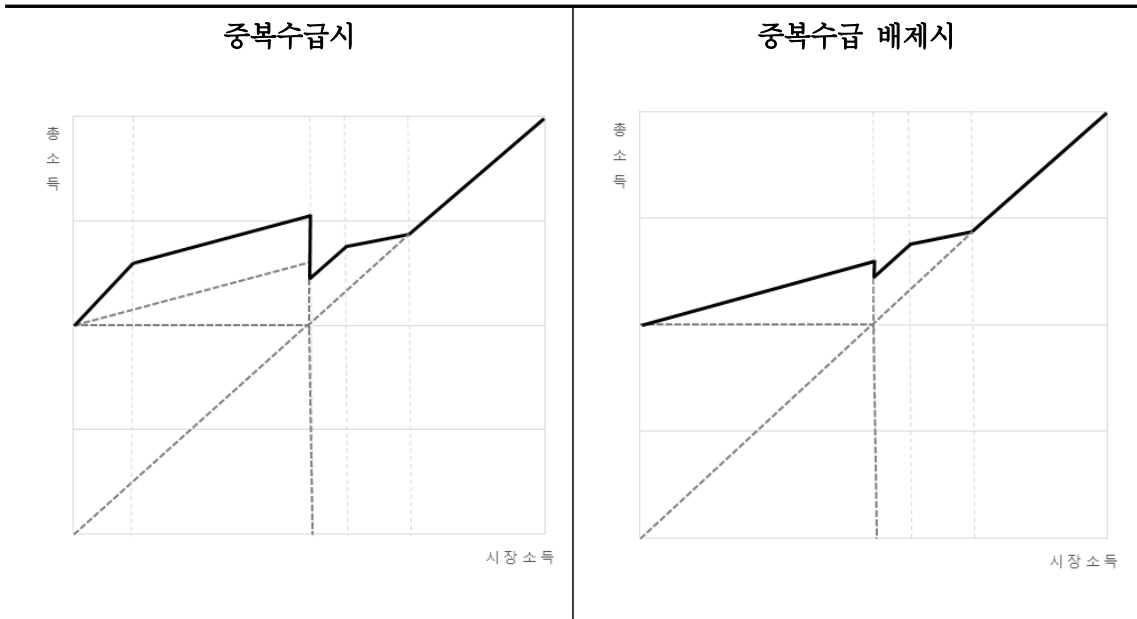
- 추가적인 근로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를 통하는 것이 단순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
- 다만, 과거 근로장려금, 기초생보급여의 중복지급 금지에서 2014년부터 중복지급을 허용하였으므로 탈수급 및 근로참여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에 기반하여 추진할 필요

<표 IV-21>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분리적용에 따른 탈수급시점 소득감소액의 변화

(단위: 만원, %)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기준(A)	748	1,244	1,597	1,944
소득공제액(B)	224	373	479	583
중복지급시 소득감소율 (B/(A+B), %)	23.1	23.1	23.1	23.1
EITC 최대급여(C)	165 (단독가구)	285 (홀벌이가구)	330 (맞벌이가구)	330 (맞벌이가구)
분리시 소득감소액(D=B-C)	59	88	149	253
분리적용시 소득감소율 (D/(A+B), %)	6.1	5.5	7.2	10.0

[그림 IV-3]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변화



주: 실선은 총소득의 변화이며,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소득공제를 반영하였으며 생계급여 탈수급시점에서 소득의 역전현상 발생

V.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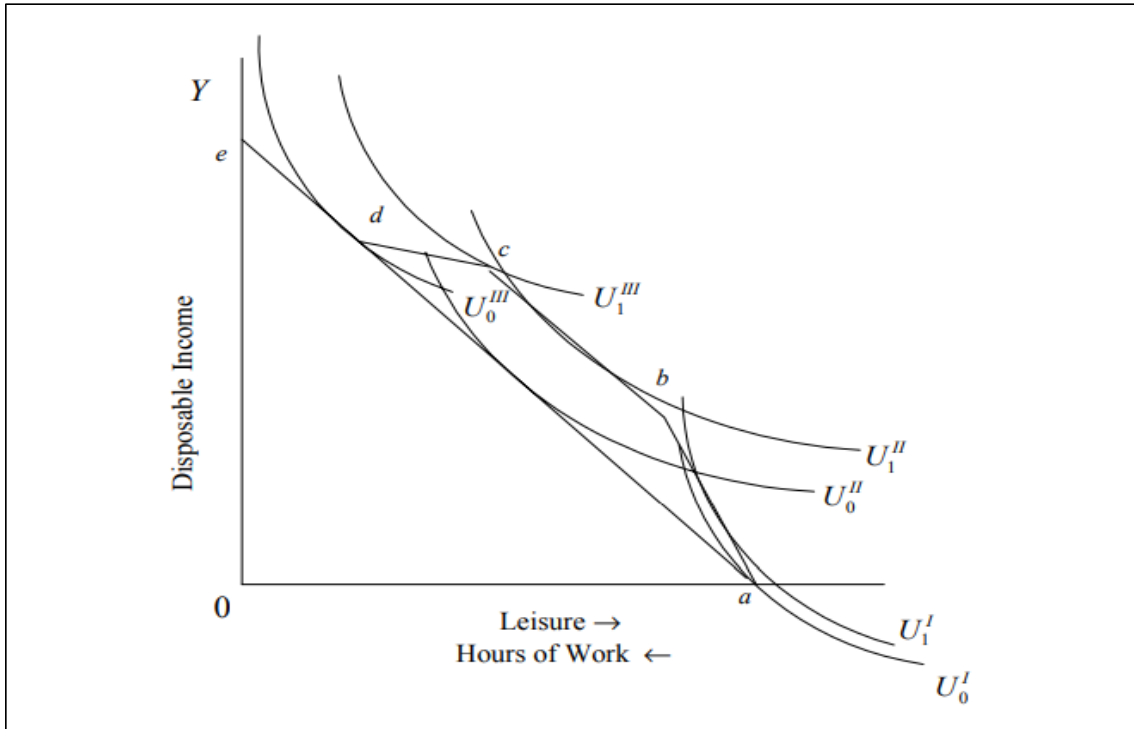
V.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됨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소득보전의 효과는 있으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음

-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평가는 소득보전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장려라는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의 확실한 근로유인효과는 ‘점증구간’에서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점증구간은 근로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간으로 소득 1원 증가당 장려금 증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를 ‘점증률’이라고 함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개인의 경우 근로장려금으로 인하여(세후)임금이 상승하면서 외연적 근로유인효과(extensive margin)를 받게 됨([그림 V-1]의 U^I 참고)
 -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점증구간에 있는 개인의 경우(세후)임금 상승으로 여가가 더 비싸진 효과(가격효과)와 소득증가로 여가를 더 즐기고자 하는 효과(소득효과)가 동시에 존재하여 가격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음
 - 즉, 내연적 효과(intensive margin)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반면, 소득의 증가에도 장려금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평탄구간’에서는 근로를 증가시켜도 최대장려금이 동일하게 주어짐
 - 즉, 유효임금의 변화없이 소득증가(소득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가 ‘정상재’라는 가정 아래 오히려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함([그림 V-1]의 U^{II} 참고)
 - 마지막으로 점감구간에서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더 할수록 (세후)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대체효과)가 있으며,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소득감소효과(소득효과)가 동시에 존재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함([그림 V-1]의 U^{III} 참고)

[그림 V-1] 근로장려금이 경제활동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자료: Hotz and Scholz(2001)의 Figure 1

- 점증구간에서만 뚜렷한 외연적 근로유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유인효과가 나타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점증구간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확실한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있더라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수월하지 못한 경우 노동공급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의 유인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욕구가 있는 경우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도 여전히 노동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의 노동제고효과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2018년 세법개정 이후의 분석이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 노동공급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점증구간에서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음(김재진·이상은·이철인, 2014; 안종석·송헌재·홍우형, 2017)
 - 반면, 노동공급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발견한 연구들 또한 존재함(홍민철·문상호·이명석, 2016; 권성오·홍우형, 2021; 박지혜·이정민, 2018)
 - 2018년 세법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함(김문정·김빛마로, 2020; 신상화·김문정, 2022)
-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산정의 기반이 되는 총소득, 총급여액 등, 재산요건, 가구유형 관련 변수 등의 정보가 부재한 데이터의 한계일 수 있음
- 재정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등의 서베이 데이터들은 수급여부 및 수급액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응답률이 높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노동공급변수 생성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을 주어진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종속변수의 측정상의 오류가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본 효과성 분석에서는 국세청 미시자료(2017~2021년도)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의 경험이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보고자 함
- 국세청의 장려세제과로부터 협조를 받아 구축한 미시패널자료는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뿐 아니라 수급여부 및 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소득, 총급여액 등, 재산요건, 가구유형 등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근래 가장 큰 제도의 확대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음
 - 외연 및 내연 노동공급효과는 총급여액 유무 및 로그 총급여액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소득효과는 총급여액 및 세후소득(총급여액+근로장려금)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음

- 본 효과성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첫 번째는, 2017~2021년 전 연도의 효과를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두 번째는, 2018년 세법개정 효과(소득요건 및 연령요건 완화)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2017~2021년 효과성 분석) 분석결과, 전반적인 노동제고(외연 및 내연)효과와 소득증가효과(총급여액 및 세후소득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t-2$ 기 소득을 기반으로 $t-1$ 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에 그다음해인 t 기에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8.82%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생적 근로유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총급여액은 평균 9.75%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연적 근로유인효과 또한 존재함
 - 근로유인으로 인한 총급여액의 증가는 72만원,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 증가는 108만원으로 나타남
 - 이질적인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간별(점증, 점감, 평탄), 연령별(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직업별(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구성별(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분석을 실시함
 - 분석결과, 효과가 큰 집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외연적 노동공급: 점증구간(16.47%), 단독가구(9.4%)
 - 내연적 노동공급: 점증구간(34.9%), 30세 미만 가구(21.5%)
 - 소득(총급여액)⁸⁵⁾: 30세 미만(146만원), 근로자(81만원)
 - 세후소득⁸⁶⁾: 30세 미만(158만원), 근로자(117만원)

-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2018년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유입된 신규 가구들 중
 - ① 소득요건 완화로 유입된 가구 ②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을 폐지로 유입된

85) 종교인은 전체 수혜자의 0.37%(2021년 기준)만을 차지하고 있어, 종교인을 제외하고 큰 효과를 보고함. 종교인 소득(총급여액)은 140만원.

86) 세후소득은 총급여액+근로장려금을 의미하며 종교인(179만원)을 제외하고 큰 결과를 제시함. 소득(총급여액)의 증가가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변화가 큰 결과를 제시함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집중하여 이중차분법 분석을 시행한 결과, 노동유인효과 및 소득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요건 완화로 유입된 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함
 - 신규 유입 수혜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의 증가가 6.7%가량 높았으나, 총급여액이 존재하는 경우 로그총급여액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반면, 총급여액의 크기는 183만원가량,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 또한 178.8만원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음
- 연령요건 폐지로 유입된 30세 미만 단독가구들의 경우 노동공급 및 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음
 -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30대 단독가구에 비하여 2018년 세법개정 이후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이 40% 높았으며, 총급여액 증가가 26% 높음
 - 총급여액의 증가는 492만원가량 컸으며, 근로장려금을 합한 세후소득의 증가는 498만원으로 나타남

1. 국세청 자료 소개

- 근로장려금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미시자료를 요청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함
 - 패널자료 기간은 소득귀속연도 기준 2017~2021년(수급연도 기준 2018~2022년) 총 5개년임
 - 표본은 소득귀속연도 기준 2021년(수급연도 기준 2022년)에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전체 4,253,885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가구의 과거 수급자료를 역추적하여 구성함
 - 따라서, 본 자료에 포함된 개인들은 2017~2020년도에는 수혜여부가 상이하나, 제도 확대에 따라서 2021년에는 결과적으로 모두 수혜대상자가 되는 가구들로, 재산, 소득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특성이 유사한 가구들이라 할 수 있음
- 본 자료에 포함된 가구들의 연도별 신청현황은 <표 V-1>, 수급현황은 <표 V-2>와 같음

- 자료 시작시점인 2017년도 표본 중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비중은 24%, 수급가구의 비중은 21%임
- 2018년 세법개정 이후 표본 중 신청가구의 비중은 46%, 수급가구의 비중은 42%로 다소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신청가구 및 수급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도 신청가구의 비중은 62%, 수급가구의 비중은 59%로 나타남
- 소득요건의 확대가 있었던 2021년도에 또 한 번 신청가구와 수급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2021년도에는 모든 가구가 신청 및 수급가구가 됨

<표 V-1> 국세청 미시자료 연도별 신청·미신청 가구수 및 비중

(단위: 천가구, %)

귀속연도	전체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신청	9,198 (43%)	3,242 (76%)	2,315 (54%)	2,009 (47%)	1,632 (38%)	0 (0%)
신청	12,071 (57%)	1,012 (24%)	1,939 (46%)	2,245 (53%)	2,622 (62%)	4,254 (100%)
전체	21,269	4,254	4,254	4,254	4,254	4,254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 국세청 미시자료 연도별 수급·비수급 가구수 및 비중

(단위: 천가구, %)

귀속연도	전체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수급	9,756 (46%)	3,360 (79%)	2,451 (58%)	2,183 (51%)	1,754 (41%)	6,504 (0%)
수급	11,513 (54%)	894 (21%)	1,802 (42%)	2,070 (49%)	2,500 (59%)	4,247 (100%)
전체	21,269	4,254	4,254	4,253	4,254	4,254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본 패널자료는 장려금 수급자격여부 판별 및 산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구축·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짐
 - 실제 지급요건 산정에 사용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장점이 있으며, 이는 재정패널 등의 설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나 기존 심층평가에서 사용한 행정데이터와도 차별점이 있음⁸⁷⁾

87) 예를들어,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한 안종석 외(2017)의 경우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 및 주택요건 충족여부를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여 사용

- 소득요건 관련 변수로는 근로장려금 자격여부 판별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의 총합인 총소득액정보,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총합인 ‘총급여액 등’ 정보를 제공함
 -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목적으로 하는 ‘총급여액 등’이 실질적인 증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설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의 경우 ‘총 급여액등’이 포함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생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응답오류의 존재 등으로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정확한 판별이 어려움
 - 재산요건 관련 변수로는 1억원 미만, 1억 4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를 제공하고 있어, 각 연도별 재산요건 충족 여부 판별이 가능함
 - 더불어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가구유형 관련 변수를 제공함
 -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산정액 정보와 반기신청 여부 변수를 제공함
 - 신청인 및 가구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신청인의 나이, 부양자녀 수, 거주지역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함
- 첫 번째로는, 국세청 미시자료는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가구단위의 노동공급 결정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가능하나, ‘개인’단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정적임
 - 특히, 맞벌이가구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주된 소득자의 노동공급 변화로 인한 것인지, 부소득자의 노동공급 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분석할 수 없음
 - 따라서, 맞벌이가구는 국세청 미시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은 가구단위의 노동공급 변화 및 소득증가를 추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부인 홑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인하여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단독가구는 가구단위의 의사결정을 개인단위의 의사결정으로 환원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단독가구의 구성이 대체로 30세 미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외부타당성(external validity)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

- 두 번째로는 가구 및 개인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임
 -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노동공급 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고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근로장려금의 효과성 추정에 편의를 가져올 수 있음

2. 자료 대표성 점검

- 또한, 본 국세청 미시자료는 소득귀속연도 기준 2021년에는 대부분의 신청가구를 포함한 전수자료이나 2021년에는 수급하지 않았으나 2017~2020년도에 수급한 가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2017~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표본자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자료를 활용하여 본 데이터에 포함된 2017~2020년도 수급자의 특성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 먼저는, 2017~2020년 전체 수급가구의 수와 평균수급액을 비교하고, 이를 가구 유형별, 가구주 혹은 신청인의 연령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본 데이터의 대표성 확보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 본 표본과 모집단의 수급 가구수 및 평균 수급액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7~2020년간 본 표본의 수급자는 전체 모집단에 포함된 수급자의 44~59% 정도로 연도별로 큰 변동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 평균수급액은 88~127만원으로, 모집단의 평균수급액인 75~110%의 약 112~123% 가량으로,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임

〈표 V-3〉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단위: 가구, 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통계연보	수급가구수(A)	1,793,234	4,102,022	4,318,967	4,206,833	4,362,325
	평균지급액(B)	75	110	103	105	102
미시자료	수급가구수(C)	893,687	1,802,361	2,070,418	2,499,699	4,247,322
	평균지급액(D)	88	132	127	126	114

<표 V-3>의 계속

(단위: 가구, 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표본비율	수급가구수(C/A)	50%	44%	48%	59%	97%
	평균지급액(D/B)	118%	120%	123%	120%	112%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전체 표본 외에도 가구 구성 및 연령별 수급가구 및 평균수급액을 살펴보아 연도별로 편향된 표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하여봄
- 먼저, <표 V-4>에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가구 유형별 연간 수급가구수 및 평균수급액을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단독가구인 수급가구는 2017~2020년 모집단인 단독가구 수급가구의 43~56%가량으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지급액 비율 또한 108~115% 수준으로 나타남
 - 홑벌이가구인 수급가구도 2017~2020년 동안 전체 모집단의 54~67%를 연도별로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되었으며 평균지급액 비율 또한 115~121%로 다소 높으나 여전히 비슷한 수준임
 - 맞벌이가구인 수급가구는 2017~2020년 동안 전체 모집단의 4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지급액 비율은 121~134%로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음

<표 V-4>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가구유형별

(단위: 가구, 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A. 단독가구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795,432	2,381,247	2,671,439	2,736,349	2,956,175
	평균지급액(B)	46	87	85	87	85
미시자료	가구수(C)	392,311	1,020,094	1,225,584	1,542,750	2,901,268
	평균지급액(D)	49	97	97	99	93
표본비율	가구수(C/A)	49%	43%	46%	56%	98%
	평균지급액(D/B)	108%	112%	115%	114%	109%

<표 V-4>의 계속

(단위: 가구, 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B. 홀별이가구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796,096	1,230,152	1,272,823	1,217,393	1,166,188
	평균지급액(B)	100	149	139	139	138
미시자료	가구수(C)	448,238	663,816	723,414	821,041	1,127,829
	평균지급액(D)	115	174	168	166	159
표본비율	가구수(C/A)	56%	54%	57%	67%	97%
	평균지급액(D/B)	115%	117%	121%	120%	115%
C. 맞별이가구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102,084	273,812	270,015	253,091	239,962
	평균지급액(B)	116	146	134	142	137
미시자료	가구수(C)	53,138	118,451	121,420	135,908	218,225
	평균지급액(D)	140	186	179	189	165
표본비율	가구수(C/A)	52%	43%	45%	54%	91%
	평균지급액(D/B)	121%	127%	134%	134%	120%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5> 는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의 연령별로 연간 수급가구수 및 평균수급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나타냄

- 분석결과, 연령별 분석에서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으나, 30세 미만 표본은 다소 적게 60세 이상 표본은 다소 많이 포함된 특징이 있었음
- 30세 미만 표본은 2017~2020년 동안 모집단의 35~56% 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지급액 비율은 109~118% 수준이었음
- 30세 이상 40세 미만 표본은 2017~2020년 동안 모집단의 39~53%가량을 포함하고, 평균지급액 비율은 119~121% 수준으로 비슷했음
- 40세 이상 50세 미만 표본은 2017~2020년 동안 모집단의 49~61%를 포함하고, 평균지급액 비율은 113~117% 수준이었음
- 50세 이상 60세 미만 표본은 2017~2020년 동안 모집단의 52~62%를 포함하고, 평균지급액 비율은 115~117%로 비슷한 수준
- 60세 이상 표본은 2017~2020년 동안 모집단의 59~69%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지급액 비율은 117~121%로 나타남

<표 V-5>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연령별

(단위: 가구, 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A. 30세 미만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30,655	1,072,358	1,182,631	1,187,593	1,254,094
	평균지급액(B)	94	87	84	87	85
미시자료	가구수(C)	17,159	380,297	464,732	595,087	1,211,960
	평균지급액(D)	103	100	99	102	94
표본비율	가구수(C/A)	56%	35%	39%	50%	97%
	평균지급액(D/B)	109%	115%	118%	117%	111%
B. 30세 이상 40세 미만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279,991	518,610	519,783	524,090	544,095
	평균지급액(B)	74	109	103	103	97
미시자료	가구수(C)	119,406	204,366	224,464	276,279	530,935
	평균지급액(D)	88	131	125	122	106
표본비율	가구수(C/A)	43%	39%	43%	53%	98%
	평균지급액(D/B)	119%	121%	121%	119%	110%
C. 40세 이상 50세 미만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399,573	632,975	623,782	604,484	585,543
	평균지급액(B)	85	126	118	117	113
미시자료	가구수(C)	195,895	296,081	320,848	367,107	574,977
	평균지급액(D)	97	147	139	137	123
표본비율	가구수(C/A)	49%	47%	51%	61%	98%
	평균지급액(D/B)	113%	116%	118%	117%	110%
D. 50세 이상 60세 미만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432,740	717,217	757,680	725,363	710,382
	평균지급액(B)	79	123	114	114	110
미시자료	가구수(C)	235,752	369,980	403,110	452,336	697,764
	평균지급액(D)	90	142	134	133	121
표본비율	가구수(C/A)	54%	52%	53%	62%	98%
	평균지급액(D/B)	115%	115%	117%	117%	110%
E. 60세 이상						
국세통계연보	가구수(A)	550,653	944,051	1,130,401	1,165,303	1,268,211
	평균지급액(B)	66	119	112	113	112
미시자료	가구수(C)	325,475	551,637	657,264	808,890	1,231,686
	평균지급액(D)	79	138	137	137	129
표본비율	가구수(C/A)	59%	58%	58%	69%	97%
	평균지급액(D/B)	121%	117%	123%	121%	11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연도별 수급가구수 및 평균수급액을 국세통계연보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본 패널자료는 2017~2020년 각 연도에 44~60% 정도의 모집단을 안정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수급액 측면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는 가구유형별, 연령별 세부그룹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3.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분석

가. 식별전략

-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및 소득증가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이 총급여액 여부 및 총급여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근로장려금 수급과 관련된 변수로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ITC_{it}$)를 사용함
 - 효과분석을 위하여 수혜자격 여부 등과 같은 외생적 변수가 아닌 실제수혜 여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의 한계점은 존재함
 - 좀 더 자세하게는 한해 전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함
- 노동공급변수로는 근로여부(extensive margin)를 나타내는 총급여액여부($Dgross_{it}$) 변수와 근로정도(intensive margin)를 나타내는 로그총급여액($gross_{it}$)변수를 사용
 - 국세청 미시자료는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총급여액의 존재여부로 근로여부를 판별함
 -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로그총급여액($gross_{it}$)의 증가를 노동시간의 증가로 간주함
 - 단, 사업소득의 경우 노동시간과 소득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 소득변수로는 총급여액($gross_{it}$)변수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포함한 세후소득을 사용함

-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노동유인효과로 인한 총급여액의 증가와 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효과로 구분되어짐
- 총급여액($gross_{it}$)의 변화로 노동유인효과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세후소득의 변화로 장려금을 포함한 소득의 증가를 추정함

□ 국세청 미시자료 사용 시 중요한 쟁점은 근로장려금 수급시점과 근로유인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설정하는 것임

- 국세청 데이터에는 t 기에 발생한 총급여액($gross_{it}$)과 총급여액여부($Dgross_{it}$)나 그에 기반하여 산정되어 지급된 근로장려금수급여부($EITC_{it}$) 정보가 있음
 - 총급여액여부($Dgross_{it}$) 및 총급여액($gross_{it}$)은 발생연도기준, 근로장려금수급여부($EITC_{it}$)는 장려금 산정의 기반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시점이 설정됨
 - 즉, $EITC_{it}$ 는 t 기 소득을 기반으로 $t+1$ 기에 지급된 장려금을 의미
- 동일 연도(t)의 근로장려금수급여부 및 산정액에 대한 종속변수로 총급여액존재여부 및 총급여액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y_{it} = \alpha + \beta EITC_{it} + \gamma X_{it} + \sum_{k=1}^T \gamma_k D_k + \varepsilon_{it} \quad \text{식 (1)}$$

- 또한, $t-1$ 기의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t 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수급여부($EITC_{it-1}$)가 t 기에 발생한 총급여액($gross_{it}$)과 총급여액여부($Dgross_{it}$)에 미치는 영향을 식 (2)와 같이 분석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수급은 정기신청의 경우 주로 당해 9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시간이 3개월가량으로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⁸⁸⁾

$$y_{it} = \alpha + \beta EITC_{it-1} + \gamma X_{it} + \sum_{k=1}^T \gamma_k D_k + \varepsilon_{it} \quad \text{식 (2)}$$

88) 2019년도부터 시작된 반기 지급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12월,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 6월에 지급이 이루어짐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어 $t-2$ 기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t-1$ 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수급여부($EITC_{it-2}$)가 t 기의 총급여액존재여부($Dgross_{it}$) 및 총급여액($gross_{it}$)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y_{it} = \alpha + \beta EITC_{it-2} + \gamma X_{it} + \sum_{k=1}^T \gamma_k D_k + \varepsilon_{it} \quad \text{식 (3)}$$

- 위에서 논의한 식별전략은 아래의 회귀식으로 표현되며, 본 분석에서는 β 를 추정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를 추정함

$$y_{it} = \alpha + \beta EITC_{it-2} + \gamma X_{it} + \sum_{k=1}^T \gamma_k D_k + \varepsilon_{it} \quad \text{식 (4)}$$

- 종속변수인 y_{it} 는 i 가구의 t 기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 총급여액유무($Dgross_{it}$) 및 로그총급여액($gross_{it}$)을 사용함
- $EITC_{it-2}$ 는 $t-2$ 기 소득을 기반으로 $t-1$ 기 근로장려금수급여부($EITC_{it-2}$)를 의미함
- 즉, $t-1$ 기에 수급한 장려금 $EITC_{it-2}$ ($t-2$ 기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이 t 기 가구 노동공급인 y_{it}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봄
- 가구특성으로는 부양자녀 수를 통제하였으며, 시간효과(D_k)를 포함하여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였음

- 본 효과성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은 식 (4)에서와 같이 임의효과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음

-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차간 변동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연속으로 수급하는 것에 대한 효과나 근로장려금을 연속해서 수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효과는 추정되지 않음
- 반면,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EITC_{it-2}$ 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아 시차간 변동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잃어버리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판단됨

- 더불어, t 기의 노동공급변수에 영향을 미치나 통제하지 못한 잔차항(ε_{it})이 $EITC_{it-2}$ 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나, $EITC_{it-2}$ 는 과거의 소득($t-2$ 기)을 기반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가 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단, 소득변수(Y_{it} , Y_{it-2})에 양(+)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도효 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함

나. 분석결과

- 앞서 논의한 식별전략을 바탕으로,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이 근 로유인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받은 국세청 미시자료 중 연 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진행함
- 먼저 전체 수혜자 샘플을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하위그룹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제도에 대한 이질적인 반응이 있는지 포착하고자 함

1) 전체표본 대상 분석결과

- 전체표본을 사용한 분석결과는 <표 V-6>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근로유인효과와 근로소득(총급여액) 및 세후소득(총급여액+근로장려금) 증가가 나타남
 - $t-2$ 기 소득을 기반으로 $t-1$ 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에 그다음해인 t 기에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보다 8.82%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생적 근로유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표 V-6>의 칼럼(1) 참조)
 -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총급여액은 평균 9.75%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연적 근로유인의 효과 또한 존재함을 확인함(<표 V-6>의 칼 럼(3) 참조)
-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근로의 증가로 유발되는 총급여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증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

- 근로유인으로 인한 총급여액의 증가는 72만원으로 나타났음(<표 V-6>의 칼럼(2) 참조)
- 그 결과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은 108만원가량 높음(<표 V-6>의 칼럼(4) 참조)
 - 전체 세후소득 중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 수준

<표 V-6>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전체표본 대상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882*** (0.0002)	72.1830*** (0.6265)	0.0975*** (0.0009)	108.066*** (0.6295)
부양자녀수	0.0495 (0.0001)	368.6692 (0.8645)	0.3153 (0.001)	401.5725 (0.8602)
총 관측수	12,283,108	12,283,108	10,645,300	12,283,108
가구수	4,249,417	4,249,417	4,237,863	4,249,417
Adjusted R square	0.0461	0.0461	0.0198	0.0582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근로유인효과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근로장려금구간(점증, 점감, 평탄), 연령(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직업(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나누어 살펴봄
 - 직업(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경우 매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2021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비수급자의 직업 및 가구구성 변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직업 및 가구구성 정보의 경우 2021년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 즉, 근로장려금으로 인하여 직업 및 가구구성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이질성 분석: 근로장려금 구간별

- 먼저 근로장려금의 구간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V-7, V-8, V-9>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장려금의 인센티브구조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와 동시에 소득 수준별로 이질적 효과 존재여부를 보여줌
 - 경제학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점증구간에서의 노동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소득증가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남
 - 점증구간에서는 16.5%의 외연적 효과(총급여액 유무)가 나타났으나,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는 외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표 V-7>의 칼럼(1) 참조)
 - 총급여액이 존재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증가(34.9%) 또한 점증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평탄(8.5%), 점감구간(1.93%)의 효과 순으로 나타남(<표 V-7, V-8, V-9>의 칼럼(3) 참조)
 - 근로참여 및 근로시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로도 나타남
 - 근로제고로 인한 총급여액 증가는 점증구간에서 78.7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탄구간에서는 67.53만원, 점감구간에서 26.44만원이었음(<표 V-7, V-8, V-9>의 칼럼(2) 참조)
 -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총급여액+근로장려금), 점증구간의 소득증가액은 평균 113.7만원, 평탄구간은 95.67만원, 점감구간은 48.34만원 수준임(<표 V-7, V-8, V-9>의 칼럼(4) 참조)
- 점증구간에서의 노동공급효과는 전체 수혜대상자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큰 편이었으며, 소득효과는 총급여액의 증가는 작았으나 세후소득의 증가는 컸음
 - 점증구간에서의 외연적 효과(16.8%)와 내연적 효과(34.9%)는 전체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외연적 효과인 8.82%와 내연적 효과인 9.75%에 비하여 큰 수준
 - 소득효과의 경우 총급여액 증가는 67.53만원으로 전체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효과인 72만원보다는 작았으나, 세후소득의 증가는 113.7만원으로 전체 수혜대상자들의 증가인 108만원보다 컸음

<표 V-7>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점증구간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1647*** (0.0004)	78.7633*** (0.1881)	0.3488*** (0.0013)	113.6953*** (0.2524)
부양자녀수	0.0786*** (0.0005)	55.0103*** (0.3296)	0.1250*** (0.0018)	88.1042*** (0.4305)
총 관측수	5,058,752	5,058,752	3,420,944	5,058,752
가구수	2,515,108	2,515,108	2,081,630	2,515,108
Adjusted R square	0.2027	0.1309	0.0244	0.1555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8>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평탄구간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근로장려금수급여부	0.0000 (0.0001)	67.5263*** (0.3866)	0.0850*** (0.0005)	95.6696*** (0.4469)
부양자녀수	-0.0001 (0.0001)	151.7258*** (0.4711)	0.1776*** (0.0006)	198.7822*** (0.5445)
총 관측수	2,189,116	2,189,116	2,185,182	2,189,116
가구수	1,619,517	1,619,517	1,618,398	1,619,517
Adjusted R square	0.0013	0.1096	0.0891	0.1416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9>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점감구간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26.4393*** (0.6315)	0.0193*** (0.0004)	48.3446*** (0.6187)
부양자녀수		315.4874*** (0.6223)	0.1711*** (0.0003)	336.6196*** (0.5991)
총 관측수		3,960,981	3,960,981	3,960,981
가구수		2,363,784	2,363,784	2,363,784
Adjusted R square		0.1172	0.1126	0.1399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3) 이질성 분석: 연령별

- 나이별 이질성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외연적 효과 및 내연적 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 외연적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9.3%), 그다음은 30세 미만(6.5%)
 -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격차는 30세 미만의 경우 2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7%가량으로 그다음으로 컸음
 - 반면, 소득의 증가를 나타내는 총급여액의 변화는 30세 미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146만원 증가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60세 이상으로 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소득증가는 158만원, 60세 이상은 65.4만원 수준이었음

<표 V-10>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30세 미만(2017년 기준)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646*** (0.0004)	146.0831*** (1.0806)	0.2153*** (0.0018)	157.9997*** (1.0735)
부양자녀수	0.0739*** (0.0005)	480.3476*** (3.0302)	0.4141*** (0.0033)	526.6556*** (3.0509)
총 관측수	4,275,384	4,275,384	3,416,476	4,275,384
가구수	0.1366	0.0405	0.0120	0.0526
Adjusted R square	1,450,409	1,450,409	1,446,657	1,450,409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 소득을 기준으로 $t-1$ 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1>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40세 이상 50세 미만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485*** (0.0004)	-16.9098*** (1.6746)	0.0063*** (0.0021)	12.6543*** (1.6616)
부양자녀수	0.0448*** (0.0002)	253.7039*** (1.3644)	0.1753*** (0.0015)	288.0478*** (1.3498)
총 관측수	1,785,258	1,785,258	1,618,517	1,785,258
가구수	635,124	635,124	633,083	635,124
Adjusted R square	0.0734	0.0417	0.0145	0.0562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 소득을 기준으로 $t-1$ 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2>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50세 이상 60세 미만(2017년 기준)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613*** (0.0004)	-2.1534 (1.5169)	0.0195*** (0.0020)	30.8739*** (1.5219)
부양자녀수	0.0471*** (0.0006)	223.9206*** (3.3459)	0.1427*** (0.0036)	265.5391*** (3.3294)
총 관측수	2,105,301	2,105,301	1,913,025	2,105,301
가구수	738,519	738,519	736,652	738,519
Adjusted R square	0.0623	0.0051	0.0040	0.0085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3>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60세 이상(2017년 기준)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928*** (0.0004)	30.2631*** (1.2071)	0.0661*** (0.0018)	65.3943*** (1.2399)
부양자녀수	0.0734*** (0.0009)	90.8351*** (6.2574)	0.0110 (0.0086)	128.3735*** (6.4371)
총 관측수	2,693,407	2,693,407	2,418,580	2,693,407
가구수	912,050	912,050	910,063	912,050
Adjusted R square	0.0804	0.0006	0.0060	0.0022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4) 이질성 분석: 직업별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분류에 따라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에게서 외연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내연적 효과의 경우 종교인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표 V-14, V-15, V-16>)
 -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사업자(7.7%), 종교인(4.2%) 순이었음
 - 총급여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자의 총급여액은 비수급자에 비해서 종교인인 경우 17.5%, 사업자의 경우 10.6%, 근로자의 경우 8.8% 높았음(<표 V-14, V-15, V-16>의 칼럼(2) 참고)

- 근로유인의 효과는 모든 그룹에서 총급여액 및 세후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종교인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근로자였음
 - 총급여액 증가는 종교인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140만원), 그다음은 근로자(81만원), 사업자(60만원) 순으로 나타남(<표 V-14, V-15, V-16>의 칼럼(2) 참고)

<표 V-14>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근로자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973*** (0.0002)	81.2845*** (0.8166)	0.0883*** (0.0011)	116.8327*** (0.8193)
부양자녀수	0.0506*** (0.0002)	409.5537*** (1.2929)	0.3629*** (0.0013)	441.7084*** (1.2831)
총 관측수	7,223,854	7,223,854	6,176,995	7,223,854
가구수	2,478,754	2,478,754	2,469,652	2,478,754
Adjusted R square	0.1065	0.0469	0.0240	0.0584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총소득(총급여액+근로장려금) 차이 또한 종교인에서 179만원으로 가장 크고 근로자 116.8만원, 사업자 96.3만원으로 나타남(<표 V-14, V-15, V-16>의 칼럼(4) 참고)

<표 V-15>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사업자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767*** (0.0003)	59.8324*** (0.9780)	0.1058*** (0.0015)	96.3233*** (0.9852)
부양자녀수	0.0474*** (0.0002)	326.3300*** (1.1768)	0.2750*** (0.0014)	360.1827*** (1.1753)
총 관측수	5,012,730	5,012,730	4,429,115	5,012,730
가구수	1,754,899	1,754,899	1,752,696	1,754,899
Adjusted R square	0.0933	0.0438	0.0163	0.0564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6>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종교인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423*** (0.0036)	139.6636*** (10.9916)	0.1749*** (0.0132)	179.2211*** (10.8196)
부양자녀수	0.0241*** (0.0017)	268.1520*** (7.1401)	0.2041*** (0.0066)	274.5748*** (6.8471)
총 관측수	46,524	46,524	39,190	46,524
가구수	15,764	15,764	15,515	15,764
Adjusted R square	0.0424	0.0995	0.0496	0.1125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5) 이질성 분석: 가구 구성별

- 단독, 홑벌이, 맞벌이 세 가구 중 단독가구에서 총급여액 유무 및 총급여액 증가율 측면에서 노동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표 V-17, V-18, V-19>)
 -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간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의 차이는 단독가구에서 9.4%로 가장 높았고, 홑벌이(5.8%), 맞벌이(1.5%) 순으로 나타남(<표 V-17, V-18, V-19>의 칼럼(1))
 - 총급여액이 존재하는 경우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간 총급여액 평균의 차이는 단독가구의 경우 5.1%로 나타났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2.9%로 나타났으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감소(-8.9%)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V-17, V-18, V-19>의 칼럼(2))
 - 맞벌이가구의 경우 대체로 점감구간에 위치하여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총급여액+근로장려금)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됨
 -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총급여액은 33.94만원 높았으며,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는 경우 55.73만원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음(<표 V-17>의 칼럼(2)와 (4) 참조)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15.18만원 감소였으나,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는 경우 23.58만원 높아져 근로장려금이 소득보전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V-15>의 칼럼(2)와 (4) 참조)
 -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수급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162.51만원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는 경우 그 차이는 125.40만원으로 좁혀짐(<표 V-16>의 칼럼(2)와 (4)참조)
 - 이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효과(긍정적 외연적 효과)가 1.4% 노동시간은 반대로 줄이는 효과(부정적 내연적 효과)가 8.9%로 나타났는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V-17>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단독가구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940*** (0.0002)	33.9446*** (0.655)	0.0507*** (0.0011)	55.7281*** (0.6485)
부양자녀수	0.1383*** (0.0008)	301.7604*** (3.6618)	0.2067*** (0.0047)	378.0469*** (3.6964)
총 관측수	8,521,243	8,521,243	7,167,017	8,521,243
가구수	2,894,343	2,894,343	2,894,343	2,901,240
Adjusted R square	0.1117	0.0033	0.0022	0.0071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8>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홑벌이가구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	0.0581*** (0.0003)	-15.1846*** (1.3262)	0.0288*** (0.0016)	23.5791*** (1.3259)
부양자녀수	0.0340*** (0.0002)	189.9813*** (0.9749)	0.1327*** (0.0011)	199.3186*** (0.9583)
총 관측수	3,214,220	3,214,220	2,943,514	3,214,220
가구수	1,125,501	1,125,501	1,125,501	1,129,943
Adjusted R square	0.0637	0.0256	0.0092	0.0304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9>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맞벌이가구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1기 장려금수급여부	0.0148*** (0.0004)	-162.5073*** (2.8442)	-0.0893*** (0.0022)	-125.3971*** (2.6994)
부양자녀수	0.0103*** (0.0002)	106.1142*** (1.8241)	0.0495*** (0.0014)	105.7172*** (1.7105)
총 관측수	547,645	547,645	534,769	547,645
가구수	218,019	218,019	218,019	218,234
Adjusted R square	0.0233	0.0851	0.0596	0.1014

- 주: 1. 설명변수는 근로장려금수급여부(t-2). 즉, t-2소득을 기준으로 t-1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
 2.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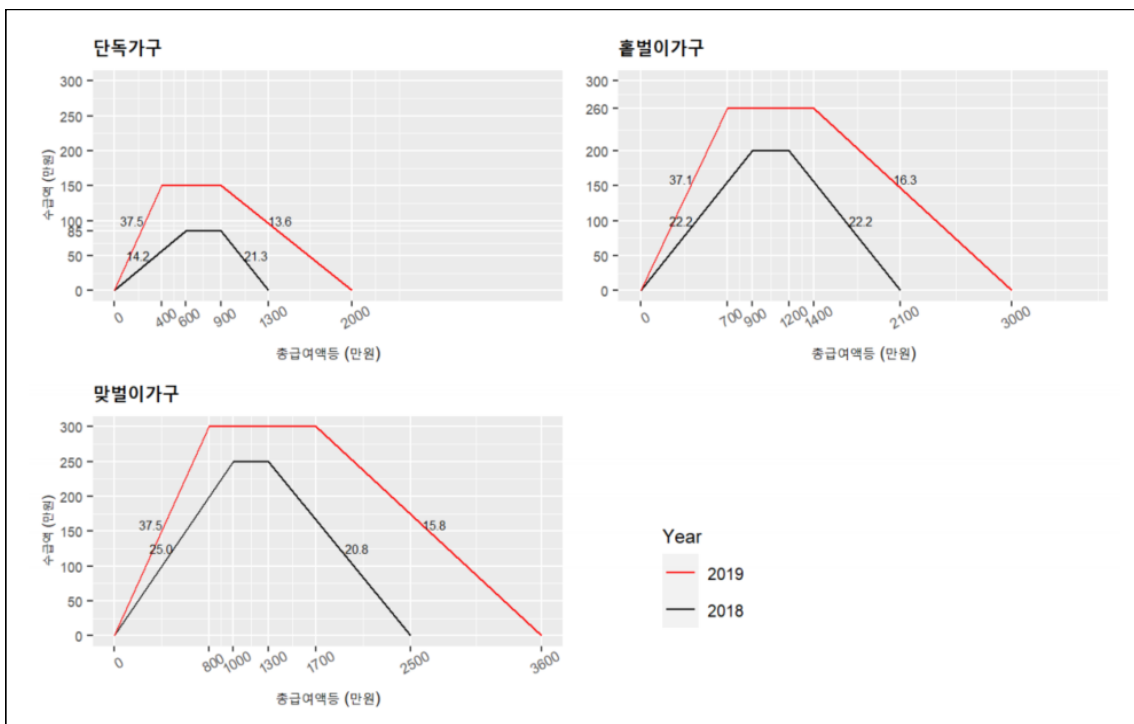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4.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19년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확대로 평가됨
 - 수급가구수는 180만가구(2017년)에서 410만가구(2018년)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1.28조원(2017년)에서 4.3조원(2018년)으로 약 3.36배 증가함
- 동 제도 확대는 자격요건 완화와 최대장려금의 확대를 포함함
 - 최대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53.8%(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42.9%(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2,500만원에서 3,600만원) 증가
 - 최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76.5%(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0%(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0%(25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
 - 단독가구 연령요건 또한 2017년 30세 이상에서 2018년 연령제한 없음으로 완화
 - 재산요건은 기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제도의 확대로 평균 점증률은 20%에서 37.7%로 상승하였으며, 점감률은 평균 21%에서 15.3%로 감소하였음
- 점증률의 상승과 점감률의 감소에도 점증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고 평탄 및 점감구간은 길어진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수혜대상 소득분포에 따라서 2019년도 개편의 효과가 근로유인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함

[그림 V-2]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가구유형별



자료: 신상화·김문정(2023)의 [그림 1]

-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문정·김빛마로(2020), 권성오·홍우형(2022), 신상화·김문정(2023)이 있음
- 김문정·김빛마로(2020)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산요건을 기준으로 처치군과 통제군을 설정한 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한 분석을 시행
 - 분석결과, 단독가구 및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 및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

- 권성오·홍우형(2022)은 재정패널조사 10~12차 자료를 사용하고 자격요건 충족 및 실제 장려금 수령여부에 따라 처치군과 통제군을 설정한 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시행
 -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증가함
- 신상화·김문정(2023)은 재정패널조사 10~13차 자료를 사용하고 2018년 귀속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규로 수급한 가구를 처치군으로 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재산요건은 만족하나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를 대조군으로 삼아 이중차분법 분석(Difference-in-differences)을 시행
 - 분석결과, 상용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160만원 증가, 상용직 무배우자에 한정하였을 경우 가구주 총급여액은 284만원 가구주 근로소득은 347만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2019년 제도 확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로는 신규 수혜가구 유입의 유형을 살펴봄
 - 먼저, 2017년도에는 비수혜가구이었다가 2018년도에 새롭게 수혜가구가 된 가구들의 소득, 재산, 연령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신규 수혜가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봄
 - 또한, 2017년도와 2018년도간 수혜가구의 점증, 평탄, 점감구간의 분포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노동공급 유인변동을 예측해봄
 -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을 신규로 수급한 가구들의 노동공급 및 소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

가. 2018년 세법개정 특성분석: 신규 수혜가구 유입을 중심으로

- 먼저, 2018년 세법개정의 어떤 요소가 수급가구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비수혜가구이었다가 2018년 새로운 수혜가구로 유입된 가구들의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봄
- 분석결과, 앞선 타당성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산요건보다는 소득요건 완화

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표 V-20> 참조)

- 전체 4,253,826가구 중 2017년도에 비수혜 가구였다가 제도 확대로 2018년도 수혜가구로 전환된 신규수급가구의 수는 1,078,590가구
 - 평균 수급횟수는 3.35회로 평균 총 수급횟수인 2.7회보다 높은 수준임
- 신규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의 비중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홑벌이가구가 26.75%, 맞벌이가구가 5.23%로 나타남(2018년 기준)
- 재산요건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의 사례는 전체 8% 정도로 크지 않음
 - 2017년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8%
- 반면, 신규 가구 중 2017년에 총소득액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구는 94.3%로, 총소득액 요건의 완화가 신규 수급가구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임
- 연령요건 완화도 신규 수급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형태 정보가 불안정하여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2018년 기준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전체 신규 수급가구의 32%를 차지함을 참고할 때 그 효과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표 V-20>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의 연도별 특성

	2017년	2018년
단독가구	68.2%	
홑벌이가구	26.75%	
맞벌이가구	5.23%	
근로소득자	58.31%	
사업자	41.32%	
종교인	0.37%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여부	8%	8%
총소득액 이상 여부	94.3%	0%
30세 미만 단독가구	32%	
평균 수급횟수	3.35회	
관측치	1,078,590가구	

- 두 번째로, 2017년, 2018년에 수급가구의 점증, 평탄, 점감구간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유인 변동을 예측해봄

- <표 V-21>에서와 같이 2018년 세법개정 이후 모든 구간에서 수혜 가구수와 총지급액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폭은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 가장 컸음을 알 수 있음
 - 세법개정 전인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점증구간에 위치한 수혜 가구수와 총지급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혜가구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함
 - 2017년 전체 수혜가구 중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는 54%였으나, 2018년에는 35%만이 점증구간에 위치하게 되었음
 -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대소득액이 낮아져 단독가구 기준 점증구간 최대소득은 600만원에서 400만원, 홑벌이가구는 900만원에서 7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효과로 보임
 - 평균 지급액은 62만원에서 92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평균 대비 비율은 77%에서 74%로 소폭 감소함
 - 평탄구간에 위치한 수혜가구 및 총지급액 역시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혜자 대비 평탄구간 위치 수혜가구의 비중 또한 증가함
 - 2017년 평탄구간에 위치한 수혜가구의 비중은 16%였으나 2018년에는 25%로 증가하였음
 - 이는 최대장려금이 증가한 것에 따른 효과로, 평탄구간에서의 평균지급액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가하고 전체 평균지급액 대비 비율도 110%에서 145%로 증가함
 - 최대장려금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함
 - 점감구간의 길이가 확장되면서 점감구간의 수혜가구와 총지급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혜자 비중 또한 증가함
 - 전체 수혜가구 대비 점감구간의 수혜가구는 30%에서 40%로 증가
 - 이는, 2018년 세법개정으로 평탄구간이 좁아지고 점감구간이 길어진 것에 따른 효과로 보이는데, 점감구간은 단독가구 [900~1,300만원]에서 [900~2,0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1,200~2,100만원]에서 [1,400~3,0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1,300~2,500만원]에서 [1,700~3,600만원]으로 확대됨

- 평균지급액은 88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평균 대비 평균지급액의 비율은 110%에서 94%로 감소함

□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유인효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의 비중이 35%로 줄어들었으나 점증구간을 포함한 모든 구간에 속한 가구들에 대하여 평균지급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 점증구간에서의 평균지급액의 증가로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하는 점증구간에서의 외연적 노동공급효과는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반면, 점증구간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내연적 노동공급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게 됨
- 또한, 평탄 및 점증구간에서의 평균지급액이 증가한 것을 소득의 증가로 해석한다면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수혜자들이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 결과적으로, 2018년 세법개정은 외연적 노동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어 보이나, 내연적 노동공급은 증가 혹은 감소 모두 가능함

- 즉,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표 V-21> 수혜자 구간별 분포: 2017년도와 2018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원)

	2017년			2018년		
	가구수	총지급액	평균 지급액	가구수	총지급액	평균 지급액
점증	467,375 (54%)	288,000 (42%)	616,975 (77%)	623,694 (35%)	572,000 (26%)	916,675 (74%)
평탄	141,443 (16%)	176,000 (26%)	1,246,674 (110%)	445,101 (25%)	800,000 (36%)	1,796,821 (145%)
점감	255,006 (30%)	224,000 (33%)	879,724 (110%)	704,313 (40%)	820,000 (37%)	1,164,420 (94%)
전체	863,824	688,000	796,459 ¹⁾	1,773,108	2,192,000	1,236,247 ¹⁾

주: 1) 전체평균 지급액(원)을 의미함

1. 표본은 각각 2017년도 수혜자 및 2018년도 수혜자

2. () 안은 전체대비 비중자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나. 회귀분석

- 2018년 세법개정이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국세청 미시자료(2017~2021년)를 사용하고,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여 분석함
 - 2018년도 소득요건의 확대로 새롭게 유입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분석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에 따라 대거 유입된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분석

1) 신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분석

- 앞선 ‘가’항에서 2018년 세법개정의 특성 중 하나는 소득요건 완화가 새로운 수혜가구 유입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임
-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고 2018년 세법개정을 재정패널을 사용하여 연구한 신상화·김문정(2023)을 참고하여 소득요건으로 새롭게 유입된 수혜가구에 대한 효과를 다음과 같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함
 - 이중차분법을 위하여 설정한 처치군은 2017년도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하다가 2018년도 제도 확대로 신규로 수급하게 된 가구임
 - 따라서, 이 가구들은 2019년도 수급경험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한 근로유인효과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구들로 대체로 2018년 점감구간에 위치한 가구들일 가능성이 높음
 - 대조군으로는 2017~2020년도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가구들로 설정함⁸⁹⁾
 - 본 분석에서의 처치군 및 대조군의 설정은 신상화·김문정(2023)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대조군 설정을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신상화·김문정(2023)은 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재산요건은 만족하나 ‘소득요건’이 기준소득을 소폭 넘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그룹을 대조군으로 삼았음

89) 2021년에는 모든 가구가 장려금을 수급하게 됨에 따라서 2021년에 재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존재하지 않음

$$y_{it} = \alpha + \beta \text{Treatment}_{it} \times \text{Post}_t + \delta \text{Treatment}_i + \gamma X_{it} + \sum_{k=1}^T \psi_k D_k + \varepsilon_{it} \quad \text{식 (5)}$$

- 이중차분법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종속변수인 y_{it} 는 i 가구의 t 기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 총급여액유무($D_{\text{gross}_{it}}$) 및 로그총급여액(gross_{it})를 사용함
 - Treatment_1 는 처치군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임
 - 2017년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하다가 2018년도에 장려금을 수급하여 새롭게 수급가구로 편입된 가구의 경우 ‘1’이 됨
 - 반면, 2017~2020년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0’이 됨⁹⁰⁾
 - Post_t 는 2018년 세법개정 전과 후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임
 -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장려금을 수급을 경험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도에는 ‘0’이 되고, 2019~2021년에는 ‘1’이 되는 변수
 - 가구특성(X_{it})으로는 부양자녀 수를 통제하였으며, 시간효과(D_k)를 포함하여 경기변동 등의 효과를 통제하였음
 - 본 회귀분석을 통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관심계수는 β 임
 - β 가 양수로 추정되면 세법개정 이후 처치군의 노동공급 혹은 소득의 증가가 대조군보다 큰 것으로, 세법개정으로 인한 노동공급 및 소득 증가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회귀분석 결과, 2018년 소득요건 완화로 새롭게 유입된 가구들의 노동공급 및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표 V-22> 참고)
- 신규 유입 수혜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의 증가가 6.7%가량 높았으나, 총급여액이 존재하는 경우 로그총급여액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즉, 외연적 근로유인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내연적 근로유인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90) 2021년에는 모든 가구가 장려금을 수급하게 됨에 따라서 2021년에 재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존재하지 않음

- 반면, 총급여액의 크기는 183만원가량,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 또한 178.8만원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음
 -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의 증가가 총급여액의 증가보다 작은 것은 대조군 정의 및 데이터의 구조상 2017~2020년까지는 대조군의 모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다가 2021년에 모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의 효과로 추정됨
 -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2021년을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시행할 경우, 총급여액의 크기는 139만원, 세후소득은 167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V-23> 참고)
 - 신상화·김문정(2023)의 결과와 비교하자면, 2018년 세법개정으로 신규 유입된 상용직 가구주의 근로소득 증가를 159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임

<표 V-22>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reatment_i \times Post_t$	0.0666*** (0.0022)	183.0412*** (5.1276)	0.0094 (0.0085)	178.8425*** (5.1167)
$Treatment_i$	-0.0235*** (0.0025)	-125.1006*** (6.0496)	0.0573*** (0.0090)	-73.1148*** (6.0511)
부양자녀수	0.0534*** (0.0003)	451.8636*** (1.6196)	0.3422*** (0.0016)	475.0181*** (1.6035)
총 관측수	5,097,053	5,097,053	4,314,217	5,097,053
가구수	1,047,435	1,047,435	1,046,469	1,047,435
Adjusted R square	0.2921	0.0754	0.0393	0.0929

- 주: 1.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2. 처치군은 2017년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하다가 2018년에 수급하게 된 신규 수혜가구이고, 대조군은 2017~2020년 동안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가구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3>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2021년도 제외

변수	t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t기 총급여액 (만원) (2)	t기 log(총급여액) (3)	t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reatment_i \times Post_t$	0.0899*** (0.0023)	139.4800*** (5.3552)	-0.0685*** (0.0089)	167.0719*** (5.3503)
$Treatment_i$	-0.0253*** (0.0025)	-127.3921*** (6.0499)	0.0568*** (0.0090)	-75.4503*** (6.0513)
부양자녀수	0.0707*** (0.0003)	473.9196*** (1.6948)	0.3459*** (0.0016)	497.4977*** (1.6775)
총 관측수	4,054,216	4,054,216	3,276,944	4,054,216
가구수	1,045,060	1,045,060	1,041,369	1,045,060
Adjusted R square	0.2643	0.0753	0.0442	0.0920

- 주: 1.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2. 처치군은 2017년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년에 지급하게 된 신규 수혜가구이고, 대조군은 2017~2020년 동안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가구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0.01, ** p<0.05, * p<0.1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2)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 두 번째로, 2018년 세법개정으로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대거 유입된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 대한 노동공급 및 소득 효과를 동일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함
 - 연령요건 폐지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해 처치군 및 대조군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처치군은 만 30세 미만(2018년 기준) 단독가구로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수혜 가구에 편입된 가구를 사용함
 - 대조군은 30대(2018년 기준) 단독가구로 기존 수혜대상을 사용함
 -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회귀식은 수식 (5)와 동일하나 $Treatment_i$ 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음

$$y_{it} = \alpha + \beta Treatment_{it} \times Post_t + \delta Treatment_i + \gamma X_{it} + \sum_{k=1}^T \psi_k D_k + \varepsilon_{it} \quad \text{식 (6)}$$

- $Treatment_i$ 는 만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1’이고, 30대 단독가구주의 경우 ‘0’이 되는 이항변수임
- 종속변수인 y_{it} 는 i 가구의 t 기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 총급여액유무($Dgross_{it}$) 및 로그총급여액($gross_{it}$)을 사용함
- $Post_t$ 는 2018년 세법개정 전과 후를 나타내는 이항변수로 2018년 세법개정 으로 인한 장려금 수급을 경험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도에는 ‘0’이 되고, 2019~2021년에는 ‘1’이 되는 변수
- 가구특성(X_{it})으로는 부양자녀 수를 통제하였으며, 시간효과(D_k)를 포함하여 경기변동 등의 효과를 통제하였음
- 본 회귀식의 관심계수는 β 로, β 에 대한 추정치가 양수인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회귀분석 결과,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신규로 유입된 수혜가구와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외연적 노동공급효과)의 증가는 30대에 비하여 40% 높고, 총급여액이 존재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증가는 26% 높게 나타남
 - 만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외연적 노동공급)은 개정 전 30%에서 개정 후 80%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띠
 - 30대 단독가구 평균 77%(2017년)에서 88%(2018년)로의 변화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
 - 이정우 외(2022)⁹¹)는 30대 단독가구 유입으로 인한 효과를 외연적 효과의 경우 23.8~49.5%, 주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내연적 효과)를 31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의 증가는 30대에 비하여 492만원가량 더 컸으며, 근로장려금을 합한 세후소득의 증가는 498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됨

91) 이정우·홍우영·김두언,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령대별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22. 9

- 신상화·김문정(2023)의 추정결과와 비교해보자면 2018년 세법개정으로 신규 유입된 상용직 무배우자 가구의 소득효과를 347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

<표 V-24> 2018년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30세 미만 단독가구

변수	<i>t</i> 기 총급여액 존재여부 (1)	<i>t</i> 기 총급여액 (만원) (2)	<i>t</i> 기 log(총급여액) (3)	<i>t</i> 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
$Treatment_i \times Post_t$	0.3953*** (0.0007)	491.9228*** (1.6850)	0.2615*** (0.0033)	497.7193*** (1.6709)
$Treatment_i$	-0.4752*** (0.0008)	-813.2063*** (1.8497)	-0.6663*** (0.0033)	-823.0780*** (1.8423)
부양자녀수	0.1627*** (0.0015)	346.0320*** (5.4083)	0.1832*** (0.0056)	401.4847*** (5.4077)
총 관측수	7,983,363	7,983,363	5,044,982	7,983,363
가구수	1,630,883	1,630,883	1,627,657	1,630,883
Adjusted R square	0.4045	0.1545	0.0224	0.1730

- 주: 1.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21년도(귀속연도)에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개인들로, 소득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 후 분석을 실시함
2. 처치군은 단독가구 중 1988년 혹은 그 이후 출생자인 경우 '1', 1987~1977년 출생자인 경우 '0'이 되는 이항변수
3.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4. *** $p < 0.01$, ** $p < 0.05$, * $p < 0.1$
-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VI.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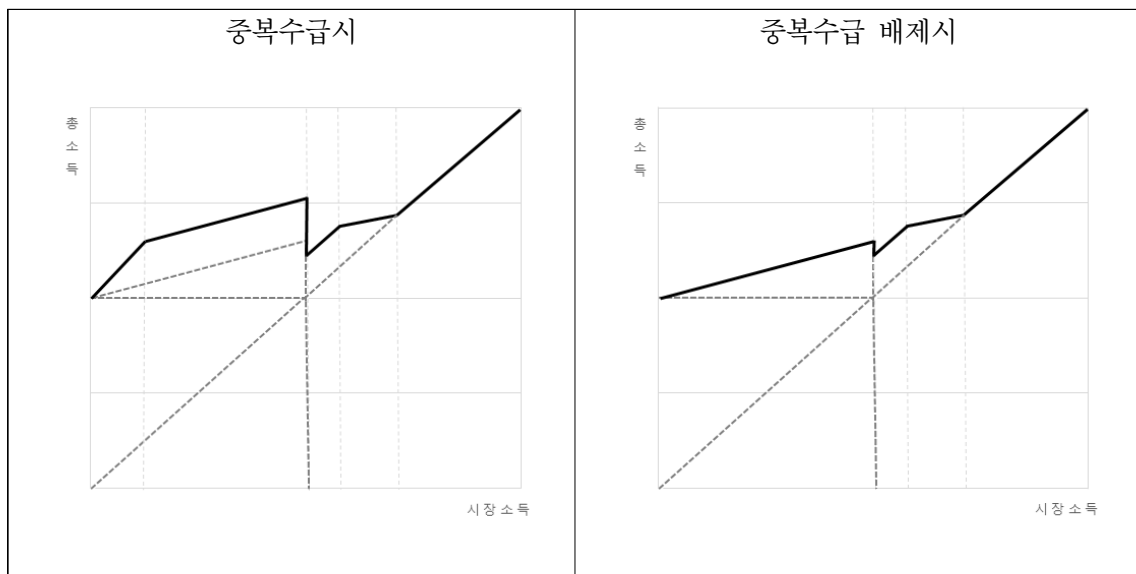
VI.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심층평가 결과, 현 근로장려금세제는 타당성 및 효과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제도의 소득상한액은 중위소득 대비 65~98%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미국 및 캐나다의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소득요건 및 지급수준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요건은 저소득-고자산 가구를 제도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기능과 더불어 조세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현 제도 설계상에서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와 수혜가구 중 비중이 큰 가구(단독가구 및 30세 미만 가구)에서 근로유인효과(외연적·내연적) 및 소득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목적 달성에도 효과성이 확인됨
 - 더불어, 비중이 높은 수혜집단인 60세 이상에서도 근로유인(9.2%; 6.61%) 및 소득효과(30만원, 65만원)가 있음이 확인됨

- 반면,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유인 제공과 소득지원의 2가지 목적을 수행 중이나 주된 목적에 대한 공통인식은 없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로유인 제공이 주된 목적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소득지원 제도로의 인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가 2015년부터 중복지급 허용
 - 이러한 정책목표 우선순위 변화는 제도개선 등 운용방향의 혼란 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이 중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더 중요한 것인지 혼돈 상황
 - 또한 재정여력 확보시 제도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최대급여액을 높이는 것의 우선순위 판단기준도 모호
 - 특히 고령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생계목적의 근로유인 제고보다는 생계비 보전 목적의 소득지원에 가까운데 동 기능을 근로장려금세제에서 지속 포함해야 하는 것도 불분명

- 근로장려금의 운영의 주변 여건 변화와 함께 제도 목적을 감안한 제도 우선순위 설정은 일관성 있는 제도 발전을 통한 효과성 제고에 기여가 가능할 것임
- 현행 근로장려금은 제도 설계상 소득보장보다 근로유인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근로유인을 소득지원보다 우위에 두는 제도
 -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급여액이 높아지는 소득지원제도
 - 빈곤층에 대한 주된 소득지원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소득지원이 주 목적인 제도가 적절
- 근로장려금의 주된 목적은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바람직
 - 이를 통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탈수급시점에서 소득감소 규모가 크게 감소

[그림 VI-1]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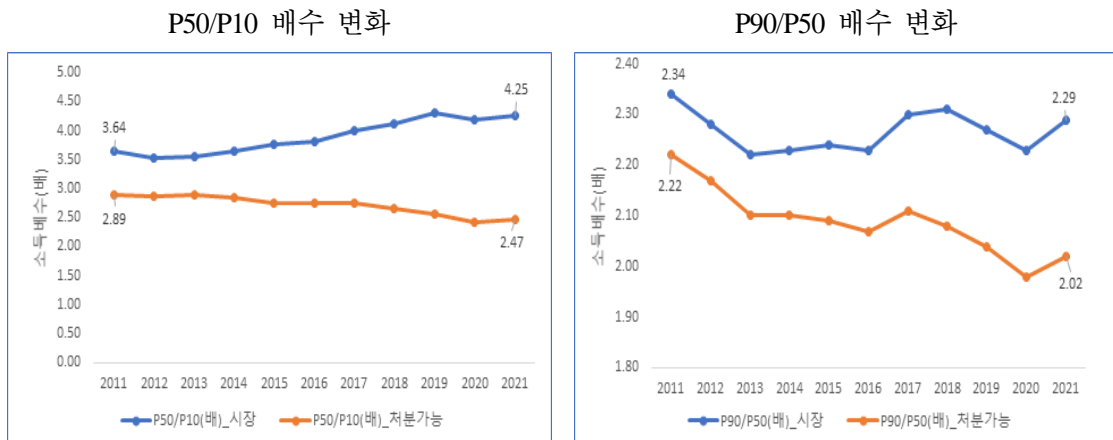


주: 실선은 총소득의 변화이며,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소득공제를 반영하였으며 생계급여 탈수급시점에서 소득의 역전현상 발생

- 향후 근로장려금의 수급대상 확대 또는 수급액 상향에 대한 판단은 소득분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한다면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을 잠재적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전반적 소득분포의 악화를 완화하는 목적도 수행할 필요
 - 소득분포의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분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설정할 필요
 - 즉 중하위 소득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제도 대상 확대보다는 하위소득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액 또는 점증률 인상이 바람직
 - 만약 중상위 소득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보다는 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소득분포 개선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상황변화를 살펴보면 중하위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시장소득 10분위와 50분위 경계소득의 배수는 2011년 3.64배에서 2021년 4.25배로 꾸준히 증가하여 중하위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처분가능소득의 배수는 시장소득보다 개선된 2.89배(2011)에서 2.47배(2021)로 개선
 - 반면 시장소득 50분위와 90분위 경계소득의 배수는 2010년대 소폭 개선되거나 정체된 상황
 -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 배수도 개선 중

[그림 VI-2] 소득계층간 소득배수의 변화 추이



주: P10, P50, P90은 각각 균등화 소득 100분위 중 10분위, 50분위, 90분위 경계소득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 소득분배 개선 관점에서 중하위 소득계층간 시장소득 악화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과거와 같이 충분히 시행될 필요
 - 중위 소득계층에 대한 필요성은 시장소득 분포의 악화가 없으므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
- 근로장려금제도의 변화 방향도 지급대상 확대보다는 기존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될 필요
 - 지원대상 확대는 중위소득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소득기준을 설정할 필요
- 재산에 대한 고려는 근로장려금 대상의 범위,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자산축적을 통해서도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반면, 은퇴계층의 경우 일생주기 관점에서 자산소비를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재산기준도 수용 가능할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2022)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중 하위 25%(즉 3분위 중위가구) 가구의 자산은 1.57억원 수준임
 - 하위 35% 가구의 자산은 2.1억원
-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재산기준 2.4억원은 소득하위 40%를 포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근로빈곤층 제도로서의 포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동 기준은 소득하위 45% 가구 자산수준인 2.6억원에 근접한 수준

〈표 VI-1〉 소득 10분위별 가구의 자산수준(2022년)

(단위: 세, 만원)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가구주 연령	68.2	63.1	57.3	54.6	53.2
경상소득(전년)	897	1,749	2,624	3,537	4,491
자산(평균)	12,407	21,970	27,511	32,508	41,889
자산(중앙값)	3,600	10,144	15,730	20,586	26,124
순자산	11,338	19,606	23,537	27,466	34,920

자료: 국가통계포털,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참고문헌

- 고지현·김정환·박정흠,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발간 예정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2.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 p. 25.
- _____,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나보 포커스』, 제33호, 2021.
- 권성오·홍우형,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2.
- 김문정·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빛마로·김문정,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김재진·이상은·이철인,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노대명 외,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OUGHTOPIA』, 제29권 제2호, 2014, pp. 132~133.
- 박고은·안영·고제이,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박지혜·이정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18, pp. 1~59.
- 성명재·강신욱·이철인,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송헌재·전영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신상화,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2019, pp. 69~100.

- 신상화·김문정,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22.
- _____,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최저임금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신상화·정다운, 『저소득층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신우리·송헌재,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2018, pp. 107~138.
- 안종석 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안종석·송헌재·홍우형,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오민애, 「프랑스 경제활동 추가수당제도의 통합 배경과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6, p. 92.
- 윤성주,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논의현황」,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pp. 34~55.
- 이대웅·권기현·문상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15, pp. 27~56.
- 이세진·임연선,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7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이정우·홍우영·김두언,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령대별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22.
- 임완섭 외,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 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 101.
- 전병목 외,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전병목·신상화,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EITC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_____,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EITC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재정학 연구』, 제1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43.

정의룡,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제48권 제1호, 2014, pp. 181~206.

조선주,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pp. 29~54.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2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pp. 1~8.

홍민철·문상호·이명석,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pp. 1~27.

Carter and Breunig, “Do Earned Income Tax Credits for Older Workers Prolon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Boost Earned Income? Evidence from Australia's Mature Age Worker Tax Offset,” *Economic Record*, 95(309), 2019.

Joseph and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No. w8078, 2001.

Laun, “In Work Benefits Across Europe,” IFAU Working Paper 2019:16, 2019, p. 35.

Tabbara, “What is the Canada Workers Benefit, and How Could it be Better?,” Maytree, 2021.

Wallera et al., “EUROMOD Country Report - SWEDEN 2017-2020,” EUROMOD, 2020.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IRS, <https://www.irs.gov/about-irs>

The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https://www.litrg.org.uk/>

네이버 환율,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spdlqj+ghks&qdt=0&ie=utf8&query=%EB%84%A4%EC%9D%B4%EB%B2%84%ED%99%98%EC%9C%A8, 검색일자: 2023. 8. 2.

아일랜드 관세청, “Earned Income Credit,” <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income-and-employment/earned-income-credit/index.aspx>, 검색일자: 2023. 7. 20.

호주 재무부, “2012-13 Budget Builds On Growing Record of Tax Reform,”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david-bradbury-2012/media-releases/2012-13-budget-builds-growing-record-tax-reform>, 검색일자: 2023. 6. 15.

ACOSS, “Waste Not, Want Not: Making Room in the Budget for Essential Services,” April 2012., http://www.acoss.org.au/images/uploads/ACOSS_paper_188_waste_not_want_not.pdf

Arkansas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Earned Income Tax Credit,” <https://www.dfa.arkansas.gov/income-tax/individual-income-tax/earned-income-tax-credit/>, 검색일자: 2023. 7. 27.

Caf, “The Activity Premium,”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rofessionnelle/la-prime-d-activite>, 검색일자: 2023. 7. 19.

Canada Tax and Financial Information, “Canada Workers Benefit (CWB) Factors for 2022 Except Quebec,” <https://www.taxtips.ca/filing/canada-workers-benefit/cwb-2022.htm>, 검색일자: 2023. 7. 27.

Capital, “Activity Bonus: Conditions, Demand and Calculation,” <https://www.capital.fr/votre-argent/prime-d-activite-1319889>, 검색일자: 2023. 7. 19.

Citizens Information, “Working Family Payment,”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welfare/social-welfare-payments/families-and-children/working-family-payment/>, 검색일자: 2023. 7. 20.

Google Finance, <https://www.google.com/finance/quote/SEK-KRW?sa=X&ved=2ahUKEwj0ZLktND7AhVMgVYBHcrvCJIQmY0JegQIBhAc>, 검색일자: 2022. 11. 28.

House of Commons Library, “Coronavirus: Legacy Benefits and the Universal Credit

- ‘Uplift’,”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246/CBP-9246.pdf>,
검색일자: 2023 .4. 27.
- ITEP, “When Did Your State Enact its EITC?,” [https://itep.org/when-did-your-state-enact-its-eitc/#:~:text=In%201986%2C%20Rhode%20Island%20became,Income%20Tax%20Credit%20\(EITC\)](https://itep.org/when-did-your-state-enact-its-eitc/#:~:text=In%201986%2C%20Rhode%20Island%20became,Income%20Tax%20Credit%20(EITC)), 검색일자: 2023. 4. 24.
- Loans Canada, “Claiming The Canada Workers Benefit (CWB) 2023,” <https://loanscanada.ca/taxes/claiming-the-canada-workers-benefit-cwb/>, 검색일자: 2023. 6. 13.
- Maryland Child Alliance, “The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 Explained,” <https://medium.com/@marylandchildalliance/the-federal-earned-income-tax-credit-explained-6cbab0a6c928>,
검색일자: 2023. 7. 19.
- OECD, “Taxing Wages 2020 Sweden,”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65d05e5-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965d05e5-en>, 검색일자: 2022. 12. 23.
- OECD, “Taxing Wages 2023 Sweden,”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3aebdb4e-en.pdf?expires=1690942186&id=id&accname=ocid72023593&checksum=35B6E8784FDF8C9528758585B56B6888>, 검색일자: 2023. 8. 2.
- Tax Policy Center, “State EITC as Percentage of the Federal EITC,”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state-eitc-percentage-federal-eitc>, 검색일자: 2023. 4. 24.
- Tax Tips, “Canada Workers Benefit (CWB) Factors for 2019 vs WITB for 2018,” <https://www.taxtips.ca/filing/working-income-tax-benefit/canada-workers-benefit-2019-vs-witb-2018.htm>,
검색일자: 2023. 7. 23.
- Thomson Reuters, “Canada Workers Benefit - From Negative Income Tax Measure to Possible Forerunner of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thomsonreuters.ca/en/dtprofessionalsuite/blog/canada-workers-benefit-from-negative-income-tax-measure-to-possible-forerunner-of-universal-basic-income.html>, 검색일자: 2023. 7. 22.
- TPC, “EITC Recipients,”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recipients>, 검색일자: 2023. 7. 19.
- Urban Institute,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s,” <https://www.urban.org/policy-centers/cross-center-initiatives/state-and-local-finance-initiative/state-and-local-backgrounders/state-earned-income-tax-credits>, 검색일자: 2023. 4. 24.
- White House, “The American Rescue Plan,”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

2021/03/American-Rescue-Plan-Fact-Sheet.pdf, 검색일자: 2023. 4. 5.

Young Women's Trust, "How Benefits Will Increase in 2023," <https://www.youngwomenstrust.org/voices/how-benefits-will-increase-april-2023/>, 검색일자: 2023. 6. 12.